

월간
재정포럼 6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9년 6월호 제156호

- 현안분석** •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
Paul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며/ 김정훈
- 골프장의 조세문제 :
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 보편적 틀 내에서/ 노영훈
-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김재진
- 정책연구** •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외
- 정책흐름** •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선진화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 · 강웅선
현안분석	06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Paul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며 · 김정훈 24 골프장의 조세문제: 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 보편적 틀 내에서 · 노영훈 36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 김재진
정책연구	61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최준욱 65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 · 재정정책/원종학 · 김종면 · 전병hil · 우석진 67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재호 71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 74 조세 · 재정모의실험 모형/성명재 · 전병목 · 전병hil 84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 연구 /안중범 · 이상협 · 전영준 · 김진
주요국의 조세동향	87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외
정책흐름	95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98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100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103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105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106 행정안전부, 고액 · 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재정통계	109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124 아이 안 낳는 코리아 '재앙폭탄' 짹짹 외



선진화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



강응선
서울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장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는 한마디로 ‘선진화’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에서 나온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의료 선진화 등 이미 발표된 정부의 대부분 정책들이 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 추진됐던 근대화가 우리나라를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면, 그 이후 도래한 민주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배태된 정경유착의 척결과 국민 인권의 신장, 그리고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권위주의를 불식시킴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향한 상당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선진화를 완성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앞으로 선진화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1인당 소득 몇 만 달러 달성에 세계 몇 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현 정부가 내걸었던 ‘7·4·7’의 공약도 결국 선진화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에 7대 경제대국 진입이 완수되면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었을까.

선진화의 추구, 더 이상 외형적 목표에 매달리지 않아야

만약 이러한 외형적 모습에만 중점을 두고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더 늦기 전에 재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경제개발 반세기 만에 절대 빈곤국가에서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외형적 성공에 대해선 제3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내부에는 경제 양극화, 지역 불균형, 질서의 파괴와 같은 부정적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자화상을 볼 때 선진화의 추구는 더 이상 외형적 목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갖가지 행정적 규제를 없애고 몇몇 제도를 추가 또는 폐지한다고 해서 선진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찾아내어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 선진국 달성은 한낱 희망에 그치고 말 공산이 크다.

그 답은 국민 의식의 선진화에서 찾아내야 한다. 다시 말해 ‘제도의 선진화’보다는 ‘의식의 선진화’가 선진화 추진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럼 의식의 선진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즘 다시 10년 만에 경제위기가 찾아오자 대다수 기업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한 때 잘 나간다고 자만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고민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국가 선진화의 과제에 적용해 본다면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부터 부수적으로 파생된 사회적 고민거리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이 파생되기 이전에 우리 의식수준이 어떠했는가를 되찾아 낸다면 그 해결은 가능하다.

질서·절약·신용·청결의 의식 수준을 높여가야

크게 보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4가지 의식을 되찾아내 우리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질서·절약·신용·청결의 의식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질서의식을 잊어버림으로써 겪게 되는 대가를 보면 그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결코 만만치 않다. 교통에서부터 준법에 이르기까지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며 그것이 선진국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낭비적 대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선진국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 일례로 한 때 새만금·사패산 터널 반대 등 5대 공공분쟁으로 인해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537억원에 이른다니 이것을 서민 복지나 청년고용 창출 등의 생산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면 그 효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났을 것이다.

.....
 현재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찾아내어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 선진국 달성은 한낱 희망에 그치고 말 공산이 크다.

.....

보기에는 사소한
 것들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생활의식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를 진정
 선진국으로 가게 하느냐,
 못 가게 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국민 개개인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정부가 펼칠
 선진화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절약의식을 높이는 것도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가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데 우리의 소비 행태는 낭비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싶다. 에너지 소비에서부터 음식 문화, 쓰레기 배출에 이르기까지 생활수준이 세계 26위에 속하는 국민치고는 낭비에 가까운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소비하는 물자의 대부분이 비싼 외화로 수입한 것임을 안다면 과소비 풍조는 당장 고쳐 나가야 한다.

믿음(신용) 또한 어떠한가. 아마 우리나라만큼 각종 사기가 횡행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매일 눈만 뜨면 대형 사기, 생계형 사기 가릴것없이 사기 관련 뉴스가 판을 치고 있을 정도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두가 상대에 대해 불신부터 하고 시작하니 그에 따른 정신적 피곤함은 물론 경제·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의 행정규제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불신에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다. 10명 중 1명일지도 모를 사기꾼을 가려내기 위해 나머지 9명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각종 서류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바로 규제의 출발점이다.

청결 또한 현재 선진국의 삶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림도 없거니와 예전의 생활습관과 비교해도 너무 뒤떨어져 있다. 언제부터 길거리에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심지어는 고속도로변에 집안 쓰레기를 내버리는 이런 행태들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동남아 일부 국가 등 우리보다 못 배우고,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있을 법한 풍경들이 너무도 자연스레 주변에 존재하는 한 선진화의 완수, 선진국 진입은 공허한 얘기일 뿐이다.

보기에는 사소한 것들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생활의식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를 진정 선진국으로 가게 하느냐, 못 가게 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국민 개개인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정부가 펼칠 선진화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Paul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며
김정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골프장의 조세문제:
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 보편적 틀 내에서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Paul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며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junkim@kipf.re.kr)

지역정책이 수립되는 이유는 지역간 격차가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I. 서론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집적(특히 인구집중)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응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도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 경제집적의 억제 정책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기업입지 제한, 지역산업 육성, 기업이전 지원, 정부간 이전재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정책은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 경제적 낙후지역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 특화를 유도하는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은 영국, 이탈리아, EU 등 많은 국가들이 수행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영국은 지역정책이 탄생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EU가 운영하는 경제·사회 통합 기금(Structural Fund; Cohesion Fund)은 그 규모나 지원 범위가 광범위하여 유럽 국가들의 지역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나 영국, 유럽 등에서 지역정책이 수립되는 이유는 지역간 격차가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효과적인 지역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간 격차의 발생 원인을 이론적·실증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한 지역의 경제력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경제집적(economic agglomeration) 현상은 그동안 도시경제학, 지역경제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 오

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지역에 국한하여 집적현상을 연구한 것이고, 지역간 또는 국가간 경제현상으로서의 경제집적을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1년 Paul Krugman이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한 논문(Krugman, 1991)은 경제집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았고, 신지리경제학(New Economic Geography; NEG)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¹⁾. 그리고 이 논문은 마침내 스웨덴 왕립 학술원이 2008년 노벨상을 Krugman에게 수여하면서 인용한 주요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의 의의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영국 및 EU 지역정책의 발전과정과 신지리경제학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이론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영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지역정책을 수립해 온 국가로서 지역정책의 역사적 발전과 학문적 분석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II. 유럽의 지역정책

1. 영국

가. 지역정책의 발전과정

영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지역정책을 수립해 온 국가로서 지역정책의 역사적 발전과 학문적 분석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영국에서 지역정책이 가장 먼저 발달한 이유는 산업혁명 기간 동안 중요한 생산지 역할을 수행해 왔던 북아일랜드, 스코트랜드, 북잉글랜드, 남웨일즈 지역의 주요 산업기반인 조선업, 광산업, 철강업, 섬유업 등이 20세기 초반부터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최초의 지역정책으로 알려진 것은 1928년 수립된 산업이전위원회(Industrial Transference Board)인데, 이 위원회를 통하여 정부가 성장거점 지역으로 노동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이 정책은 노동인력을 산업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으로서 산업을 낙후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그 이후의 지역정책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30년대부터 영국의 지역정책은 산업육성 지역을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는데, 광산업 지역의 지원을 위한 Special Areas Act가 제정되었고, Special Areas Reconstruction Association을 설립하여 특정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가 지역정책의 획

1) Krugman의 1991년 논문 제목은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이다. 이를 직역하면 "(수확) 체증과 경제 지리학"이 된다. "지리경제학"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라 볼 수도 있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지리학(geography)과 경제학간의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Fujita and Krugman, 2004, p. 150). 이와 관련하여 Brakman 등(2001)은 교과서의 서문에 지리경제학(geographical economics)이 좀 더 적절한 용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economic geography 또는 geographical economics의 영문은 그대로 유지하되 번역은, 모두 "지리경제학"으로 표현할 것이다.

1980년대부터
영국의 지역정책 성격이
본질적으로 효율성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1982년 수도권지역의
기업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이
폐지되었고, 중앙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구의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기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에 ‘바로우 보고서 (Barlow Report)’를 통하여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고용률을 중앙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하여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정책에도 적용되는, 이른바 ‘지리적 케인즈정책(Spatial Keynesianism)’의 개념이 1940년대 영국에서 도입되었다.

영국에서 지역정책을 위하여 채택한 정책수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책들인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으로서 런던지역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거나, 공장 설립 요건으로 일정한 규모의 토지 사용을 의무화하여 낙후지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두 번째 유형으로 낙후지역 투자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금이 제공되었고, 세 번째 유형으로 낙후지역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강력한 정부개입 성격을 띤 영국의 지역정책은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의 경기침체 여파로 특정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정책의 명분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 들어서면서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지역정책의 실효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영국의 지역정책 성격이 본질적으로 효율성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1982년 수도권지역의 기업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이 폐지되었고, 중앙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구의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도 변화하였는데, 낙후지역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선별지원금(RSA: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제도가 채택되었다. 이 RSA 제도는 197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도입 초기에는 낙후지역의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금 역할을 수행하였었다. 그러나 1980년대 RSA의 성격이 중요하게 변화하여 영국 국경 내에서 입지를 변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RSA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경의 이유는 영국 내에서만 기업의 입지가 변경될 경우 지역적 관점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 국가적 관점에서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낙후지역 지원의 관점에서 기업입지를 결정할 경우, 비효율적인 입지 선택이 이루어져서 국가적 관점에서는 지역정책이 효율성 손실(negative-sum)을 가져오는 정책이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1990년대는 영국의 지역정책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 중요한 시기인데, 이

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EU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특히 유럽 차원에서의 지역정책 및 지역 지원금이 강화되면서 유럽 지역정책의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둘째는 1980년대부터 추진하여온 영국의 분권화 정책, 특히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대한 전폭적인 분권정책이 1990년대 가시화되어 지역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성격에서 분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이른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성장 전략도 1990년대 영국 지역정책의 성격을 변화시킨 요인이다.

1990년대는 영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친 EU 지역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인데, 이러한 EU 지역정책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지역간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과 동서 유럽의 냉전을 겪은 유럽으로서는 유럽 국가들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최우선의 정치적 가치가 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유럽의 이러한 정치적 환경이 EU 지역정책을 낳았고, 이 정책은 유럽통합을 위하여 낙후지역에 대하여 강력한 지원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²⁾.

이러한 EU의 지역정책 철학은 EU 지원금을 받는 국가의 지역정책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국의 1990년대 지역정책은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효율성 지향의 정책에 비하여 형평성을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영국 지역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산산업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의 홈페이지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곳에는 지역격차 완화가 영국 지역정책의 첫 번째 목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³⁾.

영국의 지역정책이 이처럼 지역간 경제성장 격차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최대한 강조하고 또한 효과적인 분권정책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전의 지역정책과 지금의 지역정책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업투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만, 지역지원금이 국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을 신설하여 분권화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영국 지역정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영국의 1990년대

지역정책은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효율성 지향의 정책에 비하여 형평성을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최근 동유럽국가들이 EU에 편입되면서 EU는 폴란드에 대하여 2007-2013 기간 동안 무려 850억유로(한화 약 148조 75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3) "We aim to help every region in England to increas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narrow the gap in growth rates between regions"
(<http://www.berr.gov.uk/whatwedo/regional/index.html>)

EU 지역정책의
세 번째 계획기간인
2007~2013년의 지역정책의
목적은 지역간 격차완화,
지역의 경쟁력 및
고용 제고, 유럽지역간
협력 등으로 설정되었다.

2. EU

가. 지역정책의 발전 과정

현재의 EU 지역정책은 1986년에 제정된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을 시작으로 추진되었는데, 1989년부터 5년 동안 600억유로를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재원으로 마련하였다. 그 이후 1992년 제정된 유럽연합헌장에서는 유럽 통합(cohesion)을 EU 지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EU 지역정책의 2차 계획기간인 1994년부터 5년간 EU는 1,630억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여 회원국들의 재원부담(additionality), 협력(partnership), 분권적 개발(subsidiarity)이라는 3대 목표하에 지역정책을 추진하였다. EU 지역정책의 두 번째 계획기간인 2000~2006년 동안에는 효율성 제고를 주 목적으로 하는 3개 유형의 구조기금을 위해 7년간 1,950억유로를 책정하였고, 특히 이 기간 동안 EU 기금의 성과관리가 강화되었다⁴⁾.

EU 지역정책의 세 번째 계획기간인 2007~2013년의 지역정책의 목적은 ① 지역간 격차완화(Convergence), ② 지역의 경쟁력 및 고용 제고(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③ 유럽지역간 협력(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등으로 설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EU는 전체 예산의 35.7%인 3,474억유로를 지역정책에 투입하는데, 「지역간 격차완화 목적」으로 지역정책 예산의 81.54%, 「지역의 경쟁력 및 고용제고」 목적으로 15.95%, 「유럽지역간 협력」 목적으로 2.52%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3대 목적 중에서 「지역간 격차완화」 목적으로 EFRD, ESF, Cohesion Fund 등이 활용되고, 「지역의 경쟁력 및 고용제고」 목적으로 EFRD 및 ESF, 「유럽지역간 협력」 목적으로 EFRD가 활용되고 있다(〈표 1〉 참조).

「지역간 격차완화」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의 낙후지역에 1,993억 유로가 지원되고, EU 확대에 따른 '낙후지역'에 통합기금(Cohesion Fund)의 형태로 695억유로가 지원된다. EU의 낙후지역은 1인당 GDP가 평균의 75% 이하인 지역으로서 현재 27개 EU 회원국 중에서 17개 회원국에 있는 84개 지역(region)이 지원 대상이고, 인구 기준으로는 약 1.54억명이 이 지역에 거주한다. EU 확대에 따른 '기존 낙후지역' (phasing-out)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과 같은 국가들이 해당되는데,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140억유로가 지원된다.

「지역의 경쟁력 및 고용 제고」를 위한 지역정책은 지역혁신, 지식기반 사회의

4) EU 지역정책 지원금은 지역발전 기금(European Fund for Regional Development: EFRD),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통합기금(Cohesion Fund)의 세 가지로 되어있다.

구축, 환경보호 등과 같은 경쟁력 요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고용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지원된다. 또한 대상지역은 격차완화 지역을 제외한 168개 지역이고, 인구 기준으로는 약 3.14억명이 이 지역에 거주한다. 약 1,900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19개국의 13개 지역은 EU 확대에 따라 낙후지역(Object 1 지역)에서 개발지역으로 전환된(phasing-in) 지역인데, 이 지역에 114억유로가 지원되고, 이 밖의 비낙후지역에 440억유로가 지원된다. EU 지역정책의 세 번째 목표인 「유럽지역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약 1.817억명(전체 EU 인구의 37.5%)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EU 지역정책은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은 유지하되, 이러한 지원을 받은 국가나 지역이 해당 재원을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들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1〉 EU 지역정책의 정책목적과 지원대상

(단위: 억유로)

정책 목적	예산	지원대상
지역간 격차완화(Convergence)	2,831 (81.5%)	EU 1인 GDP 평균 75% 이하 지역 EU 확대에 따른 기존의 낙후지역
지역의 경쟁력 및 고용 제고 (Regional Comp. and Emp.)	550 (16%)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이외의 지역
유럽지역간 협력 (European Territorial Coop.)	87.2 (2.5%)	국경지역

나. 리스본 아젠다와의 조화

2001년 EU 정상회담이 리스본에서 열렸는데, 이 때 EU정책이 경쟁력과 고용창출을 추구해야 한다는 리스본 아젠다가 채택되었다. 그런데 리스본 아젠다가 기본적으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완화를 중시하는 EU 지역정책과는 개념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충돌이 EU 지역정책의 지원대상을 경쟁력이 낮은 저소득 국가에서 경쟁력이 높은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기존의 EU 지역정책은 리스본 아젠다와의 조화를 위하여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은 유지하되, 이러한 지원을 받은 국가나 지역이 해당 재원을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들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EU 지역정책은 리스본 아젠다와의 조화를 위하여 「지역간 격차완화」 사업의 60%가 리스본 전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 및 고용 제고」 사업은 75%가 리스본 전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리스본 전략과 관련된 사업은 종류가 50여개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

krugman(1991)의 단순한 일반균형모형에 대하여 스웨덴 왕립 학술회는 경제학 분야에서 이른바 신지리경제학(NEG)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의되어 있어서 관련 사업의 선택 폭은 상당히 넓은 편이다. 예를 들어 R&D 및 혁신관련 사업 (중소기업 R&D 지원 등 9개 중분류 사업), 정보화 사업(광역네트워크 등 6개 중분류 사업), 교통인프라(철도, 항만 등 10개 중분류 사업), 에너지사업(태양광 등 8개 중분류 사업), 환경관련 사업, 재고용 교육사업(평생교육 등 3개 중분류 사업), 고용촉진 사업(창업지원 등 6개 중분류 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인적자원 육성사업(직능교육 강화 등 3개 사업) 등이 리스본 아젠다와 관련되어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III. 신지리경제학(New Economic Geography)

1. 전통적 지리경제학과의 관계

지역간 인구 및 자본 이동, 도시의 형성 과정, 도시의 경제적 장단점 등과 관련된 연구는 지역경제학(regional economics),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 지리학(geography) 분야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 지역이 인구와 자본의 구심력 측면에서 경제적 우위를 갖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과 경제성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Myrdal의 ‘연쇄적 인과성(circular causation)’은 전통적인 지리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 내용이다. 또한 노동공급이 상품소비를 용이하게 해서(상품 생산지에 가깝게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방효과(forward linkage)와 생산자들이 상품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후방효과(backward linkage)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인구·자본의 집적 및 도시집적이 일어난다는 점도 유명한 지리학자인 Hirschman에 의하여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Krugman(1991)이 인정하고 있는 전통적 지리학의 기존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2008년 스웨덴 왕립 학술회가 경제학 노벨상을 Paul Krugman에게 수여하면서 주요 연구결과로서 인용한 3편의 논문 중 하나인 Krugman(1991)에서 저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지리학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을 단순하면서 정밀한 모형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⁵⁾.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일반균형 모형에 대하여 스웨덴 왕립 학술회는 경제학 분야에서 이른바 신지리경제학(New Economic Geography, NEG)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⁶⁾. 사실 Krugman(1991) 이후 이 논문이 제시한 일반균형모형을 바탕으로 수많은 후속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으로 인하여 지리경제학의 새로운 연

5)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is story can be embodied in a simple yet rigorous model." (Krugman, 1991, p. 486)

6) "Krugman(1991) is commonly viewed as the starting point of new economic geography."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2008, p. 3)

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 지리학자들의 관점에서는 Krugman 이후의 연구결과들이 ‘新’ 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으로 불리는 것이 대단히 불만스러운 사건이기도 하다. 전통적 지리학자들의 Krugman(1991)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Fujita and Krugman(2004)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들은 이른바 신경경제지리학이 “새롭지도 않으며, 틀렸고, 어쨌거나 과거에 이미 나온 결과”라는 혹평을 마다하지 않았다(Isserman, 1996). 신지리경제학이 전통적인 지리학자들로부터 이러한 비판을 받은 것은 경제학적 방법론과 다른 사회과학 분야 방법론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학적 방법론은 현실에서 관찰되는 수많은 고민들을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요인만을 바탕으로 단순하면서 풍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화 작업은 현실 자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지리학적 관점과 크게 충돌되는 것이다⁷⁾. 특히 Paul Krugman은 밀바탕은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엄밀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최대한 단순화된 수학적 모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현상을 부각시키는 방법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⁸⁾⁹⁾. 결론적으로, 적어도 경제학계의 관점에서는, Krugman의 업적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기존의 지리학과는 달리 도시의 집적(agglomeration)을 하나의 모형 내에서 생성시켰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동이 어떠한 경우에 대규모의 경제집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하나의 단순한 모형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Krugman(1991)의 주요 업적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Krugman(1991)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지난 30여년간 수도권권의 경제집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논문은 그러한 경제집적이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가를 몇 가지 단순한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 즉 한 경제 내에서 두 지역(two-ness)간의 인구이동 및 자본이동 구조는 Krugman 모형의 중심-주변(core-peripheri) 모형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도시만을 중심으로 인구집중과 인구분산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도시경제학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통하여 발생하는 경제집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동이 어떠한
경우에 대규모의
경제집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하나의 단순한
모형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Krugman(1991)의
주요 업적이다.

7) 정준호(2000)에 Krugman類의 신지리경제학에 대한 지리학계의 비판이 잘 소개되어 있다. 이 글의 맺음말에 “크루그만의 경제지리학의 논의는 ‘경제학의 사회과학 식민화’ 경향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신지리경제학의 ‘모형’에 대한 지리학계의 반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반영해 준다.

8) “His sharp wielding of Occam’s Razor was so successful that the term “Krugmanesque” may yet enter the economics lexicon as the standard to which mathematical models aspire”. (Subramanian, 2006)

9) “Like a good columnist, he cuts to the quick of a problem, stripping it of clutter and encumbering nuance. The result is a revealing caricature: what economists call ‘models’”. (The Economist, Oct 16th 2008)

Krugman은 Dixit-Stiglitz모형을 통하여 수요-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외부효과가 경제집적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수도권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2. 신경제지리학의 주요 내용과 특징

Krugman(1991) 모형에서는 외부효과가 경제집적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 외부효과가 기술적 외부효과(technological externalities)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외부효과(pecuniary externalities)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완전경쟁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변화로 발생하는 금전적 외부효과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촉하지 않고, 생산 또는 소비가 특정지역에 집중할 만한 요인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즉 완전경쟁 시장에서 한 기업의 행위가 다른 기업의 상품수요를 증가시키더라도 상품공급이 '한계비용 = 가격'의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면 한 기업의 행위가 다른 기업의 이윤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반면, 불완전경쟁 시장에서 상품공급이 '한계비용 < 가격'의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면 한 기업의 행위가 다른 기업의 상품수요를 증가시킬 경우 그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금전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사실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정이 완전경쟁시장이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중요한 상품들은 대개 불완전경쟁하에서 공급된다. 따라서 Krugman(1991)은 이러한 시장 조건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품생산이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시장하에서 생산된다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완전경쟁 시장과는 달리 미시경제학적 분석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러한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소한 논문이 Dixit-Stiglitz(1977)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Krugman은 Dixit-Stiglitz모형을 통하여 금전적 외부효과가 경제집적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Krugman(1991) 모형의 두 번째 특징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운송할 때, 그 상품의 일부분이 손실된다는 가정을 하여, 교통비용이 생산지 및 소비지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상품이 지역간 이동할 때 상품의 일부가 손실된다는 개념은 Samuelson이 1950년대에 교통비용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했던 가정에, 상품의 일부가 손실된다는 이러한 가정의 특징 때문에 '얼음 덩어리'(icebergs) 가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품이 녹는다는 개념을 액면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다소 이상한 가정일 수 있지만, 지역간 또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있

어서 교통비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모형에 교통산업 분야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교통비용이 모형 내에서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얼음 덩어리 가정은 기발한 착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Krugman(1991) 모형의 세 번째 특징은 이 모형에서 발생하는 균형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개의 균형 중에서 어떠한 균형이 실제로 존재할 것인가는 모형의 출발점(initial condition)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실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경제의 진화(evolution), 역사성(historicity) 또는 경로 이동성(path dependency)이 Krugman(1991) 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Krugman 모형의 네 번째 특징은 일반균형모형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이다. Krugman은 신지리경제학의 특징을 “딕싯-스티글리츠, 얼음 덩어리, 진화, 그리고 컴퓨터”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Fujita and Krugman, 2004), 비록 단순한 가정들을 동원하였다고 하지만, 신지리경제학의 모형들이 복잡하고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시산을 통하여 모형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신지리경제학의 주요 특징들은 사실 Krugman(1991)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수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형의 주요 수식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내에서 소비자들은 농산품(A)과 제조업 상품(M)을 소비하고, 소비자의 효용함수 U 는 Cobb-Douglas 형태를 띤다. 또한 제조업 상품 M 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사 상품(c_i)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조업 상품에 대한 총 소비 M 은 이러한 개별 유사 상품들과 다음과 같은 CES 함수관계를 갖는다.

$$U = A^{1-\delta} M^\delta, \quad M = \left(\sum_{i=1}^N c_i^\rho \right)^{1/\rho}$$

이 식에서 M 의 특성을 음미해 보면, 상품의 다양성이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도록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Dixit-Stiglitz(1977) 모형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즉 이 식에서 모든 개별 상품의 소비량이 c 로 같다고 가정하면 M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 = N^{(1/\rho)-1} (Nc)$$

Krugman은 신지리경제학의 특징을 “딕싯-스티글리츠, 얼음 덩어리, 진화 그리고 컴퓨터”라고 지칭한 바 있다.

만약 지역 1에서의 기업 생산이 증가하면, 이 지역의 실질임금이 증가하여 노동인력의 유입을 가져오고, 이러한 노동인력의 유입으로 상품수요가 증가하면 금전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 식에서 Nc 는 실질 소비량이고, $N^{(1/\rho)-1}$ 은 상품의 다양성이 주는 추가적인 효용 증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상품간 대체성이 작을 경우(ρ 의 값이 작을수록) 상품의 다양성이 효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진다.

이제 소비자 효용함수를 구성하는 c_j 의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면, Cobb-Douglas 효용함수의 특성상 상품 M 의 효용 비중에 해당하는 δ 와 비례하는 소득(δY)이 상품 M 에 지출되므로 개별 상품 c_i 의 가격을 p_i 라 할 때 $\sum_i^N p_i c_i = \delta Y$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c_j 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c_j = \left(\frac{p_j}{I}\right)^{-\epsilon} \left(\frac{\delta Y}{I}\right), \quad I = \left(\sum_i^N p_i^{1-\epsilon}\right)^{1/1-\epsilon} \text{ and } \epsilon = \frac{1}{1-\rho} \quad (1)$$

즉 개별 상품 c_j 에 대한 수요는 가격 p_j 에 반비례하고, 소득 δY 에 비례하는데, 이 때 전체 상품의 가격지수라 할 수 있는 I 가 일종의 디플레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식 (1)의 의미를 음미하면, Krugman(1991) 모형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Dixit-Stiglitz 모형에서는 개별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인 효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식 (1)에서 N 이 증가할수록 전체 상품의 가격지수인 I 가 하락한다는 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만약 지역 1에서의 기업 생산이 증가하면, I 가 하락하므로 이 지역의 실질임금이 증가하여 노동인력의 유입을 가져오고, 이러한 노동인력의 유입으로 인하여 상품수요가 증가하면 또한 금전적 외부효과(pecuniary externalities)가 발생하여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될 유인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적인 효과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이른바 구심력(centripetal force)을 발생시킨다.

한편 이러한 구심력은 Krugman(1991) 모형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인력의 지역간 비이동성(immobility)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즉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인력이 상품을 소비할 때, 현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교통비용을 포함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여 온 상품은 교통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고 이는 결국 상품 생산자로 하여금 다른 지역의 구심력(집적 효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현지 생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10) $0 < \rho < 1$ 이므로 $\epsilon > 1$ 의 관계가 성립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즉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인력의 지역간 비이동성과 교통비용이 Krugman(1991) 모형에서의 한 지역으로의 경제집적을 억제하는 원심력(centrifugal force)으로 작용한다.

결국 두 개의 지역(core와 peripheri)이 존재하는 Krugman(1991) 모형에서 한 지역의 구심력과 원심력의 상대적 크기를 교통 비용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의 균형은 [그림 1]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① 애초에 두 개의 지역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1/2씩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만약 교통비용이 T^s 보다 크면 두 지역은 각각 상품을 생산하면서 애초의 제조업 인구 비중을 유지하는 균형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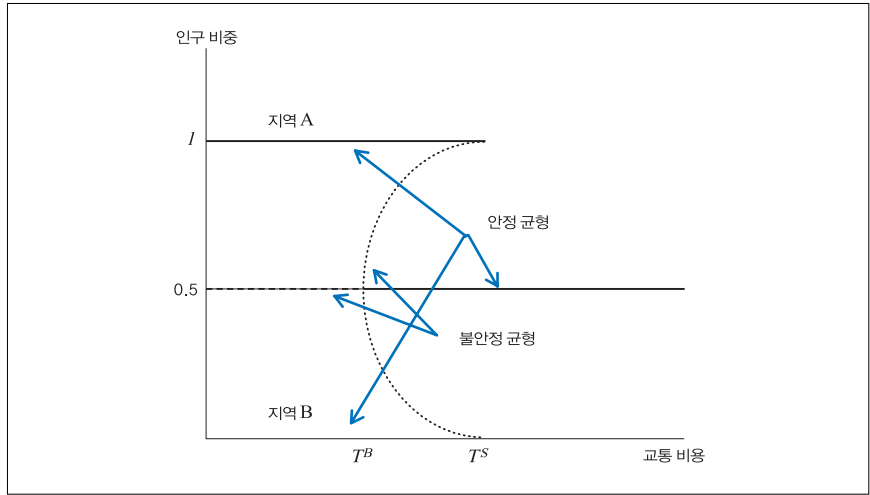
② 만약 교통비용이 T^s 보다 낮아지면 한 지역에서의 경제집적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지역으로는 제조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교통비용이 충분히 낮지 않아서 T^B 보다 크면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한다. 즉 경제집적이 지역 A에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 B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는 양 지역에 제조업 인구가 골고루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 개의 균형의 존재가 가능할 경우에 Krugman이 주장하듯이 경제집적은 지리적 역사성을 반영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지역 A에 좀 더 많은 제조업 인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비용이 충분히 줄면, 이 지역으로 모든 제조업 인구가 집중되는 이른바 파국적 변화(catastrophic bifurcation)가 발생할 수 있다.

③ 한편 교통비용이 매우 낮은 수준($T < T^B$)이 되면 제조업 인구가 애초처럼 1/2씩 거주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만약 어느 한쪽에 인구가 조금만 더 많아지면 그 지역으로 모든 제조업 인구가 몰리는 집적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역시 경제의 역사성이 중요해지는데,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지역 A에 좀 더 많은 제조업 인구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교통이 크게 발달하면, 그 지역에 모든 제조업 인구가 거주하는 집적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러 개의 균형의 존재가 가능할 경우에 Krugman이 주장하듯이 경제집적은 지리적 역사성을 반영한다.

Tabuchi(1998)는 전통적인 도시문제, 즉 도시에서 발생하는 혼잡비용이 경제집적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임을 신지리경제학의 모형에 반영한 바 있다.

[그림 1] Krugman(1991) 모형의 교통비용과 각 지역 인구비중 관계



Krugman(1991) 모형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모형에서 경제집적과 관련된 원심력, 즉 경제집적의 경제적 단점으로 인하여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은 오직 다른 지역으로 제조업 상품을 수출할 때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Krugman(1991)은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도시문제,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과 혼잡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모형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단순화된 모형을 통하여 도시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원심력 요인들 중에서 교통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교통비용이 충분히 낮아질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구가 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도권의 경제집적 현상이 매우 강력하기는 하지만 전체 인구가 이곳에 거주할 정도로 경제집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경제집적을 모형에서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도시문제를 Krugman류의 신지리경제학 모형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할 터인데, Tabuchi(1998)는 전통적인 도시문제, 즉 도시에서 발생하는 혼잡비용이 경제집적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임을 신지리경제학의 모형에 반영한 바 있다. 또한 Suedekum(2006)은 Krugman(1991) 모형에서 도시의 주택비용이 빠져

있는 단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주택비용이 기존의 신지리경제학 모형에 비하여 경제집적의 수준을 크게 완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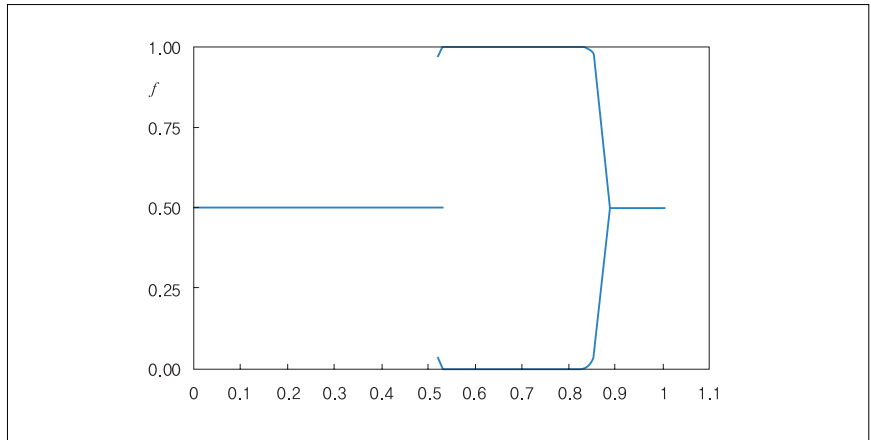
도시의 혼잡비용이 Krugman(1991)의 모형에 추가될 경우를 [그림 1]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 혼잡비용이나 주택비용과 같은 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한 지역에 모든 제조업 인구가 몰리는 집적현상은 단순화 모형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지역의 인구집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이 지역의 혼잡비용이나 주택비용이 또 다른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2]에 묘사된 Tabuchi(1998) 모형의 시산 결과를 예로 들면, 애초 두 개의 지역에 제조업 종사 인구가 1/2씩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간 교통비용이 상당히 높으면 이러한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 그리고 지역간 교통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높으면 한 지역으로의 경제집적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교통비용이 충분히 낮다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이동할 때 수반되는 교통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몰려 발생하는 혼잡비용은 크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모든 제조업 인구가 몰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그림 2]에 묘사된 것처럼 교통비용이 상당히 낮은 경우, Krugman(1991)의 모형에서처럼 모든 인구가 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두 지역에 1/2의 인구가 거주하는 애초의 균형이 유지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결과들이 제공하는 중요한 시사점은 Krugman(1991)이 액면 그대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통비용 및 주택비용의 효과 이외에, 현실적 적용성 측면에서 이 연구가 고려하지 않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세금을 걷고 이를 각종 공공재에 지출하며, 또한 각 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이전재원과 직접지출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게 지역간 인구분포에 영향을 미칠 터인데, 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 연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사실 Fujita and Krugman(2004)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지리경제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현실적인 정책시사점이 도출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들을 촉발시킨 분석적 틀을 Krugman(1991)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신지리경제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현실적인 정책시사점이
도출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Tabuchi(1998) 모형의 교통비용과 인구비중의 관계



IV. 맺음말

유럽의 지역정책 발전과정과 신지리경제학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러한 제도들과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30여년간 지속적인 현안이 되어 온 수도권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유럽의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면 수도권정책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의 지역정책, 특히 영국의 지역정책의 발전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지역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생산활동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들은 영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던 정책이다. 그러나 기업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는 기업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정책을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 거의 폐지하였다. 수도권의 기업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은 특히 국제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 21세기에는 더욱 더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수도권 기업입지를 제한할 경우 투자자들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 입지를 선택하지 않고 국외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영국과 EU의 지역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시사점은 기업입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 재원을 통하여 지역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 도입한 RDA 및 RDA의 단일예산제도(Single Pot)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EU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기금은 유럽 전역의 지역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과 EU 지역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시사점은 많은 국가들이 지역정책의 본질이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 완화가 지역정책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또 한편 비효율성이 큰 지역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EU의 경우 구조조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이전재원의 배분은 각 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반영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통하여 배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리스본 아젠다에 나타나 있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규제와 인센티브가 활용되고 있다.

신지리경제학의 경우 이 이론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의외로 명확하지 않다. Krugman(1991) 및 그 이후에 제시된 신지리경제학의 모형을 가장 단순하게 이해할 경우, 경제집적이 시장기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따라서 정부가 특별히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수행해야 할 정책은 없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지리경제학에서의 시장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는 완전경쟁적 시장기능이 아니고, 자원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독점적경쟁의 시장기능의 결과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신지리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Ottaviano와 Thisse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설명되고 있다¹¹⁾.

신지리경제학이 시사하는 집적경제가 본질적으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지리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도시문제 등을 포함하여 생각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집적경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규모 완화가 잠재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훈(2003) 및 김정훈·김현아(2007)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중앙정부와 수도권간의 세원배분 및 세출책임 배분 문제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수도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채택되는 다양한 지역정책들이 지역간 형평


신지리경제학에서의 시장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는 완전경쟁적 시장기능이 아니고, 자원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독점적경쟁의 시장기능의 결과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 "our tenet is that the most relevant explanations of the observed agglomeration of economic activity need to be based on some distortions of the competitive mechanism and, consequently, market outcomes are likely to be inefficient". (Ottaviano and Thisse, 2001, p. 153)

신지리경제학의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가장 큰 특징은 집적경제의 균형이 경제적 역사성 또는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신지리경제학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신지리경제학의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가장 큰 특징은 집적경제의 균형이 경제적 역사성(historicity) 또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단 경제집적이 발생하면, 이러한 경제집적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신지리경제학의 연구결과들이 시사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수행된 여러 가지 수도권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자본 집적의 유입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온 점도 바로 신지리경제학이 보여주는 집적경제의 연쇄적 인과성(cumulative causation)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신지리경제학이 지역정책에 대하여 현실적인 시사점을 많이 제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Fujita and Krugman(2004)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신지리경제학이 아직까지 현실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지리경제학에서는 아직까지 정부간 이전재원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으로 분석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분석이 진전되면, 보다 현실적인 정책 시사점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정훈, 『지방자치단체 純 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김정훈·김현아,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정준호, 「폴 크루그만의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 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공간과사회』 13, 2001, pp. 312~328.

Brakman, Steven, Harry Garretsen, and Charles van Marrewijk, “An introduction to geographical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Dixit, Avinash and Joseph Stiglitz,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7, 1997, pp. 297~308.

- Fujita, Masahisa and Jacques-Francois Thisse, "Does Geographical Agglomeration Foster Economic Growth? And Who Gains and Loses from It?,"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54, 2003, pp. 121~145.
- Fujita, Masahisa and Paul Krugman, "The new economic geography: Past, present and the future," *Papers in Regional Science* 83, 2004, pp. 139~164.
- Hirose, Kyoko and Kazuhiro Yamamoto, "Knowledge spillovers, location of industry, and endogenous growth,"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1, 2007, pp. 17~30.
- Isserman, M., "It's obvious, it's wrong, and anyway they said it years ago? Paul Krugman on large citie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9, 1996, pp. 37~48.
- Krugman, Paul,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1991, pp. 483~499.
- Neary, Peter, "Of Hype and Hyperbolas: Introducing The New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 2001, pp. 536~561.
- Ottaviano, Gianmarco and Thisse, Jacques-Francois, "On economic geography in economic theory: increasing returns and pecuniary externaliti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 2001, pp. 153~179.
-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Scientific Background on the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2008, Trade and Geography ? Economies of Scale, Differentiated Products and Transport Costs," 2008
- Subramanian, Arvind, "Economist as Crusader," *Finance & Development* 43, IMF, 2006
- Suedekum, Jens, "Agglomeration and Regional Costs of Living,"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6, 2006, pp. 529~543.
- Tabuchi, Takatoshi, "Urban agglomeration and dispersion: a synthesis of Alonso and Krugman," *Journal of Urban Economics* 44, 1998, pp. 333~351.

골프장의 조세문제: 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 보편적 틀 내에서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yhrut@kipf.re.kr)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추진되어 골프장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년 9월에 개정되었다.

I. 서론

2008년 상반기부터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어 골프장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에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 제188조). 또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조특법 제104조의 12, 제112조 신설).

본고는 골프라는 체육서비스산업이 갖는 토지 사용의 특수성을 타 산업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원칙 관점에서 현재의 골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사업자)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어떠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라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조세특례’나 ‘규제완화’, ‘보조금지급’ 등 공공정책수단을 통한 혜택을 기대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제도적 요인들(institutional factors)이 있는 경우 외국제도와 의 단순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기존의 골프산업과 관련된 정책논의 보고서들은 주로 업계종사자, 세

법 및 세무실무자들이 다루어 왔다. 그러나 골프라는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 및 그 시장에 대한 공간경제학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조세정책문제로 접근한 방법론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골프에 대한 조세정책 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대체로 대중골프장이나 비수도권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만들어가는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이용자에 대한 소비세나 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자산과세 등 관련되는 기준과세제도(Baseline taxation)를 바꾸기 전에 2년간 시범사업(pilot test program)으로 시행해 보고 정책 효과를 평가한 후 기준과세제도에 관한 정책 변경을 논의하자는 현실적 태도를 취하였다. 과연 지난해의 골프장 관련 세제정책 변화가 소기의 취지 및 정책의도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달성하였는지, 또 실효성을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예를 들어, 세제 변화 이외의 환율 변동에 따른 국내골퍼의 해외골프여행 수요 감소나 해외골퍼의 국내골프장 이용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해당 정책 변화 이외의 여타 요인들에 의한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골프장사업은
사업주체나 운영방식에
불문하고, 그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토지의 대규모 이용이
불가피한 생산함수적
특징이 존재한다.

II. 토지사용의 산업별 특수성과 과세정책: 골프장사업의 사례

1. 골프장사업과 토지사용의 특이성

골프장사업은 사업주체나 운영방식에 불문하고, 그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토지의 외연적 이용(extensive use)¹⁾이 불가피한 생산함수적 특징이 존재한다. 대중골프장이든 회원제골프장이든 골프라는 레저 및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하는 ‘공간적 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소비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서비스 생산을 위해 상당히 넓은 지표(ground surface) 면적을 필수적 투입요소로 하는 산업’이라는 특이성이 부각되는데, 이는 골프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과 달리 토지를 집약적(extensively)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심지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조림업(forestry), 포도재배단지(winery), 건조를 위한 벽돌제조업과 유사하게 생산적 목적을 위해 토지를 넓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1) 토지의 사용에 있어서 외연적 이용(extensive use)이란 집약적 사용(intensive use)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토지 위의 공간구조를 상정하여 허공으로 높게 건축물을 짓는 등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낮게 또는 건축물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 10만명당
한 개의 골프장을
시장수요 포화상태의
골프장 수라고 판단하면
현재의 300여개에서
60%가 증가한 480개
정도가 최대 골프장
수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과세제도(Baseline Taxation)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골프장(골프사업자)에 대한 토지세 과세정책은 오랜기간 동안 이러한 산업적 특이성이 감안되고 배려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 그 이유는 골프장 이용자들이 고소득 부유층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세제우대 혜택 부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존재했고, 골프장 주변의 농업 및 산림지역 주민공동체(community)와의 환경 관련 갈등문제 등이 주요 요인들이었다.

2005년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골프장사업에 대한 기존의 사치성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산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생산적 산업의 하나로 인정하려는 시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발전예 따른 소득 증가로 골프인구가 급증하자 국내의 고가 골프이용료를 회피하는 해외원정 골프관광객의 증가와 회원권 거래가격의 급등 현상이 정책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해외관광객들이 관광패키지 중 일부로 국내 골프장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골프장의 국제적 가격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골프장 이용서비스요금이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골프장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인 토지를 저가로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과세정책이 여전히 수도권지역 내에는 수요억제적 목적을 위해 합산누진과세 등 중과정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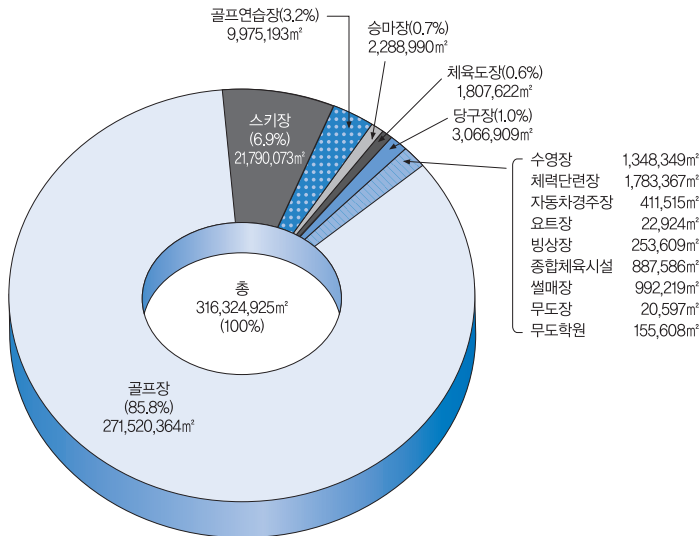
이러한 산업적 특이성을 인정하여 타 서비스업종이나 산업들과 차별화된 토지세 과세정책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정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1]에 따르면 전 국토면적(9.97만km²) 중 체육시설업이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는 총 316km²이고 이 중 85.8%가 골프장업에 사용하여 국토면적 중 0.27%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승인건수와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구 10만명당 한 개의 골프장을 시장수요 포화상태의 골프장 수라고 판단하면 현재의 300여개에서 60%가 증가한 480개 정도가 최대 골프장 수라고 볼 수 있다.²⁾

그렇다면 전 국토면적의 0.5% 미만을 차지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이고 보전산림을 잘 활용한 골프장 건설로 서비스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기존 용도의 토지를 골프장용 토지로의 이용 전환은 그리 큰 규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 골프장의 과다공급으로 유휴시설화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2,500개의 골프장이 존재하여 인구 5만 2천명당 1개의 골프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20여개의 골프장이 있어서 인구 15만 6천여명당 1개의 골프장이 있는 셈임. 현재 326개의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건설중인 골프장이 122개, 허가가 추진중인 골프장이 183개임을 감안하면 향후 520여개에 달해 과다공급될 가능성도 존재함.

[그림 1] 체육시설 업종별 면적분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2008.

2007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수요 예측치 자료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골프서비스산업이 서비스수출 효과종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관광, 레저, 체육 등 생산적 목적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자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소유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토지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제조업과 같은 생산 목적용 토지이용의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의 예처럼 지표면(ground surface)뿐만 아니라 3차원적 공간(허공)을 활용한 집약적 토지이용(intensive land use)이 가능하지만, 골프장은 가상공간에서의 골프게임이나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과 달리 지표면을 대규모로 수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격에 따른 증가세구조로 토지과세를 하는 기존 과세정책하에서는, 골프장용지의 토지세 부담이 높더라도 골프 및 골프장 수요 증가 때문에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007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수요 예측치 자료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골프서비스산업이 서비스수출 효과종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골프서비스는 부동산 관련업이 갖는 위치 의존성(location dependency) 특성 때문에 국제간 서비스교역에서 완전교역재(Tradable good)와 국내재화(Home good)의 중간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아시아권내 주변국들과의 가격경쟁력도 그린피 등 단순 이용료뿐만 아니라 여행·숙박 등 기타 부수비용도 감안하여야 하고 가격 외의 질적 요인들도 골프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고지가, 높은 노동집약성과 높은 인건비 등의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타 산업과 비교하여 골프장산업에 대해 과도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여행수지 개선효과 등은 내국인의 수입수요(해외골프여행)를 대체하는 차원일 뿐 외국인 골프여행객을 유치하는, 즉 서비스수출산업으로까지의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규제·조세·부담금 등의 제도적 요인들을 주변국 수준으로 맞추어 준다고 하더라도, 고지가, 높은 노동집약성과 높은 인건비 등의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타 산업과 비교하여 골프장산업에 대해 과도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1>은 일본 골프장의 노동집약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대조할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지만 골프장당 평균 종업원 수는 캐디 사용인원이 많아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일본 골프장 업무별 평균 종업원 수(2004년 기준)

(단위: 개, 명)

골프장수	전체 종업원수	골프장당 평균 종업원수	업무별 평균 종업원수					
			관리·영업 부문	프린트	시설·조경 부문	캐디	식당·매점 (직영)	기타
2,026	128,995	64	7.1	4.9	12.1	24.9	9.9	5.2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특정서비스산업실태조사』, 2004.

2. 회원제골프장 및 대중골프장의 구분과 관련 차등과세제도와 문제점

소유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골프장의 법적 실체 및 조직, 그리고 운영방식에 서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영미식의 회원제 골프장(Private Membership Golf Club(Course))은 회원에 가입하거나 회원의 동반자로서만 이용가능한 골프장으로 지분소유형 골프장회원권과 비지분소유형 회원권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주로서 골프장의 소유와 운영에 참가하는 반면, 대중골프장(Public Course)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골프장으로 자기자본으로 건설하여 방문객 수입으로 경영하는데 미국 전체 골프장 중 약 75%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시영 골프장(municipal course)이라 하여 지역거주민에게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골프장은 사단법인제³⁾, 주주제⁴⁾, 예탁금제⁵⁾의 3가지 회원제 형태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순수비회원제는 15%를 차지하며 나머지 20%는 혼합형태로 운영되는데⁶⁾ 대규모기업형 골프장들은 용이한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해 위

3) 골프와 스포츠의 진흥이라는 공익법인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주무관리부처의 허가를 필요로 함. 법인 구성원이자 동시에 골프장의 멤버가 되는 초기 회원제 형태로 1966년 이후 신규인가가 중단됨.
 4) 신규 사단법인 인가가 어려워지자 1955년 이후 등장한 조직형태로 회원권금액 만큼의 출자에 따른 주주로서의 경영참여가 인정되며 해산시 청산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됨.
 5) 무이자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예탁하고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갖는 대가로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채권 채무적 지위가 인정되는 형태임.
 6) 일본 경제산업성, 『특정서비스 산업실태조사』, 2004년(평성16년)

탁금회원제를 선호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골프장 건설이 시작되면서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예탁금 형태의 회원제를 받아들였으므로, 과거 허용되었던 일부 주주회원제 골프장과 소유·운영 및 이용에 있어 회원의 영향력이 일부 인정되는 사단법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원제는 일반예탁금회원제이다.

2008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의 공식적인 구분이 마련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회원제와 대중골프장 간 전환과 동일 사업자의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병설이 가능하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의 법적 실체는 회원의 해당 골프장에 대한 우선적 및 차별적 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채권적 법률관계이므로⁷⁾, 골프장내 토지나 건물 등 부속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나 공동소유자로서의 지분권, 그리고 사단법인의 사원권 등이 부인되어 소유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달리 골프장 이용에서 있어서 회원과 대중 간의 차별이 없을 뿐 민간 사적재화·서비스를 예약 후 구매·소비하는 곳이고, 미국의 시영골프장(municipal course)에서와 같은 '공공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과의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이용의 대중 접근성에서 찾을 수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및 운영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한 차등과세의 합리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하에서는 매년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법논의가 제기되었다. 골프장이라는 특정 체육시설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 및 위탁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실체인 골프장회원권이 골프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서 경제적 지대가치(economic rent)를 갖게 되어 자산으로 거래되면서 급등하였기 때문이다⁸⁾.

주주형 회원제골프장의 경우는 골프장의 사업용 부동산자산에 대해 1차적 재산세 과세 후 이를 기초로 파생된 주식에 대한 2차적 재산세 과세라는 이중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만, 위탁금 회원제골프장의 회원권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가 법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⁹⁾.

한편 특정체육시설물에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만 물세(物稅)로서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인의 행위' 중 소비행위 대상물별로 차등과세하는 인세(人稅)로서의 성격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한 물리적 체육시설물의 구조적 차이가 명백해야 차등과세에 따른 과세당국의 세원관리에도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과의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이용의 대중 접근성에서 찾을 수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및 운영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7) 대법원 1992.5.22. 선고 52다 7238 판결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회원에 대한 정의에서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규정함.

8) 2009년 2월 1일 국제청이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상위 1, 2위의 남부 및 가평베네스트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2008년 8월 1일 대비 40%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고도 12.5억원 및 8.9억원에 달하는데 최초 분양 당시의 회원위탁금은 2.5억~3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됨(부표 1) 참조.

9)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세법 중 재산세 과세대상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현실 경제생활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타 재산들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국제인 양도소득세는 기타자산소법 제94조 제항 제4호) 중 나목의 '이용권·회원권'으로,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2호)으로 각각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음.

수도권 내 회원제골프장
이용의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체육·레저 목적이
서비스의 본질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골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조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소비과세의 근간은 부가가치세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한 물품에 대한 소비 및 특정장소에의 입장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재 입장하여 관련 설비 및 용품을 이용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로 특정된 것은, 경마장(500원), 투전장소(1만원), 카지노(5만원), 경륜장·경정장(200원)과 같은 사행성 행위장소와 골프장(1.2만원)이다. 대중골프장과 비수도권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된 것으로 미루어 골프장 입장 후 골프활동 그 자체는 사치성 및 호화성 물품소비와 유사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입장자들이 모두 '내기골프'만 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도권 내 회원제골프장 이용의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체육·레저 목적이 서비스의 본질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만일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에의 입장 및 이용자가 고소득자라고 추정하여 부가가치세에 추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목적을 추구한다는 인세적(人稅的) 차원의 과세논리라면, 소비과세보다는 회원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재산보유과세 쪽에서 해당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조세정책상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 차등과세에 따른 탈세 및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 간 병설(겸용) 허용¹⁰⁾에 따라 소비자는 예약할 때나 라운딩 후에도 대중골프코스를 이용하였는지 회원제골프코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세정당국도 개별소비세 세원관리를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07년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158개 회원제골프장 사업장은 1,446만명의 입장인원으로 1,735억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는데, 골프장경영협회의 동년 회원제골프장 이용객 수는 1,484만명으로 나타나 37.8만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10) 2008. 2. 29일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원제골프장업을 신규로 사업등록하려는 자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규등록 회원제골프사업장들의 경우 동일 골프장 내에 회원제코스과 대중코스가 혼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임.

〈표 2〉 골프장경영협회 통계와 국세통계연보상의 입장객 수 차이

(단위: 만명, %, 백만원)

연도별	이용객 수 ¹⁾	회원제		신고 사업장수	입장인원 ¹⁾ (B)	입장객 수 차이 (A-B)	부과 세액
		골프장 (A)	대중 골프장				
2001	1,288 (7.3)	987(76.6)	285(22.1)	133			123,033
2002	1,442(12.2)	1,084(75.2)	358(24.8)	109			127,460
2003	1,541 (7.2)	1,142(74.1)	385(25.0)	121			135,889
2004	1,661 (7.9)	1,214(73.1)	433(26.1)	138			142,245
2005	1,785 (7.0)	1,268(71.0)	503(28.2)	134	1,230.2	37.8	147,731
2006	1,973(10.4)	1,344(68.1)	615(31.2)	143	1,304.7	39.3	156,561
2007	2,238(13.5)	1,484(66.3)	742(33.2)	158	1,446.2	37.8	173,541
2008	2,398 (7.9)	1,565(65.3)	833(34.7)				

주: 1) 골프장경영협회 통계의 입장객수와 국세통계연보상의 입장인원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내장객 정보(200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골프장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제도는 회원제인지 대중골프장인지, 그리고 수도권인지 비수도권 및 제주도인지와 같은 사업장의 입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등과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3. 현행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제도

골프장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제도는 〈표 3〉의 상단에 정리되어 있는데 회원제인지 대중골프장인지, 그리고 수도권인지 비수도권 및 제주도인지와 같은 사업장의 입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등과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골프장 사업 부동산 보유과세의 기본틀은 수도권 소재 회원제골프장은 가장 무겁게 과세하고 제주도 및 대중골프장은 가장 가볍게 과세하고 그 중간에 비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따른 지방세만 부과되지만, 토지의 경우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의 재산세와 중앙정부 국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가 이원적 구조로 과세되면서도 개발지인지 원형보전지인지에 따라 세율 및 과표율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지방세(예: 취득세, 재산세)를 통한 세제지원정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보전계획이 마련되어 세수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관한 지방자치단체가 호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재정적 측면의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한편, 2008년 말 재산세 및 종부세법이 개정시 과표구간이 넓어짐에 따라 골프장 관련 보유과세 세부담도 많이 경감될 전망이다.

〈표 3〉 골프장 사업자 구분에 따른 과세 현황

(단위: 만명, %, 백만원)

구분		대중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수도권	비수도권		
보유세	토지	재산세 ²⁾	0.2~0.4% (별도합산)	4% (분리과세)	2%	3%(분리과세)
		종부세	0.8% (별도합산과세특례 ¹⁾)	없음	없음	없음
	원형보전지	재산세 ²⁾	0.2~0.4% (별도합산)	0.2~0.5% (종합합산)	0.2~0.4% (별도합산)	0.2%(분리과세)
		종부세	0.8% (별도합산과세특례 ¹⁾)	0.5~0.7% (종합합산)	0.8% (별도합산과세특례 ¹⁾)	없음
건물	재산세 ²⁾	과세표준액의 0.25%	과세표준액의 4%	과세표준액의 2%	과세표준액의 0.25%	
취득세 ²⁾		취득가액의 2%	취득가액 10% (5배중과)	취득가액의 2%	취득가액의 2%	
등록세		매매: 취득가액의 2% 신축: 취득가액의 0.8%	매매: 취득가액의 2% 신축: 취득가액의 0.8%	매매: 취득가액의 2% 신축: 취득가액의 0.8%	매매: 취득가액의 2% 신축: 취득가액의 0.8%	
개별소비세 ³⁾		없음	1회 입장시 : 12,000원/인 *농특세,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체육진흥기금 : 3,000원	없음	없음	

주: 1) 별도합산과세특례: 공시지가 전국합산분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적용('07~'09년까지)
 2)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한해 2년 일몰제(취득세 '08. 9~'10. 12, 재산세 '08. 6~'09. 12)
 3)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은 회원제골프장에 한해 부과, 단, 지방회원제골프장에 한정하여 2년 일몰로 폐지(2010. 12. 31까지)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한편, 2008년 말 재산세 및 종부세법이 개정시 과표구간이 넓어짐에 따라 골프장 관련 보유과세 세부담도 많이 경감될 전망이다.

골프장용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5억원 이하에 대한 0.75%, 15억~45억원에 대한 1.5%, 45억원 초과에 대한 2%의 대폭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별도합산 대상 토지라 하더라도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70%('09년) → 75%('10년) → 80%('11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200억원 이하), 0.6%(200억~400억원), 0.7%(400억원 초과)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과거 수도권지역 18홀 기준 신규 골프장의 평균 초기투자비용 1천억원 중 650억~700억원이 토지매입비용이고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 그리고 과표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감안할 때 종합합산과세대상 유형의 토지가 많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한계실효세율이 과거 3%를 넘을 수 있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0.5% 정도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¹¹⁾.

한편 과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연도별) 과표적용률은 2006년 70% 수준에서 매년 10%씩 인상하여 2009년부터 100%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유형토지는 2006년 55% 수준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 100%로 하도록 2005년 말에 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절한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탄력적으로 규정' 하지는 취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규정(중부령 제2의 3)을 통해, 주택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80%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2009년 70%, 2010년 75%, 그리고 2011년 80% 수준에서 그치는 것으로 개정되어 과표율 연도별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였는지와 같은 정책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힘들지만, 지가안정이나 토지소유분포 개선과 같은 거시적 정책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판단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I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의 토지세인 토지분 재산세와 중부세는 과세대상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차등과세하는 과세구조를 갖고 있다.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하여 '한정된 토지의 집약적·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1990년 초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도입된 종합토지세를 원형(proto type)으로 삼고 있다. 과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였는지와 같은 정책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힘들지만, 지가안정이나 토지소유분포 개선과 같은 거시적 정책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판단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¹²⁾.

반면 골프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활동에 있어서 노동-자본-토지 간의 결합관계가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기본과세제도 입안시 반영하지 못한 채로 설계되거나 그 이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장기간 이를 기준과세제도도 삼으면서 예외적으로만 입지(location) 및 운영구조에 따라 세분화하여 토지세 세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이라는 부작용이 가중된 부분도 있다. 전술하였듯이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부 서비스산업의 필수투입요소인 토지에

11) 법정명목세율이 종합합산 토지분 중부세의 경우 3억원을 공제한 97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 1000분의 40, 즉 4%이고 과표율을 80%로 상정해도 최고구간의 한계실효세율은 3%에 달하였으나, 2008년 중부세법 개정으로 최고명목세율 0.7%에 과표율 80%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0.5%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2) 노영훈(2004) 참조할 것.

과세대상토지를
분리과세 그리고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상적으로 토지공간을
이용하는 개념이 전제된
계획경제적 발상에 기인한다.

대해, 기준(baseline)이 초과하지 않는 분리과세대상인면서 예외적으로 낮은 누진합산과세인 별도합산대상 유형으로 과세처리하는 것이 기본틀이 되었어야 했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법규에 의해 일정비율의 토지에 대해 원형보전지로 유지하면서 과세유형대상 토지분류 중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하고 또 종합부동산세까지도 부과하는 것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보상적 경감조치라는 보편적 토지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편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내 사권제한토지를 준용하거나 보전녹지용도에 준하는 세부담 수준으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세대상토지를 분리과세 그리고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상적으로 토지공간을 이용하는 개념이 전제된 계획경제적 발상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제도, 예를 들어 지역·지구·구역지정제도나 이용행위허가·인가·승인제도를 통해 달성해야 할 정책목적은 조세라는 정책수단으로 달성하려 함으로써, 조세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인 '경제적 비효율성의 최소화'가 항상 우려되던 토지세제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허가당국이 산림보전지역 내 토지를 골프장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나서 과세당국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특정 토지 내에서의 이용행위를 토지이용계획(planning) 차원에서 제한하는 경우 철저하게 준수되면서 오히려 사권제한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보유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허가·인가받아 등록됨으로써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야 할 경제행위가 용인되면서 추가적으로 부과세라는 세금제도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려고 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소유구조의 개편이나 지가안정과 같은 중앙정책당국의 정책 목적은 대부분 실효성이 낮았다는 판단이다.

현재의 분리·별도합산·종합합산 과세대상 유형구분은, 일단 분리하여 초과나 경과하는 토지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별도합산과세대상 유형인지를 판별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처리되므로, 별도합산 유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섰느냐가 영업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토지와 건축물간의 집약도에 있어

서 산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거의 20년간 토지세과세대상 유형구분의 기본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특례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골프장용지에 대한 보유세제는 산업적 토지사용의 특이성이 감안되지 못한 토지세제의 한 사례로, 향후 전반적 재산(보유)세 체계 개편을 앞두고 토지세제의 하부구조로 어떻게 설계할지를 검토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용부동산은 '기업에 대한 부유세(Net Worth Tax)'적 개념에서 접근하던 관점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지방재산세를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주요재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제주체의 투자나 소비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정책당국자의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할 때이다. **KIPF**

기본적으로
사업용부동산은
'기업에 대한 부유세'적
개념에서 접근하던
관점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세금관련 참고자료』, www.kgba.co.kr
 _____, 『골프산업 현황 및 대책』, 2007. 7. 30
 노영훈,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4-11, 한국조세연구원, 2004
 _____,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8. 2
 _____, 『토지세 과세대상유형 분류 개선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3월호 통권 제 1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08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2008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kimjaeji@kipf.re.kr)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첫해인 금년에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제도가 정착함에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I. 서언

새로운 제도가 탄생한 이면에는 당시의 시대상황, 국민의 요구, 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학계나 정부, 국회 등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이 자리를 잡고 있다. 세계 최초의 조세를 통한 이전(Tax Transfer)방식인 EITC제도는 미국 정부가 1975년 근로빈곤층을 위하여 도입하여, 그로부터 약 34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규모나 수혜자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로 성장하였고, 미국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랜 논란 끝에 미국의 EITC제도와 유사한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도 소득부터 처음으로 적용되어 금년 9월에 최초의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첫해인 금년에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나, 제도가 정착함에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1960년대의 미국은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여 조세를 통한 이전(Tax Transfer)의 방식으로 EITC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EITC 제도 도입 이전에 전문가, 학계, 의회 등에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대한 시범사업

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그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하여 애초에 학계에서 제기된 「부의 소득세」의 변형인 EITC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후반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세계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국내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차제에 미국이 EITC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시대상황과 미국내 4개 지역에 나누어서 다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1935년 절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II. 시대상황과 Negative Income Tax 시범사업

1. 시대상황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미국 내에서 국민을 각종 사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 내 빈곤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안정을 위한 빈곤문제의 해결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35년 절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는 1935년에 도입한 유자녀 저소득 편부모가구를 위한 소득보조제도인 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1964년에 도입한 빈곤층의 영양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권 제도(Food Stamps), 그리고 1974년에 도입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조제도인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제도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등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

〈표 1〉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

구분	세부제도	주요내용	담당기관
현금지원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사회보장청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복지부와 주정부
	일반부조(GA)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현금(현물)급여	주정부
현물지원	식품권제도(Food Stamps)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	농림부
	의료부조(Medicaid)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저소득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복지부

자료: 박대식, 『미국의 복지개혁』, 2008

대공황 이후 경제 호황기로의 진입을 통해 미국은 경제적인 부는 축적하였지만 각종 사회문제의 발발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복지제도가 필요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보다 확대되었는데 당시 지원방식이 현금이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재정부담은 커진 반면 미국의 빈곤율은 12~15%로서 담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제도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등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 실제로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동공급이 10~20% 감소하였고 10년 이상의 만성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7%를 차지하는 등 당시의 복지제도는 근로자들의 시장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는 수급자격을 편부모 가구로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족해체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후 노동공급의 감소,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 등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요소가 투입된 근로연계 복지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케네디 행정부(1961~1963)는 빈곤, 실업, 인종차별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주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감세정책을 통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¹⁾. 이후 경제자문회의의 위

1) 감세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해 실업률을 낮추고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케네디, 존슨 행정부의 기본정책이었음(Heller, New Dimension, pp. 124~125).

원이었던 로버트 램프만(Robert Lampman)은 연구결과를 통해 감세정책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의장이었던 월터 헬러(Walter Heller)는 다른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존슨 대통령(1963~1969)은 케네디 행정부의 빈곤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빈곤의 원인은 환경, 즉 기회의 부족에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탈빈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존슨 대통령이 추진한 탈빈곤정책은 사회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1964년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의 제정에 이르게 되며, 이외에도 「빈곤추방법」(War on Poverty Act), 「지역사회활동법」(Community Action Act)²⁾, 「청소년사업법」(Youth Programs Act) 등 빈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이어서 제정되었다. 탈빈곤정책을 관할하는 경제기회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OEO)은 주민참여의 원칙을 분명히 하며 지방정부가 모든 복지정책을 기획, 집행하던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시행과정에서 지방정부, 민간기구, 정치인 등 사이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기득권 마찰이 자주 일어나 결국 의회는 1966년 빈곤퇴치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닉슨 대통령(1969~1974)이 당선되면서 빈곤과의 전쟁은 일단락되고, 1975년 의회의 결의로 경제기회청이 해산되었으며 시행 중이던 빈곤퇴치프로그램의 일부는 다른 부서로 이전되었다. 또한,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부의 소득세」(NIT)를 기반으로 한 「저소득가구지원제도」(Family Assistance Program; FAP)는 선거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이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국회 재정위원장이었던 러셀 롱(Russell Long)도 근로의욕 감퇴 및 사회보장으로 인한 재정 악화의 부작용을 이유로 「부의 소득세」의 도입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결국 닉슨 행정부의 「저소득가구지원제도」(FAP)는 1972년 하원은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좌절되었다.

2.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시범사업

미국은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 이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연방 차원의 복지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케네디대통령이 암살되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대통령은 1964년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였다. 닉슨대통령은 1969년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³⁾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가구지원제도」(Family Assistance Plan)를 제안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포드정부는 1975년 근로의무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EITC제

미국은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 이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연방 차원의 복지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2) 빈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빈곤정책과 구별

3) Earl Rolpf and George Break (1961), Milton Friedman(1962), Robert J. Lampman(1964) 등에 의해 제안

부의 소득세는
근로자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도를 「조세감면법」(Tax Reduction Act)에 근거하여 도입하였고, 카터정부는 1978년 공공부분의 직업창출을 통한 근로기회 보장과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직업및소득개선제도」(Program for Better Jobs and Income; PBJI)를 제안하였다⁴⁾.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EITC의 모태가 되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도입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부의 소득세는 특정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소득보장 수준에 미달될 때 그 차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즉, 최소소득보장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의 소득세(Positive Income Tax)가 발생하여 조세를 부담하지만, 최소소득보장 수준 이하의 소득을 획득한 가구에는 부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정부로부터 소득보조를 받게 된다. 부의 소득세 도입에 관한 주장은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많은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공공부조제도가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를 통한 소득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부의 소득세를 제안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Milton Friedman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간 차액의 50%를 부의 소득세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50%만을 보전받게 되고, 최저생계비의 50% 소득을 가진 가구는 자신이 취득한 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최저생계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의 소득세로 보전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최저생계비의 75%가 본인의 소득이 된다. 따라서 부의 소득세체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부의 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로부터 부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부의 소득세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 대상자는 물론 근로빈곤층도 수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부의 소득세는 근로자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50%인 경우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율만큼 급여가 감소하게 되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50%를 지급받게 되어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게 설정하면 저소득계층의 최소소득보장 수준이 낮아져 생활 수준이 악화된다.

실제로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부의 소득세는 수급자들의 근

4) 박대식, 『미국의 복지개혁』, 2008 참고

로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근로빈곤층의 근로동기 확보와 최소소득보장이라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 부의 소득세는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되었다.

가. 지역 시범사업 내용⁵⁾

미국의 4개 도시에서 부의 소득세 효과에 관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New Jersey, Iowa와 North Carolina에서 실행된 농촌지역은 저소득계층, Gary시와 Seattle-Denver는 고소득계층으로 표본가구가 구성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도시의 표본가구 수, 가족구성, 시범사업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부의 소득세 시범사업 세부내용

구분	표본가구수	가족구성	인종	시범사업기간
New Jersey (1968~1972)	1,357	남편-부인(100%)	백인(32%) 흑인(37%) 히스패닉(31%)	3년
Rural (1969~1973)	809	남편-부인(85%) 편모(15%)	백인(65%) 흑인(35%)	3년
Gary (1971~1974)	1,780	남편-부인(41%) 편모(59%)	흑인(100%)	3년
Seattle-Denver (1971~1982)	4,800	남편-부인(61%) 편모(39%)	백인(39%) 흑인(43%) 히스패닉(18%)	3년(71%) 5년(25%) 20년(4%)

자료: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1978), p. 316, Kehrer(1977); Robins(1985)

1) New Jersey 지역

경제기회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의 자금지원하에 New Jersey 3개 도시지역의 빈곤선 15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되었으며, 빈곤선의 75%, 100%, 125% 수준에서 세금공제율 30%, 50%, 70%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시범사업 후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특히 백인남성은 평균 노동시간이 5~6% 감소하였다. 그러나 흑인남성은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부의 소득세에 대한 첫 시범사업이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이후 더 큰 규모로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New Jersey 지역은 시범사업 후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특히 백인남성은 평균 노동시간이 5~6% 감소하였다. 그러나 흑인남성은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5) Gary Burtless, "The Work Response to a Guaranteed Income: A Survey of Experimental Evidence," Alicia H. Munnell (ed.), *Lessons from the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in September 1986*,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and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 22~52.

Seattle-Denver시의 시범사업은 대상자들을 주거지역, 가족구조, 소득수준에 따라 무작위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정책효과를 측정할 점에서 방법론상 우수한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0년대 말까지 정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2) Rural(Iowa/North Carolina) 지역

경제기회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의 예산지원하에 위스콘신대학의 빈곤문제연구소(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IRP)에서 주관하여 Iowa와 North Carolina의 농촌지역(비도시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분석 샘플을 임금소득자와 농장운영자로 나누고 이 지역의 시범사업에서는 임금소득자 표본가구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흑인 남성의 근로시간은 8% 정도 감소하였고 배우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참가 인종에 관계없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백인남성의 근로시간은 약 1~2% 증가했다.

3) Indiana주 Gary시

Gary시의 시범사업은 보건교육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서 실시하고, Indiana 대학이 주관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남성 가구주의 경우 평균 노동시간이 3~6% 감소하여 타 시범지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여성 가구주는 평균 노동시간이 26~30%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배우자의 노동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Seattle-Denver 지역의 시범사업과 크게 다른 결과로서 Gary시의 노동시장이 기혼여성에게 파트타임 근로를 제공한 결과로 보인다.

4) Seattle-Denver 지역

Seattle-Denver시의 시범사업은 Gary시와 동일하게 보건교육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서 주관하였다. 대상자들을 주거지역, 가족구조, 소득수준에 따라 무작위로 비교집단(control group)과 실험집단(experiment group)으로 나누어 정책효과를 측정할 점에서 방법론상 우수한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장된 소득수준은 매년 3,800달러(빈곤선의 95%), 4,800달러(빈곤선의 120%), 5,600달러(빈곤선의 140%)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소득공제율은 정률공제와 소득수준별 차등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사업 결과, 남편이 일정소득을 보장받는 실험집단은 보장된 소득이 없는 비교집단에 비해 3년의 시범사업기간 동안 노동시간이 약 7% 정도 감소하였다. 부인의 경우에도 실험집단의 노동시간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내에서는 소득보장 수준과 소득공제율 차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행동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소득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더 많이 감소하

였으나 같은 소득보장 수준 내에서는 소득공제율과 노동시간 사이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나. 시범사업 결과

1) 단순회귀분석

첫째, 부의 소득세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 추정결과가 음의 값으로 나와 부의 소득세가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Seattle-Denver 시의 경우 모든 인종에 걸쳐 음(-)의 값이 나왔는데 특별히 남자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부의 소득세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높은 소득보장 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4개 지역 전체의 가중평균으로 보면 남편은 부의 소득세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약 7% 감소시키는데 비해 부인과 편모는 각각 노동시간을 약 17%씩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비실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여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남성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Seattle-Denver시의 경우 약 30%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5년 이상 시범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⁶⁾. 3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수행한 나머지 표본가구와 이를 비교해보면 5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남편과 부인(편모가구 제외)의 부의 소득세에 대한 반응이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한 가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노동공급에 대한 반응은 시범사업 실시 후 3~4년에 발생하며 노동시간은 약 8.8%, 근로소득은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5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그룹은 4~5년차에 노동공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노동시간은 약 17.9%, 소득은 약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노동시간은 약 14.0%, 소득은 약 1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소득세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
추정결과가 음(-)의 값으로
나와 부의 소득세가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6) 일부 전문가들은 Seattle-Denver는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빈곤선의 약 115%의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실제로 가장 많은 보장소득을 제공한 AFDC, Food Stamps는 최고 빈곤선의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고 있었음.

Seattle-Denver시의 경우 약 30%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5년 이상 시범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 시범사업 후 부의 소득세에 대한 근로시간 및 소득의 변화

구 분		남편		부인		편모	
		노동시간	연소득 ²⁾	노동시간	연소득	노동시간	연소득
New Jersey ¹⁾	백인	-99 (-5.6) ³⁾	+10 (+0.1)	-73 (-30.6)	-420 (-33.2)	-	-
	흑인	+36 (+2.3)	+1,180 (+9.3)	-5 (-2.2)	+110 (+7.8)	-	-
	히스패닉	-10 (-0.7)	+800 (+6.3)	-99 (-55.4)	-560 (-54.7)	-	-
	전체	-21 (-1.2)	+690 (+5.3)	-56 (-24.6)	-270 (-21.4)	-	-
Rural ⁴⁾	백인	+40 (+1.8)	-590 (-4.8)	-88 (-21.1)	-170 (-12.1)	-	-
	흑인	-152 (-8.0)	-630 (-6.8)	-268 (-31.3)	-1,360 (-41.6)	-	-
	전체	-56 (-2.8)	-610 (-5.7)	-178 (-27.9)	-770 (-32.8)	-	-
Gary	흑인	-114 (-6.5)	-830 (-5.0)	+14 (+5.0)	+160 (+10.5)	-112 (-30.0)	-280 (-13.9)
Seattle-Denver	백인	-144 (-7.6)	-1,310 (-7.5)	-107 (-17.1)	-590 (-16.5)	-85 (-8.6)	-900 (-13.9)
	흑인	-169 (-9.5)	-930 (-5.9)	-153 (-16.0)	-860 (-15.6)	-180 (-16.6)	-980 (-14.0)
	히스패닉	-231 (-11.5)	-510 (-3.0)	-147 (-28.7)	-800 (-32.5)	-202 (-20.4)	-1,380 (-22.3)
	전체	-164 (-8.8)	-1,070 (-6.4)	-128 (-17.9)	-710 (-17.6)	-144 (-14.0)	-1,000 (-14.9)
	3년 표본가구	-133 (-7.1)	-810 (-4.8)	-101 (-14.2)	-580 (-14.4)	-134 (-13.0)	-940 (-14.1)
가중평균 ⁵⁾		-119 (-7.0)	-650 (-4.0)	-93 (-17.0)	-480 (-16.0)	-133 (-17.0)	-760 (-15.0)

주: 1) 인종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
 2) 연소득은 1985년 통화가치로 단위는 달러
 3) 괄호 안의 숫자는 변화율로서 단위는 %
 4) 응답자의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여, Iowa의 백인 근로소득자(25%), North Carolina의 백인 근로소득자(25%), North Carolina의 흑인 근로소득자(50%)
 5) 각각의 추정치에 가중치를 부여, 양부모의 경우에는 New Jersey 0.20, Rural 0.07, Gary 0.17, Seattle-Denver 0.56 이며 편모의 경우 Gary 0.34, Seattle-Denver 0.66
 자료: Gary Burtless, *The Work Response to a Guaranteed Income: A Survey of Experimental Evidence*, 1986

2) 구조모형⁷⁾에 의한 분석

첫째, 시범사업에서 노동공급은 비교적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저소득남성의 무보상(uncompensated) 노동공급함수는 수직선으로 비임금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임금의 변화는 남성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부인의 무보상 대체탄력성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추정된 평균탄력성이 -0.04 로 나타났으나 표본의 수에 따라 가중치를 두면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로 가중치를 표본의 수에 따라 다르게 주면 평균탄력성은 0.07 로 증가한다. New Jersey 지역의 경우 표본 수의 부족으로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만약 추정에서 New Jersey 지역을 제외하면 평균탄력성은 약 $0.10 \sim 0.17$ 로 상승한다.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New Jersey 지역의 데이터가 완전히 제외되면 표준편차는 기존의 결과보다 약 3분의 1 정도 감소한다. 표본이 저소득가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 부인의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작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인의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상당히 민감하다.

셋째, 기존의 비실험(non-experimental)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추정된 대체탄력성의 절대값 크기가 상당히 작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성의 보상 대체탄력성, 소득탄력성과 여성의 무보상 및 보상 대체탄력성에서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비실험 보고서에서는 여성에 대해 강력한 양(+의 무보상 공급함수를 보여주지만, 시범사업 결과에서는 약한 양(+의 무보상 공급함수 혹은 후방굴절(backward-bending) 공급함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소득탄력성의 평균이 약 $-0.07 \sim -0.18$ 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치는 남성의 비실험 추정치 평균보다는 낮지만, 여성의 비실험 추정치보다 높은 결과이다.

넷째, 시범사업에서 보상 대체탄력성의 평균 추정치는 비실험 문헌에서 추정된 평균탄력성보다 작다. 조세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은 보상 대체효과와 비례하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로 인한 효율성의 손실은 비실험 연구에서 추정한 값보다 작게 나오게 된다.

저소득남성의
무보상 노동공급함수는
수직선으로 비임금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임금의 변화는 남성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 이외의 외생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원인변수인 독립변수가 결과변수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됨.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이론을 토대로 사전에 설정한 모형이 있어야 하며 구조모형은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모형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는지를 검증하는 도구에 해당됨. 여기서는 부의 소득세에 대한 평균 추정치는 사용하기 어려워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소득보장수준, 세율 등으로 분류되는 부의 소득세 특성에 대한 반응과 비근로소득 및 순임금수준에 대한 개인의 변화율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두 종류의 시뮬레이션 모두 부의 소득세를 지급받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노동시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빈곤선을 보장하는 2가지 계획하에서의 근로시간의 감소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표 4〉 시범사업과 기존연구에서의 대체 및 소득탄력성 추정치

성별	유형	표본수	미보상대체탄력성 ¹⁾	보상대체 탄력성	전체소득탄력성
남성	부의 소득세	21	0.0043 (0.098)	0.0795 (0.068)	-0.0757 (0.093)
	가중치 부여된 부의 소득세		-0.0223	0.0902	-0.1139
	기존연구	26	-0.1045 (0.178)	0.2842 (0.415)	-0.3873 (0.339)
여성	부인의 부의 소득세	20	-0.0420 (0.368)	0.1105 (0.237)	-0.1515 (0.214)
	가중치 부여된 부인의 부의 소득세		0.0659	0.1783	-0.1115
	부인의 부의 소득세 ²⁾	14	0.0957 (0.225)	0.1907 (0.154)	-0.0957 (0.146)
	가중치 부여된 부인의 부의 소득세		0.1730	0.2425	-0.0696
	편모의 부의 소득세	11	-0.0373 (0.123)	0.1346 (0.070)	-0.1709 (0.085)
	가중치 부여된 편모의 부의 소득세		-0.0426	0.1355	-0.1774
	기존연구	48	1.9919 (3.162)	2.0248 (3.154)	-0.0331 (0.423)
	기존연구 ³⁾	38	1.3553 (1.319)	1.3661 (1.229)	-0.0113 (0.463)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2) 뉴저지주는 제외
 3) 가장 높은 보상대체탄력성과 가장 낮은 보상대체탄력성을 보인 각각 5개의 추정치는 제외
 자료: Gary Burtless, *The Work Response to a Guaranteed Income: A Survey of Experimental Evidence*, 1986

3) 복지개혁의 함의

첫째, 첫 번째 시뮬레이션⁸⁾에서는 보장소득과 부의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⁹⁾에서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시간의 감소비율이 더 작게 나타났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근로시간 감소비율이 첫 번째보다 낮으며 특별히 한계세율이 높은 경우 시뮬레이션 차이에 따른 근로시간 변화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시뮬레이션 모두 부의 소득세를 지급받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노동시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빈곤선을 보장하는 2가지 계획하에서의 근로시간의 감소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편부모가구는 각 시뮬레이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양부모와 마찬가지로 일부 편부모가구는 시뮬레이션 결과 노동공급이 보통 수준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감소하지만, 다른 시뮬레이션에서는 노동공급의 감소비율이 작으며, 심지어는 노동

8) 1974년 인구정보를 이용하여 Keely et al에서 보고된 노동공급 함수의 반응을 추정
 9) 1975년 인구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Seattle-Denver 보고서의 노동공급 함수의 반응을 추정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기준연도의 차이와 부의 소득세 도입 이전의 복지혜택¹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부모가구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화율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를 포함한 경우 더 작게 나왔다. 이는 <표 5>의 수혜자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양부모가구 중에서 부의 소득세 혜택을 적용 받는 가구비율이 편모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아서 양부모가구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양부모가구는 소득보장 수준과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편모가구에서는 세율이 증가하면 보장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의 유인이 존재한다.

셋째, 빈곤선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는 경우 정의에 의해 소득보전은 양부모 혹은 편모가구의 빈곤을 해결해준다. 혜택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기존의 복지와 식품권(Food Stamps)제도의 예산보다 약 560억~610억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이는 GNP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혜택 수준이 상당히 낮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면 150억~260억달러의 예산이 지출되며 이는 GNP의 약 0.4%~0.6%에 달하는 금액이다.

넷째, <표 5>의 (5)열은 부의 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몇몇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부(-)의 부호를 띠는 것은 부의 소득세의 도입으로 총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부분은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부의 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전체 인구의 소득감소는 적어도 부의 소득세를 통해 저소득층이 얻은 소득증가를 상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표 5>의 (6)열은 소득변화의 크기를 순추가이전비용(net added transfer cost)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비율은 대체로 양부모가구에서 높는데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소득감소는 순추가이전비용의 약 40~58%,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의 소득감소는 순추가이전비용의 약 35~52%로 나타났으며, 예외적으로 혜택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에는 약간의 소득증가도 나타났다. 편모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첫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소득의 감소는 순추가이전비용의 약 16~50%, 두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소득의 감소는 순추가이전비용의 57~62%로 나타났으며 빈곤선 수준의 소득보장으로 인해 편모가구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Seattle-Denver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시범사업 2년차에 양부모가구의 소득감소는 평균 부의 소득세 지출의 68%인 데 반해 편모가구는 39%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순소득증가 효과는 편모가구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시범사업 결과 부의 소득

시범사업 결과
부의 소득세는
양부모가구보다
편모가구에 더
적합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10) 복지혜택의 차이는 양부모가구에서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현재 사회보장 시스템하에서 대부분의 양부모가구는 복지혜택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도는 부의 소득세 도입 반대론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았으며, 찬성론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세는 양부모가구보다 편모가구에 더 적합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표 5〉 4개 유형의 부의 소득세 제도하에서 노동공급과 예산의 관계

(단위: %, 10억달러)

유형	가구구조		근로시간변화		수혜가구 비중 (3)	순추가비용 ¹⁾ (4)	전체인구의 소득감소 ¹⁾ (5)	(5)/(4) (6)
			수혜자 (1)	전체 (2)				
빈곤선 75% 세율 50%	첫 번째 시뮬레이션	남편-부인	-9.5	-1.4	0.19	15.5	9.0	0.58
		편모	-6.7	-2.4	0.61	0.8	0.4	0.50
		총계	-	-	0.24	16.3	9.4	0.58
	두 번째 시뮬레이션	남편-부인	-6.5	-0.8	0.17	11.5	5.1	0.44
		편모	7.9	9.0	0.57	-4.8	-3.0	0.62
		총계	-	-	0.22	6.7	2.1	0.31
빈곤선 75% 세율 70%	첫 번째 시뮬레이션	남편-부인	-15.8	-0.5	0.07	5.5	2.2	0.40
		편모	-9.3	-1.2	0.51	-1.0	0.0	-
		총계	-	-	0.12	4.5	2.2	0.49
	두 번째 시뮬레이션	남편-부인	-8.0	0.0	0.06	1.2	-0.7	-
		편모	5.2	11.5	0.43	-6.5	-3.7	0.57
		총계	-	-	0.10	-5.3	-4.4	0.83
빈곤선 100% 세율 50%	첫 번째 시뮬레이션	남편-부인	-10.0	-3.5	0.39	51.9	27.1	0.52
		편모	-12.0	-7.1	0.73	9.2	1.8	0.20
		총계	-	-	0.43	61.1	28.9	0.47
	두 번째 시뮬레이션	남편-부인	-9.8	-3.4	0.39	51.4	26.7	0.52
		편모	-2.2	1.5	0.71	4.1	-0.6	-
		총계	-	-	0.43	55.5	26.1	0.47
빈곤선 100% 세율 70%	첫 번째 시뮬레이션	남편-부인	-20.6	-1.5	0.15	19.6	8.6	0.44
		편모	-14.9	-5.3	0.61	6.1	1.0	0.16
		총계	-	-	0.20	25.7	9.6	0.37
	두 번째 시뮬레이션	남편-부인	-10.7	-0.9	0.14	14.8	5.2	0.35
		편모	-4.4	5.4	0.57	0.6	-1.8	-
		총계	-	-	0.19	15.4	3.4	0.22

주: 1) 1985년 통화기치로 단위는 10억 달러이며 부의 부호는 순수입이 증가하거나 소비비용이 절감된 것을 의미하며, 비수혜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자료: Gary Burtless, *The Work Response to a Guaranteed Income: A Survey of Experimental Evidence*

4) 시사점

첫째, 시범사업 시행초기에 부의 소득세는 근로효과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정도는 부의 소득세 도입 반대론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았으며, 찬성론자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부의 소득세」(NIT)로부터 받는 수혜금액의 증가는 어느 정도 근로시간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총소득의 감소는 이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전반적인 근로시간의 감소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혜자의 소득 감소는 저소득가정에게 상당량의 고액지원금이 지불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의 감소는 정부의 관대한 이전지출로 인한 소득증가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소득보전의 목적이 수혜자의 근로동기 유인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세율이 적합지만, 전체 인구의 근로의욕 저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근로감퇴의 영향을 받는 인구규모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관계는 양부모가구에서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는 한계세율의 감소로 인해 소득보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편모가구들이 비록 낮은 보장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편모가구의 수혜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편모가구의 경우에는 세율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다.

III. EITC의 태동과 발전과정

1. EITC¹¹⁾의 태동¹²⁾

가. 정책기반 형성

부의 소득세(NIT)에 대한 제안은 학계의 연구와 미국의 보건교육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서 시작했으며,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정치인들과 대중들은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정책 엘리트들(policy elites)의 지지는 획득할 수 있었다. 부의 소득세(NIT)는 최초로 안이 제안되었을 당시에는 10년 이내에 입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건설을 위한 훈련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빈곤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다수의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인 소득이전은 단지 풍요한 사람의 열매를 가난한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전략이었다.

소득보전의 목적이

수혜자의 근로동기 유인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세율이
적합지만, 전체 인구의
근로의욕 저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NIT는 특정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소소득보장 수준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조세환급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점증, 평탄, 점감구간으로 구성된 EITC와 달리 소득의 증가가 급여의 감소로 이어지는 점감구간만 존재함. 즉, NIT는 근로소득이 전혀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인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EITC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급여가 제공되므로 EITC는 되도록 일을 더 하고 소득을 높여서 신고하려고 하지만, NIT는 수급자들이 근로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함.

12) Coyle, Dennis J. and Wildavsky Aaron, "Social Experimentation in the Face of Formidable Fables", Alicia H. Munnell (ed.), Lessons from the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in September 1986: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and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 167~182.

부의 소득세(NIT)는 기본적으로는 진보나 보수주의의 일반적인 개념과 잘 맞지 않는 이념적 혼혈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의 소득세(NIT)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는 보수 및 진보를 망라한 경제학자들로부터 나왔다. 1968년 5월 1,200명의 보수 및 진보 경제학자들이 부의 소득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petition)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NIT)를 도입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 경제학자에게 소득보장(Guaranteed Income)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메커니즘으로 보였다. 즉,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한 소득이전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많은 공공부조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부의 소득세(NIT)는 기본적으로는 진보나 보수주의의 일반적인 개념과 잘 맞지 않는 이념적 혼혈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보장에 대한 논쟁은 당시에 유행하던 3가지 정치이념 및 문화, 즉, 계급주의(hierarchy), 자유주의(libertarianism), 그리고 평등주의(egalitarianism) 간의 충돌로 묘사될 수 있다. 첫째, 계급주의자들(hierarchs)은 정부는 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과, 옷, 그리고 도덕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온정주의적 사회정책을 지지하였다. 둘째, 평등주의자들(egalitarians)은 온정주의적 정책을 반대하며 소득과 자원을 재분배하는 빈곤정책을 지지하였다. 셋째, 자유주의자들(libertarian)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정부는 개인이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닉슨 행정부의 복지정책

닉슨 대통령은 취임 후 공화당은 미국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가 설정한 사회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는 도시문제위원회(Urban Affairs Council)를 설립하고 복지정책의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전 정부에서 관련 경험이 있는 민주당원들도 포함되었으며 대표적인 인물이 David Patrick Moynihan¹³⁾이다. 닉슨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존슨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큰 진전이 없었던 부의 소득세(NIT)의 동면도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즉, 존슨대통령에 의하여 방치된 복지개혁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고, 수치를 갱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Moynihan의 설득에 의해 1969년 8월 TV 연설¹⁴⁾을 통해 가

13) 당시 Daniel Patrick Moynihan은 도시문제위원회(Urban Affairs Council)의 위원장을 맡음.

14) 닉슨 대통령의 FAP 도입 공표 이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찬성하였고, 반대 20%, 무응답 15% 순이었음.

구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FAP)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은 정부가 모든 미국내 저소득층 가구에 최소한의 연소득을 보장(Minimum Guaranteed Annual Income)하는 안이다. 그러나 그 후 약 40개월 동안 닉슨 대통령의 가구지원계획(FAP)은 폐기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겪었고, 결국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는 통과되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되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FAP 시행으로 복지전문가와 수급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득보장 수준¹⁵⁾이 너무 낮았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근로조건과 연계되는 이유 등으로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서 발행되는 저널 「Social Work」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특별히 FAP는 빈곤층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수혜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단순히 속임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닉슨대통령의 FAP에 대한 하원 내 진보진영의 지지는 강력하여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상원 내에서의 단합은 와해되어 부결되었다.

다. 의회에서의 논쟁

FAP와 같이 국민에게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두 가지 상반된 정치문화 사이에 사로잡혔다. 이 중 하나는 평등주의 관점으로 상원의원 Harris가 주장한 것처럼 모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바로 구해내지 못하는 어떠한 정책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중요하지 않으며, 도덕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되는 관점은 개인의 근로노력과 강력하게 연계되지 않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며,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닉슨대통령의 FAP에 대한 하원 내 진보진영의 지지는 강력하여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상원 내에서의 단합은 와해되어 부결되었다. 이처럼 소득보장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진보진영 의원들이 행정부의 설명에 고무되어 닉슨대통령의 안이 부적절하다고 믿게 되어 폐지되었다. 그 대신 상하 양원에서 진보진영은 FAP보다 더 평등주의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수급범위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최저보장 수준을 크게 인상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인간성보장계획(Human Security Plan)을 제안한 상원의원 George McGovern은 최소금융소득의 보장(Minimal Financial Security)은 국민의 권리임을 피력하였으며, 하원의원 William Ryan은 경제기획청에서 발의한 초안에 기초하여 혜택 수준이 더 높은 소득보장법(Income Maintenance Act)을 도입하였고, 경제학자 James Tobin이 제안

15) FAP에 따르면 4인가구는 연간 1,6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포드 대통령(1974~1977) 재임시기인 1975년에 EITC는 조세감면법에 규정되어 도입되었다.

한 국민생계소득보장프로그램(National Living Income Program)을 공동 발의하였다. 복지개혁 측면에서 평등주의적 특성을 경시한 닉슨대통령의 전략은 의회에서 발의된 다른 대안으로까지 옮겨갔다. 국민생계소득보장프로그램(National Living Income Program) 찬성론자들은 닉슨 대통령의 복지개혁안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의회에서 보수·진보 양 진영은 경험적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으나, 어느 쪽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진보진영은 소득보장프로그램을 경제에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신념의 문제로 받아들였고, 보수진영은 돈이 아닌 노동을 통해서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라. EITC의 도입

1969년 상원의 재정위원회 의장인 Russell Long의원은 FAP에 반대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근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제안했다. 그 계획은 대규모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장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근로상여금(work bonus)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다. 결국 FAP는 1972년 폐지되었으나 Russell Long의원은 그 후 3년 동안 근로장려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1973년 상원은 Russell Long의원과 Lloyd Bentsen의원이 발의한 EITC를 채택하였고, 포드 대통령(1974~1977) 재임시기인 1975년에 EITC는 조세감면법(Tax Reduction Act 1975)에 규정되어 도입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근로자가 기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급¹⁶⁾해주는 정도에서 출발하였으나, 197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1976)에서 1976~1977년까지 EITC를 계속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977년 조세감면과 단순화법(Tax Reduction and Simplification Act)에 의해 EITC는 1978년까지 연장되었다. 이후 1978년 세입법(Revenue Act)을 통해 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2)으로 정식 흡수되었다.

2. EITC의 발전과정

1975년 제도도입 이후 EITC는 몇 차례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

16) 당시 EITC 지급률은 10%, 사회보장세 부담률은 5.9~7.9% 수준

대되었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은 관련부처에 각각 복지수급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활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정부 내의 부처간 의견이 서로 달라서 보건교육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는 보편적인 현금급여나 최저생활의 보장을 주장하였으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연방에서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괄적인 고용과 훈련에 관한 법률(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을 크게 확대하여 연방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카터정부는 두 안을 모두 수용하여 취업훈련과 현금급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EITC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카터정부는 두 안을 모두 수용하여 취업훈련과 현금급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EITC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6〉 미국 행정부별 EITC제도 변화

집권정당	해당년도	주요내용
닉슨 행정부 (공화당)	1972	부의 소득세를 기반으로 가구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
포드 행정부 (공화당)	1975	EITC 제도 최초 도입 - 부양세대를 가진 가구의 0~4,000달러의 근로소득에 대해 10%의 환급액 지급 - 점증/점감구간만 존재
카터 행정부 (민주당)	1978	평탄구간이 추가되어 3구간 모델이 이후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 - 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2) 체계 내에 흡수됨
레이건 행정부 (공화당)	1986	EITC 지급액 확대 - 점증률 11%에서 14%로 확대
부시행정부 (공화당)	1990	2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각 구간의 소득금액, 점증률, 점감률을 달리 적용하는 모델 채택
클린턴 행정부 (민주당)	1993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EITC 적용
부시행정부 (공화당)	2002	독신가구(single)와 맞벌이 가구(joint) 구분하여 지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가능한 최대소득 금액을 1,000달러로 확대함

미국정부는 EITC제도를 통해 복지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정치인들은 점차 복지개혁을 위해 전통적인 공공부조 제도의 보완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

미국정부는 이미 도입한 EITC 이외에도 1988년 가족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취업기회와 기술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후 노동공급의 증대, 복지 의존도 감소, 가족해체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조정법」을 제정하여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개혁을 단행하였다.

불어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되면서 EITC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1978년 카터 행정부 당시 연방의회는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급여가 증가하는 점증구간(phase-in)과 급여가 감소하는 점감구간(phase-out)의 두 단계로 구성된 체계에 급여가 일정한 평탄구간(plateau)을 설정하는 등 EITC 급여수준을 증가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급여수준과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세법개정¹⁷⁾을 통한 EITC의 확대는 동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감소 및 소득재분배 기능과 근로유인 효과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영향으로 1986년 조세개혁안(Tax Reform Act 1986; TRA 86)에서 점증구간의 급여증가율은 11%에서 14%로 증가하였고, 점감구간의 급여감소율은 12.22%에서 10%로 감소했다. 즉 점증구간의 확대와 점감구간의 감소를 통해 급여수준과 최대 수령가능 급여액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EITC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이미 도입한 EITC 이외에도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의 제정을 통해 취업기회와 기술훈련(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JOBS)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후 노동공급의 증대, 복지 의존도 감소, 가족해체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을 제정하여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EITC가 대폭 확대되었고, 부양아동가족부조(AFDC)가 폐지되는 대신 「빈곤가구임시부조」(TANF, Temporary Aid to Needy Families)라는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TANF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복지정책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급기간을 평생 5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2년 내에 직장을 찾거나 지역사회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로조건이 부여되었다.

1990년 부시 대통령 시기에 「총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BRA 90)에서 EITC의 급여수준을 더 인상하였으며, 특히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추가하여 급여 산정방식을 분리하고 급여증가율과 급여감소율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클린턴 대통령(1993~2001) 집권 이후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17) 1986년, 1990년, 1993년 등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급여증가율을 19.5%에서 40%로, 1인 자녀가 있는 경우 18.5%에서 34%로 대폭 인상하였고, 그 결과 수령 가능한 최대급여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급여감소율은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14%에서 21%로, 1인 자녀가 있는 경우 13%에서 16%로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적용대상은 더욱 증가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1994년부터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EI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의 범위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무자녀가구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 불리한 환급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EITC는 단순히 저소득가구의 소득보전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 등 다른 목적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EITC는 단순히 저소득가구의 소득보전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 등 다른 목적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표 7〉 미국 EITC 급여산정기준 변화추이(1975-2009)

(단위: 달러, %)

해당년도	점증구간	급여 증가율	최대 급여액	평탄구간	급여 감소율	점감구간	
1975 ~ 78	0-4,000	10.0	400	-	10.0	4,000-8,000	
1979 ~ 84	0-5,000	10.0	500	5,000-6,000	12.5	6,000-10,000	
1985 ~ 86	0-5,500	11.0	550	5,500-6,500	12.22	6,500-11,000	
1987	0-6,080	14.0	851	6,080-9,920	10.0	9,920-15,432	
1988	0-6,240	14.0	874	6,240-9,840	10.0	9,840-18,576	
1989	0-6,500	14.0	910	6,500-10,240	10.0	10,240-19,340	
1990	0-6,810	14.0	953	6,810-10,730	10.0	10,730-20,264	
1991	자녀 1명	0-7,140	16.7	1,192	7,140-11,250	11.93	11,250-21,250
	자녀 2명 이상	0-7,140	17.3	1,235	7,140-11,250	12.36	11,250-21,250
1992	자녀 1명	0-7,520	17.6	1,324	7,520-11,840	12.57	11,840-22,370
	자녀 2명 이상	0-7,520	18.4	1,384	7,520-11,840	13.14	11,840-22,370
1993	자녀 1명	0-7,750	18.5	1,434	7,750-12,200	13.21	12,200-23,050
	자녀 2명 이상	0-7,750	19.5	1,511	7,750-12,200	13.93	12,200-23,050
1994	자녀 0명	0-4,000	7.65	306	4,000-5,000	7.65	5,000-9,000
	자녀 1명	0-7,750	26.3	2,038	7,750-12,200	15.98	11,000-23,755
	자녀 2명 이상	0-8,425	30.0	2,528	8,425-11,000	17.68	11,000-25,296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수급요건의 변동 없이 각 구간별 임계치만 상향 조정							
2002 ¹⁾	자녀 0명	0-4,910	7.65	376	4,910-6,150	7.65	6,150-11,060
	자녀 1명	0-7,370	34.0	2,506	7,370-13,520	15.98	13,520-29,201
	자녀 2명 이상	0-10,350	40.0	4,140	10,350-13,520	21.06	13,520-33,178
2003	자녀 0명	0-4,990	7.65	382	4,990-6,240	7.65	6,240-11,230
	자녀 1명	0-7,490	34.0	2,547	7,490-13,730	15.98	13,730-29,666
	자녀 2명 이상	0-10,510	40.0	4,204	10,510-13,730	21.06	13,730-33,692
2004	자녀 0명	0-5,100	7.65	390	5,100-6,390	7.65	6,390-11,490
	자녀 1명	0-7,660	34.0	2,604	7,660-14,040	15.98	14,040-30,338
	자녀 2명 이상	0-10,750	40.0	4,300	10,750-14,040	21.06	14,040-34,458
2005	자녀 0명	0-5,200	7.65	399	5,200-6,530	7.65	6,530-11,750
	자녀 1명	0-7,830	34.0	2,662	7,830-14,370	15.98	14,370-31,030
	자녀 2명 이상	0-11,000	40.0	4,400	11,000-14,370	21.06	14,370-35,263
2006	자녀 0명	0-5,380	7.65	412	5,380-6,740	7.65	6,740-12,120
	자녀 1명	0-8,080	34.0	2,747	8,080-14,810	15.98	14,810-32,001
	자녀 2명 이상	0-11,340	40.0	4,536	11,340-14,810	21.06	14,810-36,348
2007	자녀 0명	0-5,590	7.65	428	5,590-7,000	7.65	7,000-12,590
	자녀 1명	0-8,390	34.0	2,853	8,390-15,390	15.98	15,390-33,241
	자녀 2명 이상	0-11,790	40.0	4,716	11,790-15,390	21.06	15,390-37,783
2008	자녀 0명	0-5,720	7.65	438	5,720-7,160	7.65	7,160-12,880
	자녀 1명	0-8,580	34.0	2,917	8,580-15,740	15.98	15,740-33,995
	자녀 2명 이상	0-12,060	40.0	4,824	12,060-15,740	21.06	15,740-38,646
2009	자녀 0명	0-5,970	7.65	457	5,970-7,470	7.65	7,470-13,440
	자녀 1명	0-8,950	34.0	3,043	8,950-16,420	15.98	16,420-35,463
	자녀 2명 이상	0-12,570	40.0	5,028	12,570-16,420	21.06	16,420-40,295

주: 1) 2002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점감구간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2~2004년 1,000달러, 2006~2007년 2,000달러, 2008년 3,000달러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연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하였다.

자료: Committee on Ways and Means, 2004 Green Book,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Earned Income Tax Credit Initiative, 2008

IV. 결어

2004년 11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식 EITC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8월 우리나라도 EITC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8월 21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부안이 발표되었고, 동년 12월 26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 9월에 최초의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의 EITC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미국의 EITC는 닉슨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Guaranteed Income)을 보장해주기 위해 발의한 가구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FAP)에 대한 논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EITC 도입 이전 수년간에 걸쳐서 보수 및 진보 양 진영의 격렬한 논쟁과, 미국 4개 지역에서 실시한 모의실험을 거쳐서 1975년 포드대통령 재임시 조세감면법(Tax Reduction Act)에 의거하여 도입되었으며, 1978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근거규정을 둬으로써 영구화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서 제도의 적용범위와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약 34년이 경과한 지금 미국 근로가정을 위한 정부정책 중 가장 규모가 큰 탈빈곤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고, 미국 저소득가정의 경제생활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31년이 경과한 2006년 기준으로 EITC제도가 지난 30년간 질적,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확대되었는지 살펴보면, 최대급여액은 1975년에는 400달러였지만, 2006년에는 4,536달러(자녀 2인 이상 기준)로 약 11.3배 증가하였고, 적용한도소득은 8,000달러에서 36,345달러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신청 가구수는 621만가구에서 2,300만가구로 약 3.8배 증가하였고, 정부예산(총 세액공제액)은 12억 5천만 달러에서 397억달러로 약 31.8배 증가하였고, 가구당 평균세액공제액은 201달러에서 1,926억달러로 약 9.6배 증가하였다. EITC제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이러한 양적 및 질적 성장을 통하여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자 자신은 물론 가족의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하였다. EITC제도는 또 세금신고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국민의 납세의식 함양에도 이바지하였다.

1969년 닉슨대통령이 제안한 FAP는 기존의 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에게 근로조건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닉슨대

EITC제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양적 및 질적 성장을 통하여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자 자신은 물론 가족의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하였다.

닉슨대통령의 FAP와 부의 소득세(NIT), 또는 소득보장 정책의 핵심이념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양부모가정으로 확대하며,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 AFDC의 근로의욕 저하 효과를 감소시키며, 현금지원과 사회봉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통령은 제안연설에서 취약전 아동을 가진 엄마들은 FAP제도하에서도 복지혜택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근로의무의 조건을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닉슨대통령의 견해는 AFDC의 철학 및 엄마들은 집에서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당시의 국민정서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닉슨대통령의 FAP와 부의 소득세(NIT), 또는 소득보장 정책의 핵심이념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양부모가정으로 확대하며,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 AFDC의 근로의욕 저하 효과를 감소시키며, 현금지원과 사회봉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복지수급자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수급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견해로 전환되었다. 모든 빈곤층에게 부의 소득세(NIT)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원하자는 안은 보수 진보 양측의 격렬한 논의와 시범사업을 걸쳐서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지만, 후에 EITC 태동의 모태가 되었다. **KIPF**

<참고문헌>

- 김재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재정포럼』, 제7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6.
- 김재진·권오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2. 10.
- 김재진·박능후, 『한국형「EITC」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형「EITC」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2005. 7. 12
- 박능후,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박대식, 「미국의 복지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이석원·신현재, 「미국의 EITC 제도가 최저임금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6, pp. 127~149.
- 임봉욱,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 미국의 EITC를 참고로」,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6. 8, pp. 167~206.
- 전병목·김재진, 「근로장려세제(EITC)의 발전방향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2.
- 조선주 외,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Burtless Gary, "The Work Response," Alicia H. Munnell (ed.), *Lessons from the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in September 1986*,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and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 22~52.
- Coyle, Dennis J. and Wildavsky Aaron, "Social Experimentation in the Face of Formidable Fables," Alicia H. Munnell (ed.) *Lessons from the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in September 1986*,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and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 167~182.
- Giles, Allison H., "2004 Green Book,"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March 2004.
- Hyman, David N., *Public Finance: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ory to Policy* (7th Edition), Harcourt College Publishers, 2003.
- Koulish, Jeremy and Jason Levitis, "How much would a state earned income tax credit cost in 2009,"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March, 2008.
- _____, "State earned income tax credits: 2008 legislative updat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Oct. 2008.
- Ventry, Dennis J., "The Collision of Tax and Welfare Politics: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1969-1999," *National Tax Journal* Vol. 53 No. 4, 2000, pp. 983~1026.

정책 연구



정책연구

-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최준욱
-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원중학·김종면·전병힐·우석진
-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재호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박명호·김봉근·김정권
- 조세·재정모의실험 모형
성명재·전병목·전병힐
-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 연구
안중범·이상협·전영준·김진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최준욱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가 비교적 급진적으로 통합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그러한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재정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각 변수 및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급진적 통일 이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비율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 후 60년 동안 통일한국의 평균적인 성장률이 이자율 정도로 유지되고, 통합 후 6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북한지역 근로자의 생산성이 남한지역 근로자의 80~90% 정도까지 상승하며, 남한지역에서는 매년 GDP의 2%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60년간 확보하고, 북한지역에서도 남한지역보다 GDP 대비 비율로 현저하게 낮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며, 북한지역에서의 일인당 공공

서비스 지출액을 남한지역에서보다는 일정 부분 낮게 유지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출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재정지출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조건이다.

여러 변수들이 국가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에 국가부채비율은 상승한다. 이자율 상승이나 성장률 하락의 폭이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의 폭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에서의 출산율 변화는 대체적으로 국가부채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남한지역에서의 출산율 상승은 국가부채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평균적인 성장률 외에도 각 시점에서의 성장률 차이에 따라 국가부채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대체로 크지 않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남북 소득격차가 축소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합 후 50~60년 내에 북한지역 근로자의 생산성이 남한지역 근로자의 80~90% 정도에 근접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재정수입의 폭을 크게 설정

하지 않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낮을수록 국가부채비율은 더 높아진다. 북한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낮아 장기적으로도 남북한 격차가 크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수입 확대 폭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에 대한 재정지출 수준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당연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대한 지출이 통합 후 10년 동안 매년 남한 GDP의 10%를 다소 상회하는 정도라면, 재정수입 확대 폭을 약 2% 정도로만 설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 혹은 통일 직후의 재정지출이 그보다 더 크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합 직후에 북한지역에서의 필수적인 지출을 감당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소득균등화, 남북한 사회제도의 통합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북한지역에 대한 소득보전을 너무 크게 하면, 재정지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북한지역에서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에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실현 가능한 통합 방안에서는 통합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남북 소득격차가 크게 유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상당한 정도의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사회제도 및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북한지역에 대해 남한의 기존의 제도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정책은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목표 달성에서의 현실성이 없고, 시장경제의 정착에도 큰 문제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지역에는 남한지역과는 다른 사회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인력 역시 남한지역과는 분리된 틀에서 운영하고 급여수준도 남한지역과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즉 남북한 통합이 상당히 급진적인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사회제도의 즉각적인 통합까지를 포함하는 완전한 급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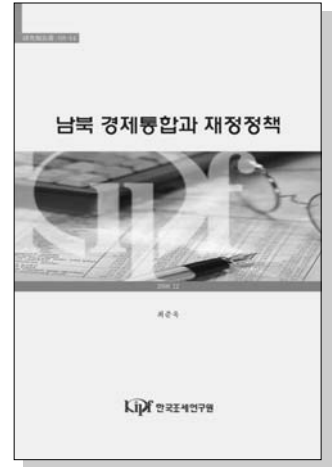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하여 단지 재정지출만이 아니라 재정수입과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 이유도 북한지역에서 충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가 상당히 통합된 상황에서 두 지역의 조세제도를 차별화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두 지역의 조세제도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는, 조세제도가 가지는 누진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지역 재정수입의 북한지역 GDP 대비 비율이 남한지역에서의 그것보다는 현저하게 낮을 것이다. 북한지역에 대해 남한지역과 차별화된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현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차별화된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급진적인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헌법 개정 또는 통합방식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현재의 남한 헌법의 틀 내에서 남북한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제도 및 조세제도의 차등화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남북한 경제의 급진적인 통합과 더불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혹은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떠한 통합방식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우는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통합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제도를 급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남북한 통합이 상당히 급진적인 요소를 가지고 진행된다 할지라도, 완전히 급진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마 남북한 통합에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형태는 독일식의 매우 급진적인 통합이 아니라 EU 혹은 그보다 좀 더 심화된 형태의 경제통합을 급진적으로 진행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 EU의 형성과는 속도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기존의 역사에서 적절한 예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EU를 예로 든 것이다.

급진적인 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이해함에 있어 지나친 낙관론도 지나친 비관론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급진적인 통합이 초래하는 충격과 관련하여 기존에 확산되어 있는 인식은 너무 비관론적인 시각에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통일비용 추정 등 기존 연구가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문제를 고찰한 것도 그러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합 이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통일이 쉬운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급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한다면, 남북한의 소득격차 및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비관적 인식에만 기초하여 통일 문제를 논의하



B5번형/ 147면
2008. 12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급진적인 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시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통합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북한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남한보다 높기 때문에, 남한지역 인구 일인당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감소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통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하여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이후 국가부채비율을 낮추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물론 단순히 통일의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통합시점이 늦어질수록 좋다는 단순 논리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인 통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남한지역의 성장 정체는 그것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로 인한 것이든, 혹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의 감

소로 인한 것이든 큰 차이 없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 북한의 성장 정체는 그것이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것이라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는 반면, 인구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남북한 지역의 성장정책에서 남한지역에서는 생산성 증가와 출산율 제고 정책이 동시에 중요한 반면, 북한 지역에서는 인구정책보다는 소득수준의 증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통합 전후의 단기적인 상황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소득이 남한지역에 근사한 수준까지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에서도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보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지역의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개발 및 보호 문제 등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남한지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그러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8-14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연금, 의료 지출의 확대를 통해 재정을 압박하고, 생산인구의 감소를 야기하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례가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령화의 현황 및 특징,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OECD의 다른 나라 고령자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남녀를 불문하고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의 배경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연금·의료 등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생산인구 1명이 지게 되



B5변형/ 141면
2008. 12

는 피부양인구의 수, 즉 부양부담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다. 영국, 핀란드,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에서 활력 있는 고령화 정책, 즉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고령화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공적 및 사적연금제도와 관련된 명시적 혹은 암묵적 조세제도가 고령 노동

자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해 추정된 결과, 연령이 1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가할 확률이 3.1~3.5%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변수의 통제여부와 관련 없이 가구총자산은 사전적인 기대와는 달리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소득은 노동시장참여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도 매우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제도의 변화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성 고령 노동자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OLS 추정을 통해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을 때, 노동공급의 비보상탄력성(uncompensated labor supply elasticity)은 -0.3156 이었다. 한편 노동공급에 관한 추정시 문제가 되는 노동공급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통해 추정을 시도하였다.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으로 추정한 임금에 대한 노동공급탄력성은 OLS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 -0.3133 이었다.

현재 고령화의 정의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UN의 고령화 정의에 의하면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아니라 비노인인구와 노인인구의 상대비율, 즉 연령구조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율이 비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클수록 빠르게 된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우려하는 논의가 많다. 출산율 저하는 인구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성장 요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고령화를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인구의 연령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구정책에 의한 방법, 구체적으로는 출산율의 증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상태에서 하락추세에 있는 출산율을 다시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인구정책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노동, 사회보장 및 보건 의료정책을 통하여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8-15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균형계산(CGЕ) 모형 이용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곧 이은 전쟁으로 관세정책은 재정수입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실행되었으며, 전후에는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적 관세정책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산업지향적 관세율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관세율 체계도 산업 중립적인 관세율 정책을 지향하면서 중심관세율 체계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에 의해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지금보다 낮아진 관세율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율 체계 변화를 대비하여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관세율 수준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계산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즉,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선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함께 이러한 관세율 구조 변화를 통해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개별 산업들의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에서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경우 대표적인 가계로 표현되는 후생수준은 증가하였다. 여기서 차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이란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조건 아래서 우리나라의 최적 관세율을 도출하여 나타나는 관세율 구조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현재의 관세율 체계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 체계로 이행할 경우 차등관세율 체계가 최적관세율 체계로 제시된다.

최적관세율 체계로 제시된 차등관세율 체계는 현재의 관세율 구조와 차이가 있었다. 광산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무세화를 제시하였고,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 및 전자기

기, 비금속광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상이 제시되었다. 수송장비와 정밀기기 산업만이 기존과 유사한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장비와 정밀기기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무세화를 비롯해서 큰 폭의 관세율 변화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 증대는 0.046%에 불과하였다. 즉, 모형에 의해 나타난 최적관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별로 대폭적인 관세율 체계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 얻어지는 후생 증대는 미미하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가 변함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자원배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이행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최적관세율 체계에서 눈에 띄는 특징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하(약 86%)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상(430%)을 들 수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앞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중심세율 8%에서 벗어나 13~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실적세율도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6.2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을 약 86% 정도 대폭 인하하여 새로운 실적세율이 0.9~1.3% 수준으로 감축되면 섬유산업이 이처럼 급격한 관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WTO 양허수준까지 대폭 인상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섬유산업의 관세율은 낮추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ITA협정으로 이미 일부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추진되었고, 향후 WTO DDA협상에서도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을 WTO 양허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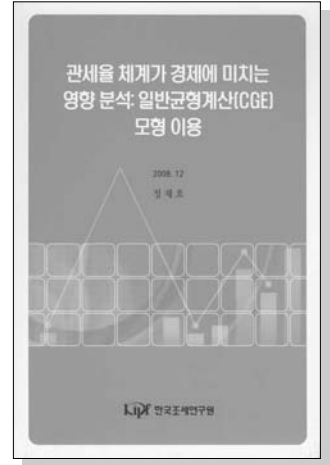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최적의 차등관세율 체계를 도출한 결과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 증대는 0.038%로 나타났다. 현실적 제약이 추가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의 후생 증대도 적어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경우 가계의 후생 증가가 예상보다 적었다. 특히,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을 추가할 경우 후생 증대는 더욱 작아졌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재배분 비용을 감안하면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전환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차등관세율 체계로 전환될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관세율이 무세가 되어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유사한 관세율 수준이 유지되는 수송장비의 경우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수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관세율 체계 변화로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에 대해 현실적 제약을 도입할 경우 국내생산 및 수출이 모두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DDA협상 결과로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보다 중립적인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의 경제적 효과도 살펴보았다. WTO DDA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는 관세율 인하폭을 감안하여 관세율이 급격하게 인하되는 시나리오와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단일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때보다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의 가계의 후생 증가가 아주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의 관세율을 균일화하는 단일관세율 체계로 이동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율이 인하되기도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관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 산업의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관세를 인하는 경우의 후생이 조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 즉,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되면서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보다는 관세율이 인하되는 산업이 더 많고 관세 인하폭도 더 커서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 변화 측면에서 전체 산업에 새로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인하하는 경우의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인해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산업으로의 자원 재배분의 변화가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보다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단일관세율 혹은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가 인상되거나 혹은 인하되면서 발생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관세율 인하가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B5변형/ 147면
2008. 12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거나 혹은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낮출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송장비 산업은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도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은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에서 서로 다른 대체탄력성을 사용한 경우에도 무세가 제시되었고, 그 결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관세율 체계 혹은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낮출 경우에도 급격한 수입 증가와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향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분야의 관세율을 점차 인하시키면서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의 자원이 다른 분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차등관세율 체계, 단일관세율 구조 그리고 중심관세율 구조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

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관세율을 크게 변경시켜야 하지만, 그 결과에 의한 후생증대도 크지 않고 현실과 괴리가 있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경우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겠다. 단일관세율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과 차이가 없어 품목별로 관세율이 인하 혹은 인상되는 분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정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 유지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에 의해 WTO DDA협상 결과에 따라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심세율은 8%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3년 산업연관표의 실적세율도 기본관세율의 중심세율이 8%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WTO DDA협상 결과 전반적인 관세율이 점진적(30.2%)으로 인하할 경우 중심세율 8%는 5.58%로, 급진적(55.8%)으로 관세율이 인하할 경우 중심세율 8%는 3.53%로 낮아지게 된다. 즉, 점진적인 경우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으로 5~6%, 보다 급진적인 관세율 인하가 합의될 경우에는 새로운 중심세율로 3~4%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2008년 5월 말 기준으로 WTO DDA협상에서 선진국의 관세율 감축 지수(스위스 공식 계수)를 7~9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¹⁾. 이 수치대로 DDA협상이 타결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중심관세율 수준은 5%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DDA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즉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 인하에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전에 실시하였던 관세율 인하 예시제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중심관세율 수준을 5%로 낮추어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세율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자원 재배분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균형계산 모형(CGE)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한 CGE 모형은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특히, 앞서 민감도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체탄력성의 가정에 따라 CGE 모형 분석 결과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CGE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 다른 분석들과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GE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는 이유는 관세율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전체적인 효과 분석에 중요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균형계산(CGE) 모형 이용』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1) 관세율이 30.2% 인하되는 시나리오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NAM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위스 공식 계수 10을 상정한 경우이고 관세 인하율이 55.8%인 경우는 스위스 공식 계수 5를 가정한 경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봉근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김정권 / 이화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제적 조세경쟁에 따른 법인세 인하 및 고유가에 따른 유가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소득세 및 재산세제의 추가적인 감세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극화·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서 최근 고유가 등에 기인한 급속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존의 재정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넓은 세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향후 세입감소와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주요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납세순응도의 제고를 통하여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잠재적 조세수입과 자진 신고세액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조세격차(tax gap)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자발적 납세순응행위는 국민들의 납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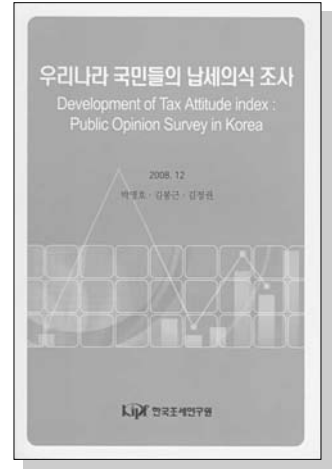
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막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거나 낮다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벗어나서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단시일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 및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정확한 납세의식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광범위한 문헌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문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납세의식이란 납세자들이 조세일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위의 광의의 납세의식을 세부적으로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납세순응지수라는 4개의 개별지수로 분리하여 정의하여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이들 지수를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지수를 도출하는데 있다. 조세이해도지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도의 평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지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조세이해도를 종합한 지수이다. 조세형평도지수는 현행 조세제도의 소득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형평성의 평가,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형평성 여부, 그리고 본인의 세금수준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여부를 종합한 지수이다. 성실납세의향지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향과 탈세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인 납세의향 양자를 합해 개인별 지수를 구한 것에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을 직접적으로 질문한 변수들의 정보를 종합한 지수이다. 납세순응도지수는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납세순응을 할 것 인지를 나타내는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와 실제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납세순응행위지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조세이해도, 납세순응도, 조세제도 형평성 변수, 인구통계특성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문지 문항을 설계하였고 전국 16개 시·도별로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총 2,399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2008년 5월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자영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게 표본을 할당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분할그룹(segmentation)마다 할당된 표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지수로 측정한다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조세체계나 정책 및 조세행정서비스의 변화, 또는



B5변형/ 171면
2008. 12

소득 등 외생변수의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납세의식 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지수(실제순응행위지수 및 가상순응행위지수)라는 개별지수를 개발·점수화하였고 이러한 지수들을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지수를 개발하였다. 측정 방법론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방법론은 납세의식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조세이해도, 형평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질문들을 종합해 납세의식지수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나아가 납세의식의 고취와 납세순응행위도의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납세순응행위 여부가 주관적인 납세의향이나 조세이해도, 형평성의 평가 및 기타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한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이해도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2점을 보이고 있다. 조

세행평도지수는 조세이해도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100점 만점에 46.1점의 평균값을 보였다. 성실납부의향지수는 조세행평도나 조세이해도보다 높은 69.0점의 평균값을 보여, 3명 중 2명 이상은 성실납부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험을 묻는 실제순응행위지수에서는 평균 94.6점을 보이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납세비순응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순응행위지수가 성실납부의향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성실납부의향은 낮아도 실제로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및 세원투명성 등의 이유로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대체 변수로 상품구매시 현금지불을 통한 할인이나, 가상적인 자영업주로서 현금매출액의 신고누락과 같은 가상납세상황에서의 가상순응행위지수도 추정하였다. 동 지수는 실제순응행위지수에 비해 훨씬 낮은 평균 32.6점을 보였다. 실제납세순응행위와의 큰 격차는 본 설문지에서의 가상납세순응행위 질문들이 탈세행위에 대한 발각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적발 가능성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소극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가 가상납세상황 속에서는 납세비순응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사점은 많은 납세의식 설문조사에서 실제납세순응행위 경험을 대체하는 변수로 가상납세순응행위 변수를 사용하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발견된 두 행위상 큰 격차는 이러한 분석들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납세의식 조사를 통한 조세정책평가방식에서 위의 차이를 분명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지수

로 측정한다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조세체계나 정책 및 조세행정서비스의 변화, 또는 소득 등 외생변수의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납세의식 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총괄납세의식지수를 개발하였다. 총괄납세의식지수는 개별지수를 작성하듯이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해 앞에서 설명한 4가지 개별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괄납세의식지수의 평균값은 78.4점이며, 고소득, 고학력,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총괄납세의식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개발된 지수를 통해 일차적인 설문조사의 요약보다는 정확한 조세정책 환경과 정책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방법론에서 언급하듯이 보다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질문내용이 추가된다면 지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납세의식지수의 연도별 흐름을 추적하여 조세관련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방법론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조세 · 재정모의실험 모형: KIPFSIM08 모형의 구축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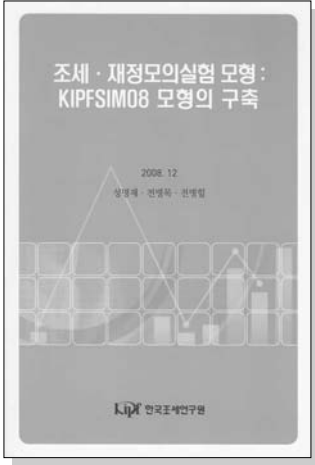
1. 배경

-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 · 재정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목표
- 개인납세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조사자료 또는 새로운 자료 구축을 통해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2009년부터는 조세 · 재정 모의실험 초기모형을 확대 ·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모의실험 모형 개발 · 구축을 통해 정책효과 예측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조세 · 재정정책 수립 · 집행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
- 조세 ·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재정 및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특히 근로장려금제도의 도입, 소득과약을 위한 다양한 공제제도의 운영 등 보다 세분되고 목적 지향적인 조세 및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정교한 정책 분석도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세제 및 재정정책의 개편안을 마련할 경우 조세 · 재정 모의실험 모형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
- 미국: 각종 세법개정안은 상하 양원 공동조세 위원회(JCT: Joint Committee on Taxation)의 모의실험 모형 분석을 통한 기대효과를 첨부하여 법안을 심의
- 영국: 재무부에서 조세 · 재정 모의실험 모형(Tax-Benefit Model)을 운용
- 호주: 영국의 도움을 받아 Micro-simulation Model을 구축
- 캐나다: 재무부, 통계부의 조세 · 재정 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분석 실시

2. 주요국의 조세 · 재정 관련 모의실험 모형: 국제비교

- 10여개 주요 선진국에서 40여개의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정책수요에 맞게 다양한 모형을 구축 · 운용
- 미국은 최소 주요 10개 기관에서 16개의 모형



B5변형/ 179면
2008. 12

이, 영국은 7개의 기관에서 7개 모형, 호주가 3개의 기관에서 5개의 모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미국과 호주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에서도 모형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 그 밖에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도 모형을 운용중

■ 이와 같이 상당수 국가에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분석모형을 구축·운용

- OECD에 따르면 필리핀이나 여러 개도국에서도 조세재정 모형 구축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소득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정책의 분석을 목적으로 모의실험 모형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은 각종 조세, 의료, 연금, 사회보장기금, 빈곤, Food Stamp 등 주요 정책분야에 상세한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

- 모형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정지출 측면의 분석모형을 운용함으로써 빈곤 등 국민생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

〈표 1〉 각국의 조세재정 관련 모형의 현황 및 관련분야

	기관	명칭	관련분야	공개여부	비고
미 국	NBER	Taxsim	개인소득세 등	×	· Tax file 및 Tax form 등을 이용 · 4개의 프로그램(sas)으로 구성
	CBO	CBOLT	전반적인 조세의 영향 분석	×	· 결혼시장, 노동공급, 조세 전반의 효과를 추정
	ITEP	ITEP	각종 조세(소득, 법인, 재산, 소비세)의 영향	×	
	Urban Institute	TRIM3 DYNASIM3 HIRSM MINT	빈곤, ETC, 최저임금 등 연금소득의 영향 건강보험개혁 연금소득과 사회보장	×	· 건강보험에 중점을 둔 분석모형 · 사회보장의 장기추이 분석모형
	California Berkeley 대학	SOCSIM	노령화 인구	○ (약간)	
	University of Washington	URBANSIM	-	×	
	Policy Simulation Group	GEMINI HISIM PENSIM SSASIM	사회보장 혜택, 조세 건강보험 연금혜택 사회보장 기금	×	· 거시-미시 연계모형
	Social Scientific Systems	SSS	건강보험	×	
	Strategic Forecasting	CORSIM	인구	×	
	Mathematica Policy	MATH	food stamp	×	
영 국	Nottingham (Alan Duncan)	-	노동시장, 세제 혜택	×	· 일반경제, 조세가설, 노동시장의 세제혜택 분석모형
	DETR	NRTF HF	운송시스템 가계조사	×	
	DWP	PENSIM2	연금개혁	×	
	LSE/ESRC (Kings College London)	SAGEMOD	인구, 소득, 연금, 의료	×	
	ESRC	POLIMOD	빈곤, 고용	×	
	IFS	Virtual Economy TAXBEN	소득세, 사회보험, 간접세 등 tax-benefit (직·간접세)	×	
	HM Treasury	IGOTM	tax-benefit	×	

3. KIPFSIM08 모형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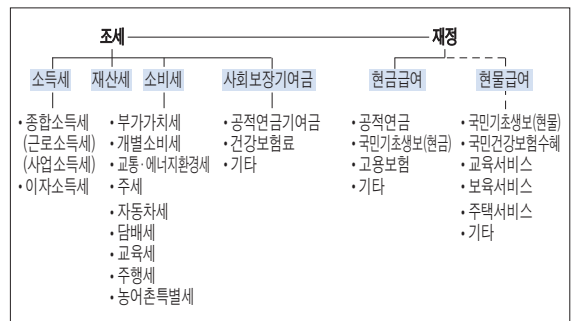
가. 모형의 구성

- 분석대상 시점은 2009년도로 설정
 - 모형운용의 기초자료인 가계조사자료는 2006년도이나 분석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시점으로 조정
 - 향후 기초자료의 축적과 분석 목적 등에 따라 모형 기반자료와 분석 시계를 조정할 예정
- 일차적으로 KIPFSIM 모형 구축을 위해 3개년 계획을 수립
 - 2008년: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소득세, 소비세, benefit 분포추정모형을 종합하여 원시기본모형을 개발·구축
 - 2009년: visual-basic형 기초모형 완성 및 관련 부처에 제공
 - 2010년: 모형의 정치화·세분화를 통한 기본 모형의 완성
-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은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및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모든 조세의 세목과 준조세, 제반 재정 지출이 원칙적인 포괄적 분석대상
 - 다만 자료의 이용 가능성 및 범위, 분석 가능성, 관련 이론 연구의 진척도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소득세, 소비세 및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조세 및 준조세, 공적연금, 사회보장수혜 및 건강보험 등이 주축
 - 이 중 소득세와 소비세의 경우에는 tax calculator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세부담 추정(imputation) 프로그램이 기본모형으로 채택되고 2차년도

이후에는 탄력성 모형으로 확대 예정

- 상기 포괄대상 범위 중 소득세와 각종 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경우에는 가계조사(분석 초기에 해당, 관련 DB자료 구축 후에는 재정패널자료도 포함) 원시자료에 조사된 수치를 사용
- 이에 따라 KIPFSIM 모형은 소득과세 모형, 소비과세 모형, 재정지출 모형으로 구성
 - 세금의 부담과 재정 지출의 수혜를 동시에 감안한 가구별 순부담 혹은 순혜택 규모가 주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세전·세후소득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종소득(final income) 단계에서 개별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계산
 - 단, 본 연구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현물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추후 보완 예정
 - 개별 가구의 단계별 소득액
 - 소득불균등 개선효과
 -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변수, 예컨대 개인·가구의 노동공급 및 의료이용 패턴에 대한 효과 등도 고려되어야 함.

[그림 1] KIPFSIM08의 기본구조



* 2008. 1. 1. '개별소비세'로 법령 변경

** 2007. 7. 28.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법령 변경

-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현재 분석모형 개발중이므로 잠정적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 궁극적으로 분석자료는 현재 본원이 구축중인 재정패널자료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이나 재정패널은 1~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가계조사자료를 사용

나. 소득과세모형

-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함.
 - 이자소득세의 원천분리과세분만을 상정(2006년 현재 원천징수세율: 14%)
 - 종합 · 근로소득세 부담의 개인별 산출을 위해 tax calculator를 개발
 - 가계조사자료에 수록된 소득정보, 인적사항, 각종 소비지출 정보 등을 고려하여 세법에 기초하여 소득종류별로 소득세 부담액을 추정
- 근로소득금액: 가계조사원시자료의 근로소득을 기본적인 과세대상으로 상정한 후,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소득금액: 가계조사원시자료 사업소득을 기본적인 과세대상으로 인식
 -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과세정보 등의 집계변수 자료와 가계조사원시자료의 내용을 상호대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소득포착률을 추정: 2006년의 경우 70.0%로 추정
 - 사업소득이 4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미

달자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

-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으로 분류
 - 추정포괄대상: 인적공제,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중 신용카드공제 등
 - 주택자금, 결혼 · 이사 · 장례, 기부금 공제 등은 정보 부족으로 추정에서 제외
 - 가계조사자료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과세소득이 가장 큰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추정
-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 추정
- 원자료의 한계로 인해 KIPFSIM08 모형에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을 고려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세액 전부가 근로소득세액으로 인정되나, 과세표준에 사업소득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근로소득세액 인정분을 결정

$$\text{근로소득세액} = \text{결정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는 분리과세분을 상정하므로 단일세율 14%를 적용
 - 이자소득세 = 0.14 × 이자소득

다. 소비과세모형

- 종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주행세, 담배세, 교육세(지방교육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 해당 세목별 과세대상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

통계로부터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추정

■ 부가가치세액 = 과세대상 지출액 $\times \frac{t_{vat}}{1+t_{vat}}$

• t_{vat} : 부가가치세율

■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에 따라 종가세(5%, 7%, 10%, 20%) 또는 종량세(석유류)로 과세

• 개별소비세액 = 과세대상 지출액 $\times \frac{t_s}{1+t_s+t_s \times t_{edu}+t_s \times t_{rural}} \times \frac{1}{1+m} \times \frac{1}{1+t_{vat}}$

- t_s : 개별소비세율

- t_{edu} : 교육세율

- t_{rural} : 농어촌특별세율

- t_{vat} : 부가가치세율

- m : 이윤율(또는 유통마진율, 25%로 가정)

• 석유류(교육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 가격 $\times \frac{1}{\ell \text{ 당 가격}} \times t_s$

- t_s : 개별소비세율

■ 주세액 = 가격 \times

$\frac{t_{lqt}}{1+t_{lqt}+t_{lqt} \times t_{edu}} \times \frac{1}{1+m} \times \frac{1}{1+t_{vat}}$

• t_{lqt} : 주세율

• t_{vat} : 부가가치세율

• t_{edu} : 교육세율

• m : 이윤율(또는 유통마진율, 25%로 가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과세

• 기본세율: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630원/ℓ와 365/ℓ

•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적용 가능

• 2006년 6월 30일 이전 세율(리터당): 휘발유 - 535원, 경유 - 323원

• 2006년 6월 30일 이후 세율(리터당): 휘발유 - 526원, 경유 - 351원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frac{t_{vat}}{1+t_{vat}}$

- t_{vat} : 교통·에너지·환경세율

■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함

• 원자료의 한계 및 가구부담 조사라는 목적으로 인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항목은 제외

■ 주행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 세율

- 2006년 6월 30일 이전: 24%

- 2006년 7월 1일 이후: 26.5%

• 주행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times \frac{0.24+0.265}{2}$,

(2006년 기준)

■ 담배소비세: 제조 담배에 대해 종량세로 과세

• 담배 소비지출액을 담배 1갑당 가격으로 나누어 총담배소비량을 구하고, 여기에 담배소비세율을 곱하여 부담세액을 산출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산출액

에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출

- 농어촌특별세액=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10%)

라. 현금급여

-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정보를 그대로 사용
 -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가계조사자료의 조사치를 사용
 - 현금급여 수혜액 추정을 위한 원자료의 제약 때문에 직접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 관련 모형을 구축할 필요

마. 발전방안

- KIPFSIM-08 모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1차년도 모형에서는 가계조사원시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구의 조세 부담 및 재정 수혜분을 파악 또는 추정(impute)에 있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
 - 예: 소득세 공제 관련 인별 의료비 지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정보 부재
 - 개인의 경제행위는 조세 및 재정지출과는 무관하게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정태적(static) 가정에 의존
- 주어진 자료로부터 개인 및 가구의 노동공급함수, 소비함수 등을 추정하여 탄력성을 가미한 모형으로의 발전을 모색
 - 또는 CBO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차용하여 가구 혹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노동공급/

소비 탄력성을 외생적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결과를 얻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탄력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세부담과 현물·현금급여 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확장한 뒤, 장기적으로는 탄력성을 내생변수화하여 직접 노동공급함수와 개별소비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구축할 필요

- 이상적으로는 동학모형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동태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모형을 구성하더라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양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방대하여 자료 자체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현실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
- 원자료상의 한계는 한국조세연구원이 준비중인 조세·재정패널을 이용하고, 향후 재산세제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모형으로의 확장을 장기 목표로 설정

4. 정책모의실험

가. 모의실험을 위한 정책 시나리오

- 현행 모의실험 모형 구조를 감안할 때 공적이전소득,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등의 경우 수혜·부담분포의 추정(impute)이 어려우므로 편의상 가계조사자료에 담긴 수치와 비례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

- (현금급여: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수혜금 규모를 20%, 50%, 100% 증액하는 경우
- (재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료, 공적연금기여금, 기타)) 해당 항목에 대한 부담액을 20%, 50%, 100% 증액하는 경우
- 소득세와 각종 소비세의 경우에는 세목별 tax calculato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별 또는 가구별 세부담 및 세부담 변화 효과 등에 대해 추정
- (소득세) 소득공제 수준·한도·공제율, 세율 구간과 세율수준, 각종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 등의 대체 등을 통한 소득공제 체계 개편시의 효과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를 모색
- 2006년도 가계조사자료를 2009년도 자료로 환산·조정하여 기준자료로 하되, 각종 소득·소비지출 자료는 모두 2006년 자료를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산출
- 조정계수는 2006~2009년 사이의 1인당 경상소득증가율을 사용
- 2006~2008년의 연도별 세법과 2008년 9월초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각각의 효과를 추정·평가
- (소비세)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개별소비세 세목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로 설정
- 환경·에너지·교통세, 개별소비세: 대부분의 세수가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로부터 징수되므

로 이들만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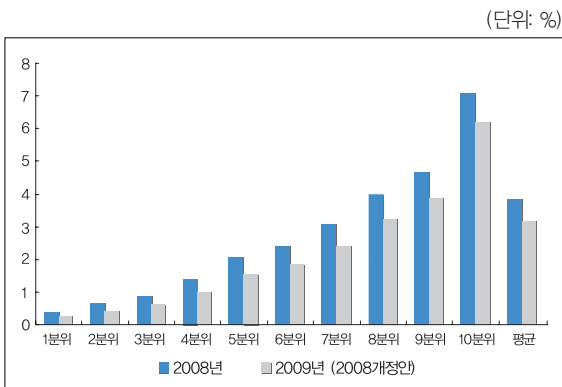
- 승용자동차: 한·미 FTA에 입각하여 대형승용자동차(배기량 2천cc 초과)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
 - 석유류: 환경·에너지·교통세만을 대상으로 세율을 비례적으로 10% 또는 20% 인상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상정
 - 담배: 1갑당 소비자가격을 500원 인상시키는 수준에서의 세율조정
 - 모의실험에 사용하는 가계조사자료의 원자료는 2006년 귀속분 자료이며, 이를 2008년도, 2009년도 귀속분 자료로 조정하여 분석
 - 2006~2009년 사이의 자료 조정시 소득 및 소비 관련 자료를 모두 1인당 경상GDP 증가율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도출
 - 2007년의 1인당 경상GDP 증가율: 5.84%
 - 2008년과 2009년의 경우에는 각기 6%로 가정
 - 그 외 상대소득분포와 인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은 200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 나. 분석결과: 2008년 소득세 개편안
- 본항에서는 2008년 세법개정안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
 - 근로·종합소득세를 각 연도의 세법에 따라 변화시키는 경우,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은 2006년 137만원에서, 2008년 161만원, 2009년 141만원으로 추정
 - 2009년에 소득이 평균 6%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은 전년 대비 12.9% 증가

- 소득세 부담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는 누진과세 체계에 기인
- 2009년에 2008년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법개정안에 의한 세부담 경감효과는 22.2%(1.129→0.878)로 추정

[표 2] 근로·종합소득세 개편에 따른 소득 및 세액 (2008년 세법·자료=1)

항목	2008년 자료·세법	2009년 자료·2008년 세법	2009년 자료·2008년 세법개정안
총소득	1	1.060	1.060
소득세	1	1.129	0.878
직접세	1	1.123	0.893
가처분소득	1	1.057	1.068

[그림]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총소득 대비 소득세 실효세부담률 변화효과



- 소득세 부담의 절대경감폭은 10분위에서 130만원으로 가장 크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세경감의 절대액은 작아짐.
- 총소득 상위 30%의 소득세 경감효과는 전체의

- 67%를 차지
- 이와 반대로 소득세 부담의 경감률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큰 것이 특징
- 이는 2009년 세법개정안의 주된 개편이 정액(定額) 소득공제의 확대, 각 세율구간별로 세율의 1%포인트씩 경감 등 하후상박식의 개편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 이에 따라 세부담의 누진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
- 총소득 상위 30%의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비중은 76%에서 개정안에 따른 경우 7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세법개정이 없을 경우 2008~2009년 사이에 예상되는 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의 증가효과(3.84%→4.09%)는 소득세 누진과세체제로 인한 한계세율 상승에 의한 효과
- 이 중 일부는 소득공제와 과표구간 등 定額的 요소를 묶어둠에 따른 일종의 물가효과라고 할 수 있음.
- 2008년 세법개정안이 2009년에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의 누진구조는 종전보다 더 커지지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닌 소득세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를 통한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소 감소
- 그러나 소득세 부담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즉, 소득세 부담 1원당 지니계수 하락 효과)는 세법개정에 따라 커짐에 유의할 필요

다. 분석결과: 소비세 개편의 효과

-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환경·에너지·교통세율, 담배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소비세 부담은 가구당 평균 231만원에서 246만원으로 상승 예상

- 총소득 대비 평균 실효세율은 5.18%에서 5.52%로 0.24%p 상승 예상

■ 소득분위별 소비세 부담률은 소비세제 개편 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개편 전후 모두에서 상위 30% 계층의 세부담 비중은 49% 수준으로 거의 동일
-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개편 전 0.3170에서 개편 후 0.3171로 소폭 상승하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한 편

■ 소비세 부담구조가 역진적이지만 거의 비례적인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비록 절대부담 수준을 증가시키더라도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시사

라. 분석결과: 공적이전소득,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의 비례적 개편 효과

■ 기타 가상적인 개편은 기존 조세·재정지출 항목의 비례적인 증가를 가정하고 있으며, 소득 계층별 지출·수혜부담 비중의 변화는 없음.

■ 재산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을 최대 2배까지 증가시키더라도 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0.00015지니p)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전체적으로는 세부담 구조가 누진적이지만 소득계층별로 실효세부담률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단위당 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도 또 다른 요인

■ 민간소득 지니계수(0.3407) 대비 공적연금 수혜 후 소득의 지니계수(0.3367)는 0.0040지니p 하락(하락률: -1.15%)

- 가상적으로 공적연금 수혜규모를 1.2배, 1.5배, 2.0배 수준으로 증가시킬 경우 공적연금 합산 후 소득의 지니계수는 각각 0.3360, 0.3348, 0.3330으로 하락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대 될 것으로 추정

■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수혜(기타사회보장수혜)의 경우에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규모를 최대 2배까지 증가시키면 지니계수는 0.3335에서 0.3265로 더욱 하락(0.0070지니p 추가 하락) 예상

■ 사회보장기여금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차감 후 소득의 지니계수는 점차 하락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추정

마. 분석결과 종합

■ 2009년 현재 가상적 시나리오에서 상정한 소득세·소비세·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공적이전수혜 등의 변동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였을 때 공적연금기여금, 기타사회보장수혜, 공적연금수혜, 근로·종합소득세 등의 순으로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

- 단, 규모 조정시 근로·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소득계층별 상대분포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규모 증대시 분포구조가 변화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

대적 크기는 변할 수 있음.

- 총소득 대비 부담률(또는 수혜율)을 기준으로 단위당 지니계수의 변화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공적연금기여금, 기타사회보장 수혜금, 근로 · 종합소득세, 공적연금 수혜금의 순으로 단위당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

5. 요약 및 결론

-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접근법의 한계와 보다 정교한 정책분석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
 - 단계적인 모의실험 모형의 구축계획에 따라 1차년도에는 tax calculator 모형을 구성
 - 분석범위는 가계조사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득세(노동, 금융소득 등),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
 - 이전소득의 경우 민간이전 소득과 연금 등 형태별 사회보장소득을 포괄
 - 구축된 모형의 이용 가능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2008년 감세법(안)의 가계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소득세의 경우 감세법안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세액의 누진도도 증가
 - 소비세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환경 · 에너지 · 교통세율, 담배세율 인상을 가정하였는바, 세부담률의 큰 변화가 없었으며 소득재분배에도 거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저소득층(장애인 포함)에 대한 소득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재분배 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남.
- 소득재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정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효과적임을 시사
 - 새롭게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보다 일관성 있는 가구 관련 조세정책 분석의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단일화된 분석 플랫폼을 제시함에 따라 기본적인 효과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향후 보다 복잡한 정책분석의 시발점 역할
 -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모형으로의 발전 기반 제공
 - 구축된 모의실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와 개선 노력이 필요
 - 조세 및 재정제도 변경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소득세제를 구현함에 있어 실측되지 못하는 주요 항목들에 대한 보완방안
 - 향후 공적연금, 실업급여 등의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모형 등의 개선이 필요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조세 · 재정모의실험 모형: KIPFSIM08 모형의 구축』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 연구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협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경제학과 부교수

전영준 /한양대학교 부교수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각국에서 매년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원과 공공이전을 측정하여 국민계정(NA: National Accounts)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인도, 프랑스, 케냐 등 25개 국가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구성되어 국민이전계정(NTA: 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거시적으로 국민계정의 값과 일관되게 연령 간 자원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측정하여 고령화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형평성과 경제성장, 저축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국민이전계정은 세대간 이전과 함께 사적이전과 공적이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의 역할과 공적이전의 사적이전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등의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이전계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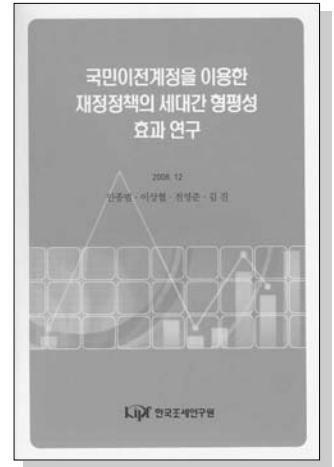
현재 국민이전계정 구축 연구는 미국 국립고령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ing)와 UN의 지원하에 전 세계 25개국이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그동안 1996년을 기준으로 국민이전계정 구축작업이 시도되어 미국과 대만 등 주요국과 비교분석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세대간 재분배의 변화와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를 3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제1부에서는 국민이전계정(NTA)의 이론적 기초를 정리하기 위한 기존연구에 대한 조사와 쟁점사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NTA 구축과 발전을 위해 매년 공동연구와 워크숍을 통해 이론적 기초와 다양한 추계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 추계 방법론상 이슈들을 정리하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NTA 구축에 가장

1) 김희삼·안종범 외,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05-03, 2006. 한국개발연구원

적합하면서 국제비교에 최적인 추계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사실 NTA의 이론적 기초는 세대간 이전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Samuelson(1958)의 중복세대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Lee(1994a, 1994b)는 Willis(1988)의 논의를 발전시켜, 국민이전계정의 이론적 프레임을 구축하여 세대간 이전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양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후에도 이 모형을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Bommier and Lee(2003)는 Lee(1994a)의 논의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모형에 실제 인구를 반영한 바 있다. 이론적 쟁점사안에 대한 정리는, NTA 프로젝트 초기부터 현재까지 논의된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필요시 이미 구축된 NTA를 대안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재추계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NTA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NTA 방법론상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NTA 추계방법을 이용하여 1996년 NTA를 재구축하고 나아가 2000년 한국 NTA를 구축함으로써 최초로 두 개 연도를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두 개 연도의 NTA 비교분석은 2006년 한국 NTA 최초 구축과 이를 미국과 대만과 비교한 기존 연구로부터 한국 NTA 구축의 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1996년과 2000년의 비교는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하되 세대간 이전과 공적이전과 사적이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으로 국한되어 있었



B5번형/ 215면
2008. 12

다는 점에서 NTA 분석은 미시적 연구를 토대로 한 거시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2000년 NTA 분석은 향후 2003년 이후 통계청 자료가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확장되고 변수와 표본 수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비교할 만큼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연도별 NTA 구축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개 연도의 NTA결과가 세대간 이전의 snap shot을 제공한다면 연도별 NTA 구축은 일종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제3부에서는 NTA 구축 과정과 직접 연계는 갖지 않지만 NTA에서 나타나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상호관계를 보다 미시적 모형으로서 이타적 가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사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간의 상호 관련성은 공공이전정책의 실효성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공이전의 강화가 분가와 분가한 가구로 구성되는 확대가족(extended family)내의 가구간(inter-household) 이전과 가구내(intra-household) 이전으로 구성되는 사적이전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

적연금 등 공공정책을 통한 세대간 이전의 변화는 자산의 상속 및 증여, 교육비 지출을 통한 자녀에 대한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공이전의 사적이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클 경우 공공이전정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3부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공공정책을 통한 자원의 이전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이전과 같은 세대내 공공이전이 확대가족내의 가구간(inter-household) 이전과 가구내(intra-household) 이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세대간 공공이전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적이전은 교육을 통한 이전, 부모 생존기간 동안의 증여(inter vivos transfer), 그리고 유산상속(bequest)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이전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부로 구성된 본 연구는 향후 NTA 구축의 발전을 통해 본격적인 세대간 형평성 분석의 기초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NTA 구축을 통한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세대간·세대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관련 분석은 NTA 국가간 자료가 실증분석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현 상태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 NTA 자료도 1996년과 2000년도 2개년도 NTA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2개년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도 2개년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도별 NTA 구축이 본격화되고 이러한 결과의 국제비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될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의미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NTA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09-10

요약

- 대만 국회는 5월 1일 내각이 제출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안을 승인함
 -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0%로 인하되며, 하위 세 개 소득세 과세구간의 한계세율이 각각 1%p씩 인하됨
- 벨기에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7일 근로 및 환경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담은 경기회복법 (Law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원천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면제 비율 확대,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이자보조, 자전거통근 지원 보조금 과세면제 등임
- 네덜란드 재무부는 4월 20일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법 개정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납세자 범주 및 세율 구간의 단순화, 세율 인하, 공제액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 대만 국회가 내각이 제출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안을 승인함
 - 동 법안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0%로 5%p 인하됨
 - 또한 하위 세 개 소득세 과세구간의 한계세율이 1%p씩 인하되고, 최저 소득층의 소득세 과세구간 기준금액이 인상됨(NT \$410,000 → NT \$500,000)
 - 그러나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함
 - 대만 정부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초기에 약 NT \$809억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감세조치가 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며,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표 1〉 대만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구분	세율체계 개정내용			
	과세소득 (NT\$)	한계세율(%)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법인세	~50,000	0	0	과세소득이 NT \$50,000 이하이면 법인세가 면제
	50,000~100,000	15	15	과세소득이 NT \$50,000~NT \$100,000이면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산출 $\text{법인세 산출세액}^1 = \text{Min}(\text{①}, \text{②})$ ① 과세소득×한계세율(즉, 15%) ② (과세소득 - NT \$ 5만)×50%
	100,000~	20	20	과세소득이 NT \$100,000을 초과하면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도출 $\text{법인세 산출세액} = (\text{과세소득} - \text{NT } \$ 100,000) \times \text{한계세율} + \text{NT } \$ 15,000^2$
소득세	개정 전		개정 후	
	소득구간(NT \$)	한계세율(%)	소득구간(NT \$)	한계세율(%)
	~410,000	6	~500,000	5
	410,001~1,090,000	13	500,001~1,090,000	12
	1,090,001~2,180,000	21	1,090,001~2,180,000	20
	2,180,001~4,090,000	30	2,180,001~4,090,000	30
4,090,001	40	4,090,001	40	

주: 1) 즉, 과세소득이 NT \$ 71,428 이하일 때는 $(\text{과세소득} - 50,000) \times 50\%$ 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고, 과세소득이 NT \$ 71,428을 초과하면 '과세소득×15%'가 법인세 산출세액이 됨
 2) $\text{Min}[100,000 \times 15\%, (100,000 - 50,000) \times 50\%]$

■ 대만에서는 2009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산업고도화촉진조례(Statute for Industrial Upgrading)」¹⁾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계속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정치적 내분과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 옴

-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陳水扁 총통 시절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이 내각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됨
 - 2007년 3월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인 입안에는 실패함
 - 2008년 1월 20일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홍콩과 동일하게 17.5%로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인 입안에는 실패함
- 그러나 2008년 5월 馬英九 총통의 정권교체 이후,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내용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함
 - 2008년 12월 29일 열린 조세개혁위원회(tax reform commission)²⁾ 제7차 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대신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일부 조세특례 규정을 계속하여 유지하기로 결론내림
 - 조세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대만 내각이 2009년 3월 5일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가 이를 5월 1일 최종 승인함

2. 벨기에 경기회복법

■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7일 근로 및 환경에 대한 세 제지원 정책을 담은 경기회복법(Law for the

1) 1991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임.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법안으로 신흥·주요·전략산업, 연구개발, 민간참여 공공건설, 낙후지역 투자, 물류센터 설립, 지역운영본부 설립 등에 관한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2) 2008년 5월 정권교체 이후 馬英九 총통이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조세분야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정부, 재계, 시민단체, 학계에서 선출된 20명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총통이 의장직을 맡고 있고, 2008년 6월말부터 매월 1차례 회의를 갖고 있음.

Recovery of the Economy)을 발표함

-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될 예정임

가. 환경지원 세제정책

■ 에너지절약투자 지원

-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투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해 1.5%의 이자를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함
- 그리고 1.5%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함
-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40%를 과세기간 당 EUR 2,000을 한도로 공제하며, 태양에너지 투자에 대해서는 EUR 600을 추가로 공제함
- 또한 미사용액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자전거통근 지원

- 고용주가 종업원의 자전거통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km당 첫 EUR 0.2에 대해 과세면제함
- 또한 고용주가 지급하는 자전거 구입 및 관련 유지비는 비과세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이는 위의 보조금에 대한 과세면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함
- 고용주는 자전거 및 관련 설비 구입비용에 대해 120%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나. 근로지원 세제정책

■ 원천세(withholding tax on remuneration)

- 고용주의 급여 원천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함

- 단, 신고기한은 그대로 유지함

- 일부 부문에서 고용주의 원천세 납부의무 면제³⁾폭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부문에서 고용을 촉진함
- 연구 및 개발 인력을 고용한 회사에 대해 원천세 중 75%(현 65%)를 징수면제함
- 근로자당 6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원천세 징수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 100시간, 2010년 1월 1일부터 130시간으로 확대함
- 2009년 6월 1일부터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수당 중 15.6%(현 10.7%)를 원천세 징수의무에서 면제함

■ 점심보조금(lunch voucher)

- 점심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장 기여금과 소득세 납부의무에서 면제됨
- 하지만 이를 지급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과세목적상 공제되는 비용은 아님
- 점심보조금 지급한도를 EUR 1만쯤 확대하고(EUR 4.91 → EUR 5.91) 동 인상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비용으로 공제해 줌

■ 스톡옵션(stock options)

- 스톡옵션⁴⁾의 행사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 사이 부여된 옵션에 대해 5년을 연장함
- 옵션 행사기간의 연장을 위해 기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종업원과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를 2009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알려야 함
- 그리고 이는 종업원당 EUR 100,000을 초과하지 않는 옵션가치 범위 내에서 가능함

3) 이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전액 원천징수하되, 재무부에는 이 중 일부만을 납부하는 방식임.

4) 벨기에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옵션의 행사 시점이 아닌 권리부여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음. 옵션이 부여되는 시점에 주식가치의 7.5%만큼 소득세가 과세되며, 종업원이 해당 옵션을 행사하거나 관련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음.



-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 신용보험계약의 보험료에 징수되는 9.25%의 세금을 폐지함

개정 전		개정 후	
공제대상자	공제액(EUR)	공제대상자	공제액(EUR)
배우자	532,570	배우자	600,000
23세 미만 자녀	4,556	자녀	19,000
23세 이상 자녀	10,323		

3. 네덜란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 네덜란드 재무부는 지난 4월 20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안이 통과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은 납세자 범주 및 과세구간의 단순화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구간을 7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납세자 범주도 3개에서 2개로 축소함
 - 제1범주의 최고세율은 27%에서 20%로, 제2범주와 제3범주의 최고세율은 각각 53%, 68%이었으나 하나의 범주로 통일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함

개정 전				개정 후		
과세구간 (EUR)	세율(%)			과세구간 (EUR)	세율(%)	
	제1범주	제2범주	제3범주		배우자· 자녀	그 외
22,763 미만	5	26	41	125,000 미만 125,000 이상	10	30
22,763~45,519	8	30	45			
45,519~91,026	12	35	50			
91,026~182,042	15	39	54			
182,042~364,073	19	44	59			
364,073~910,163	23	48	63			
910,163 이상	27	53	68	20	40	

주: 제1범주는 배우자와 자녀, 제2범주는 형제·자매·부모 등, 제3범주는 그 외의 자

- 상속세 공제액은 배우자의 경우 EUR 532,570에서 EUR 600,000으로, 자녀의 경우 연령에 따라 EUR 4,556, EUR 10,323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EUR 19,000로 인상하였음

동향 09-11

요약

- 헝가리 의회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5월 11일 세법개정안을 승인함
 - 증세 관련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율 인상(20% → 25%),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확대 폭 조정, 연료, 담배 및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 등임
- 스위스 정부는 2009년 9월 27일 예정된 국민투표(referendum)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7.6% → 8%)과 관련 투표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지난 5월 19일 캠페인에 착수함
- 호주 정부는 2009. 5. 12. 2009-10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현재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기반시설에 대한 총투자액은 AUD 220억 규모임
 - 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정책의 적용기한 연장, 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50% 감가상각을 허용함

1. 헝가리 세법 개정(amendments to tax laws)

- 헝가리 의회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5

월 11일 세법개정안을 승인함

- 이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standard rate)을 20%에서 25%로 인상함
- 한편, 기본식료품 및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18%의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도입하고, 5%의 경감세율(reduced rate)은 그대로 유지함
- 참고로, 경감세율의 경우 도서, 신문, 잡지, 특정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에서 1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의 확대 폭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함
- 현재 헝가리의 개인소득세율은 과세소득 중 첫 HUF 1.7million에 대해서는 18%를,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6%를 적용하고 있음
- 지난해 8월 27일 헝가리 수상은 감세패키지를 통해 1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2009년 HUF 2million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한 바 있으나, 이를 HUF 1.9million으로 조정함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¹⁾ 세율을 인하함
- 과세소득 중 법정최소임금의 두 배(현재 HUF 138,000)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29%의 세율을 26%로 인하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9%의 세율을 유지함
-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세율을 인하함
- 과세소득 중 법정최소임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에

1) 24%의 연금보험료(pension insurance contribution)와 5%의 건강보험료(health insurance contribution)로 구성되어 있음.



대해서는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을 유지함

■ 법인세 분야

- 특별상각(extraordinary depreciation)
 - 현재 법인세법상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만 공제 가능함
 - 세법개정예에 의하면, 미사용공제액을 다음 4개 과세연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외화환산(foreign currency)
 - 현재 장기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그 외화환산손익의 인식을 실현 시점까지 연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일부 항목에 한해 인식을 이연할 수는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관련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세법개정예에 의하면, 장기 외화지분 관련 미실현 자본손익에 대해서만 그 인식을 이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 기타 분야

- 연료, 담배 및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율을 평균 3%p에서 7%p만큼 인상함
- 전기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과세를 면제함

2. 스위스 정부 부가가치세율 인상 캠페인 착수

- 스위스 정부는 2009년 9월 27일 예정된 국민투표(referendum)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7.6%²⁾ → 8% 법안과 관련 투표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지난 5월 19일 캠페인에 착수함
 -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 plan)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상해보험에서 축적된 결손은 CHF 13billion에 달하며, 매해 CHF 1.4billion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폐기되는 경우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³⁾는 상해보험의 운영 관련 결손보전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상해보험을 비롯한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사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증세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2009년 1월 당초 5월 17일에 계획되었던 국민투표 일자를 9월 27일로 연기한 바 있음
 -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니나 의회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일자를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제안을 거절하였음

3. 호주 2009-10예산안

- 호주 정부는 2009. 5. 12. 2009-10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2) 스위스는 현행 7.6%의 부가가치세율을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왔음.

3) 스위스의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은 연금보험(old-age and survivor insurance),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 재해보험(accident insurance),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경기침체 상태에서 미래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함
 - 기반시설에 대한 총투자액은 AUD 220억 규모임
 - 도로건설에 AUD 34억, 도시철도(metro rail)에 AUD 46억, 항구 및 화물운송시설에 AUD 3.8억 투자
 - 청정에너지 개발에 AUD 45억, 대학 및 연구기관 프로젝트에 AUD 45억, 병원 및 의료 기반시설에 AUD 32억 투자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의 최초 구입 및 건설에 대한 지원정책인 First Home Owner Boost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함
 - First Home Owner Boost란 2008. 10. 14~2009. 12. 31 기간에 계약된 최초주택의 구입 및 건설에 대해 기존의 AUD 7,000 보조금에 추가하여 AUD 7,000을 지급함으로써 총 AUD 14,00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 호주 경제의 중심이며, 민간 분야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증가
 - 소기업이란 연매출액 AUD 200만 미만인 기업임
 - 2008. 12. 31~2009. 12. 31. 기간에 구입하여 2010. 12. 31. 이전에 사용에 들어간 적격 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투자비용의 50% 감가상각을 허용함



| 정책 흐름 |

-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강구 -

* 본 자료는 2009년 6월 2일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에서 발표한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현장 중심의 재정 조기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6. 2일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권오봉 재정정책국장 주재로 파주시청에서 개최하였음.
 - 회의에서는 5월중의 재정집행 현황과 함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별 대책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와 파주시의 조기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최일선인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음.
 - 권오봉국장은 “금번 회의를 파주시청에서 개최한 것은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통해 상반기 조기집행의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우수 조기집행 사례를 중앙부처와 다른 지역 등에도 전파하여 재정 조기집행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앞서 행안부·복지부와 합동으로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노인일자리지원, 한시생계급여, 희망근로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환경부, 농식품부, 소방방재청도 파주시 국고보조사업 중 하수관거정비, 재해위험정비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

을 실시하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하였음.

- 한편, 정부는 5. 15일까지 집행관리 대상 257.7조 원 중 119.4조원을 집행하여 5월말 계획(119.7조 원) 대비 9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진도율은 46.3%로 5월말 계획(46.4%) 물량을 집행함.

'09. 5. 15일, 재정집행 실적

(단위: 조원, %, 누계)

구분	'09 계획 (A)	'09. 5월			6월계획		
		5월말(B)	5.15실적 (C)	C-B	집행률 (C/B)	계획 (D)	(C-D)
주요사업비	257.7	119.7	119.4	△0.3	99.7	156.1	△36.7
• 예산	170.1	83.6	81.9	△1.7	98.0	102.5	△20.6
• 기금	30.5	12.1	12.3	0.2	101.7	19.0	△6.7
• 공기업	57.1	23.9	25.2	1.3	105.4	34.6	△9.4

-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분야는 39.1조원을 집행하여 111.7%의 집행률을 보이며, 5월말 계획(35조원) 물량보다 4.1조원을 더 집행하였음.

'09. 5. 15일, 4대 중점관리분야 재정집행 실적

(단위: 조원, %, 누계)

구 분	'09 계획	5월 실적			상반기 계획	
		5월말 계획(A)	5.15일 실적(B)	집행률 (B/A)	금액	진도율
계	74.9	35.0	39.1	111.7	47.8	63.8
•금융시장안정사업(97개)	3.8	3.8	3.8	100.0	3.8	100.0
•일자리 사업(229개)	4.5	2.5	2.5	100.0	3.1	68.9
•민생안정사업(125개)	23.7	11.3	11.4	101.5	14.4	60.7
•SOC사업(1,170개)	42.9	17.4	21.4	123.2	26.5	61.8

■ 파주시의 경우도 5.26일까지 3,368억원의 재정을 집행하여 조기집행 대상액 5,739억원 대비 58.7%, 상반기 목표액 3,443억원 대비 97.8%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시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음.

- 이는 클로징10*, 조달물자 사고지* 제도개선 등 조기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이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음.

* 클로징(Closing)10 : 모든 공사를 10월에 마감함으로써 예산 조기집행 및 겨울철 부실공사 예방

* 조달물자 사고지 : 조달물자(관급자재) 대금을 물품 수령 후 지급하는 관행에서 납품 전에 대금을 조달청에 선납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개선 및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

■ 기획재정부는 현장 중심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유지와 민생안정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제가 초기에 성장추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파주시 재정집행현장 방문 계획

1 부처 합동 현장점검 계획

- 일시 및 장소 : 6. 2(화), 경기도 파주시
- 대상사업 : 노인일자리 지원, 한시생계보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 참석자 : 재정부(재정정책국장), 행안부, 복지부 합동 현장점검
- 점검대상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09 파주시 예산
노인 일자리 지원(복지부)	65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을 통한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	909 (국비 454, 도비 227, 시비 227)
한시생계보호 지원(복지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능력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4인가구 기준 30만원/월)	1,815 (국비 1,634, 도비 91, 시비 91)
희망근로 프로젝트(행안부)	만18세 이상의 실직자, 휴폐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10,191 (국비 8,280, 도비 792, 시비 1,119)

2 부처별 현장점검 계획

- 일시 및 장소 : 6. 2(화), 경기도 파주시
- 대상사업 : 하수관거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 참석자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09 파주시 예산
하수관거정비(환경부)	하수관거 설치를 통해 하수의 공공수계 방류를 방지하고 적정농도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용 효율 증진 및 하천 수질 개선	6,978 (국비 4,998, 시비1,990)
농촌생활환경정비(농식품부)	농어촌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2,000 (국비 1,400, 도비 300, 시비 300)
재해위험지구정비(소방청)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재해위험시설 및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3,421 (국비 2,053, 도비 410, 시비 958)

참고 2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요

■ 구성 및 운영

- 구성 :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각 부처 1급 및 공기업 부사장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재정관리점검단'을 한시적으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

- 개최 주기 : 매월 2회(전체 1회, 부진기관 1회)

■ 점검 대상

- 예산, 기금 및 투자사업 규모가 큰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

* 예산 40개, 기금 39개 및 공기업 25개

- 인건비, 경상경비 및 정부 내부거래 등 제외

■ 점검 사항

- 월별 예산집행실적
- 집행상 애로요인 및 해소 대책 논의
- 집행 원활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현황
- 부처, 공기업 자체점검 현황 등

■ 개최실적

차수	개최일시	참석자	논의사항
1차	'08. 12. 17	• 주재:재정부 제2차관 • 40개 부처 실장 및 14개 공기업 부사장	• 조기집행 추진 방안 및 09년 집행계획
2차	'09. 1. 15	• 주재:재정부 제2차관 • 29개 부처 실장 및 18개 공기업 부사장	• 예산조기집행 추진상황 • 예산집행 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
3차	'09. 1. 22	• 주재:재정정책국장 • 14개 부처 과장 및 18개 공기업 본부장	• 1월 중간점검 및 향후 대책
4차	'09. 2. 11	• 주재:재정부 제2차관 • 28개 부처 실장 및 16개 공기업 부사장	• 1월 집행실적 및 자체점검 추진상황 등
5차	'09. 2. 24	• 주재:재정정책국장 • 16개 부처 과장 및 6개 공기업 본부장	• 2월 중간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점검 등
6차	'09. 3. 12	• 주재:재정부 제2차관 • 23개 부처 실장 및 13개 공기업 부사장	• 2월말 집행실적 및 제도개선사항 점검 등
7차	'09. 3. 26	• 주재:재정정책국장 • 12개 부처 국과장 및 8개 공기업 본부장	• 3월 중간점검 및 자체현장점검 현황 등
8차	'09. 4. 23	• 주재:재정부 제2차관 • 19개 부처 실장 및 10개 공기업 부사장	• 1/4분기 집행현황 및 추경예산 집행방안 등
9차	'09. 5. 12	• 주재:재정부 제2차관 • 14개 부처 실장 및 12개 공기업 부사장	• 4월말 집행현황 및 추경예산 집행관리 방안 등
10차	'09. 6. 2	• 주재:재정정책국장 • 15개 부처 기획재정담당관 및 1개 공기업 본부장	• 5월 집행중간점검 및 지자체 우수사례 점검 등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 본 자료는 2009년 5월 28일 기획재정부 결산과에서 발표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반영(채권 806억원 감소, 국유재산 505억원 증가 등 미조정)하여 최종 확정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28(목) 국회에 제출하였음
- 국회제출 결산서(9종) : 세입세출, 기업회계, 기금, 국가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예비금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추진경과>

(법정기한)

-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2. 10 (2.10)
- 국무회의 심의 : 3. 24
- 감사원 제출 : 4. 2 (4.10)
- 감사원 검사결과 접수 : 5. 20 (5.20)
 - 채권, 국유재산, 물품이 과다 · 과소 계상되어 일부 조정
- 국회 제출 : 5. 28 (5.31)

*국회 심의절차는 국회법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요지(감사원 검사결과 반영후)

세입세출(일반 · 특별회계)

- 세입 : 232.2조원(예산 대비 1.7% 증수)
- 세출 : 222.9조원(예산현액 대비 96.4% 집행)
- 세계잉여금 : 6.5조원(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4.6조원)

(단위: 억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 (C=A-B)	다음 연도 이월액(D)	세계 잉여금 (E=C-D)
일반회계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특별회계	505,899	474,240	31,658	12,368	19,291
합 계	2,321,757	2,228,935	92,821	27,768	65,054

기업회계 · 기금

- 기업회계(5개)
 - 당기순이익 915억원(전년 대비 2,052억원 개선)
 - 양곡 929억원, 책임운영 57억원 당기순손실
 - 조달 1,016억원, 우편 604억원, 우체국예금 281억원 당기순이익

- 기금(60개)
 - 당기순이익 21.9조원(전년 19.9조원 당기순이익, 2.0조원 증가)
 - 외국환평형기금 등 35개 기금 : 당기순이익 27.3조원
 - 국민연금기금 등 25개 기금 : 당기순손실 5.4조원

계속비·예비비

- 계속비 : 9,034억원(장항선개량사업)
- 예비비 : 지출 8,590억원, 이월 180억원, 불용 1조 4,977억원
 - 일반회계 : 지출 8,590억원, 이월 180억원, 불용 1조 4,230억원
 - 특별회계 : 지출 없음, 불용 747억원

채권·채무

- 채권 : 181.6조원¹⁾(36.8조원 증가, 전년 대비 25.5% 증)
 - 기금 등의 용자 증가 23.8조원, 예금 및 예탁금 증가 8.4조원, 국·관세청 조세채권 증가 4.7조원 등
- 채무 : 297.9조원(8.8조원 증가, GDP 대비 29.1%)
 - 일반회계 적자국채 7.4조원 등
 - ※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 : 308.3조원 (9.4조원 증가, GDP 대비 30.1%)

국유재산·물품

- 국유재산 : 309.6조원²⁾ (33.9조원 증가, 전년 대비 12.3% 증)
 - 토지 107.7조원, 건물 35.3조원, 유가증권 131.3조원 등
- 물품 : 10.5조원³⁾ (1.0조원 증가, 전년 대비 10.2% 증)
 - 전기·통신기기 2.0조원, 사무용기기 1.4조원 등

1) △806억원(민간기금인 신문발전기금의 채권을 국가채권에서 제외 △451억원, 국유재산인 유가증권을 국가채권에서 제외 △257억원 등)

2) 505억원(누락된 토지·건물·입목축 등을 국유재산에 포함 248억원, 국가채권으로 계상된 유가증권을 국유재산에 포함 257억원)

3) △7백만원(민간기금인 신문발전기금의 물품을 국가물품에서 제외 △7백만원)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 본 자료는 2009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에서 발표한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소득 동향

- 전국가구(2인 이상, 비농어가)월평균 총소득 34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실질로는 3.0% 감소

- (근로소득)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둔화

*근로소득 증감률(% , 전년동기비): 10.0(08.1/4) → 8.8(2/4) → 7.8(3/4) → 6.5(4/4) → 2.0(09.1/4)

- (이전소득) 노후소득보장 정책에 힘입어 사적이전 소득이 소폭 상승(3.0%)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

*기초노령연금공과 공적연금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7%, 14.3%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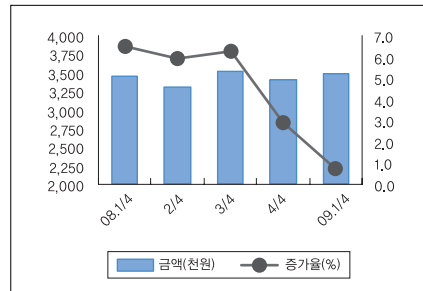
- (기타소득) 사업소득(△2.2%), 재산소득(△13.6%)과 비경상소득(△8.7%) 모두 감소

-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은 하위 1분위(△5.1%)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는 소폭(0.7~1.3%, 전년 동기 대비) 증가

*5분위 소득증가율 상승세로 전환 : 5.7(08.3/4) → 0.6(4/4) → 1.1(09.1/4)

분기별 소득 추이

(천원, 전년 동기 대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천원, 전년 동기 대비 %)

	09. 1/4	구성비	증감률
소득	3,476.2	100.0	0.8
경상소득	3,285.1	94.5	1.4
근로소득	2,250.9	64.8	2.0
사업소득	707.6	20.4	-2.2
재산소득	19.4	0.6	-13.6
이전소득	307.1	8.8	6.8
비경상소득	191.1	5.5	-8.7

2. (비)소비지출 동향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소비지출은 하락(△3.5%)하여 증감률이 감소세로 전환(실질 △6.8%)

*소비자물가(% , 전년 동기비): 5.5(08.3/4) → 4.5(4/4) → 3.9(09.1/4)

*소비지출 증감률(% , 전년 동기비): 3.4(08.3/4) → 1.1(4/4) → △3.5(09.1/4)

- 소비지출 중 보건*(5.0%)과 교육 (3.9%)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지출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교통*(△15.7%)과 주류 및 담배(△13.5)의 감소가 두드러짐

*09년 건강보험의 수가 2%(전년 대비) 인상

*자동차 구입률(% , 전년 동기비): △46.4

■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 신규 사회보험*과 대출증가*로 사회보장 부담(10.7)과 이자비용*(17.2)은 증가한 반면 경장조세(△2.0)는 세율인하 정책* 영향으로 감소(△2.0)

*노인장기요양보험 08년 7월 시행

*가계대출(예금은행, 조원): 368(08.1/4) → 392(09.1/4)

*소득세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소득세율 인하: 8%(08) → 6%(09)

■ 소득계층별로 보면 1~2분위의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5분위의 지출증가율이 더 낮음*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증감률(% , 전년 동기비): 1분위 △1.4, 2분위 △1.8, 3분위 △5.0, 4분위 △4.0, 5분위 △3.5

- 그럼에도 소득 1분위는 보건과 교육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한 반면 4~5분위는 주거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이 증가세로 전환

*소득분위에 따른 지출비목 증감률(% , 전년 동기비)

1분위: 보건 9.2(08.4/4) → 0.4(09.1/4), 교육 20.2(08.4/4) → △1.7(09.1/4)

5분위: 가정·가사 △12.5(08.4/4) → 5.1(09.1/4), 주거광열 △36.12(08.4/4) → 0.7(09.1/4)

3. 가계수지 동향

■ 가계수지 흑자액 및 흑자율은 각각 14.6%, 3.0%p 상승하고, 이에 따라 평균 소비 성향은 전년 동기 대비 3.0%p 감소

- 소득이 소폭(0.8%) 상승한 것에 비해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3.5%)하여 흑자율이 증가세로 전환

■ 08년 1사분기 이후 지속적인 흑자율 증가 추이*로 가계수지 건전성은 유지

*흑자율 추이(% , 전년 동기비): △0.3(08.1/4) → 1.1(2/4) → 1.9(3/4) → 1.1(4/4) → 3.0(09.1/4)

■ 소득계층별로 보면 1분위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월 50만원이 적자인 반면 5분위는 256만원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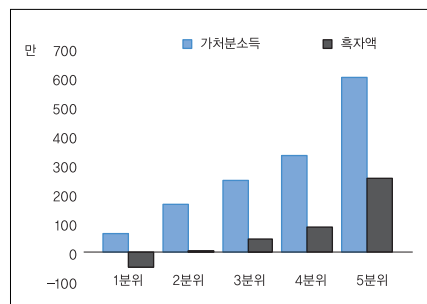
*분위별 흑자율(%): 1분위 - 79.6, 2분위 3.9, 3분위 18.0, 4분위 26.5, 5분위 42.5

■ 가구규모는 4인가구, 가구주 연령으로는 40대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 성향이 높음

*가구규모별 평균소비성향(%): 2인 70.8, 3인 74.0, 4인 78.0, 5인 이상 77.6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30대 67.7, 40대 81.5, 50대 76.3, 60대 76.1

소득계층별 소비성향



소득계층별 소비성향

(단위:천원, %, %p)

구 분	08.4/4	09.1/4	
	증감률	증감률	금 액
처분가능소득	2.6	0.4	2,829.3
흑 자 율	7.0	14.6	691.3
흑 자 율	-1.1p	3.0p	24.4
평균소비성향	1.1p	-3.0p	75.6

*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주택 공급 등

* 고용유지·취업기회 확대(3.5조원): 고용유지기업 지원, 공익형 일자리 사업 추진 등

- 이러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2사분기 이후부터 가계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도 강화

4. 평가 및 시사점

-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81(08.12) → 84(09.1) → 85(2) → 84(3) → 98(4) → 105(5)

- 또한 세계수요 위축 등에 따라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득여건도 악화

*수출 추이(%): Δ17.9(08.12) → Δ34.2(09.1) → Δ18.5(2) → Δ22.0(3) → Δ19.0(4)

*실질 GDP(%): 5.5(08.1/4) → 4.3(2/4) → 3.1(3/4) → Δ3.4(4/4) → Δ4.3(09.1/4)

- 고용부진은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부문의 위축이 심화되어 저소득층(1분위) 가구소득을 감소 시킴

*취업자 증감(만명): 14.1(08.3/4) → 5.4(4/4) → Δ10.3(09.1) → Δ14.2(2) → Δ19.5(3)

임시·일용직(만명): Δ14.1(08.3/4) → Δ17.9(4/4) → Δ26.7(09.1) → Δ27.3(2) → Δ19.4(3)

-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09. 4)

* 저소득층 생활안정(4.2조원): 생계지원, 실업급여, 공공임대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 본 자료는 2009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에서 발표한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09년 1/4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2.4조원
- 통합재정수지 감소는 수입 감소(전년 동기비 △7.5조원) 및 조기집행에 따른 1/4분기 재정지출 대폭 증가(+25.7조원)에 기인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05	'06	'07	'08°	'09전망	1/4분기		
						'08.1/4(A)	'09.1/4°(B)	증감(B-A)
총수입	191.4	209.6	243.6	250.7	252.8	76.1	68.6	△7.5
총지출	187.9	205.9	209.8	238.8	274.7	55.4	81.0	25.7
수 지	3.5	3.6	33.8	11.9	△22.0	20.7	△12.4	△33.1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수지(관리대상수지*)는 △21.9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재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

관리대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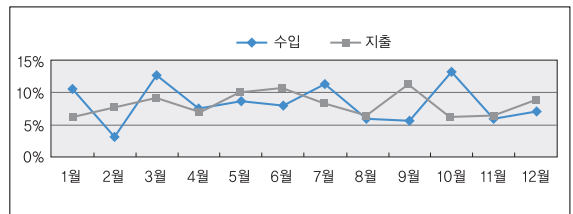
(단위: 조원)

	08.1/4분기	09.1/4분기	증감
통합재정수지 (A)	20.7	△12.4	△33.1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B)	11.6	9.5	△2.1
관리대상수지 (A-B)	9.1	△21.9	△31.0

참고 '09년 연도중 통합재정수지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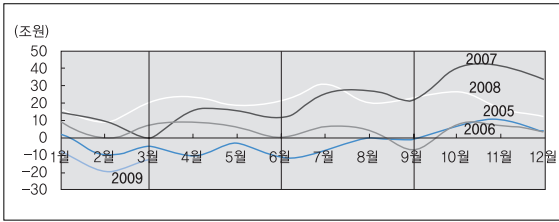
- 연도중 통합재정수지는 일반적으로 매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지출의 흐름에 따라 결정됨
- 지출은 조기집행 수행으로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입은 월별로 일정하게 징수되는 것이 아님

월별 수입·지출 진도율 추이(2006년 기준)



- 조기집행 및 과거추세 등을 감안할 때 연도중에는 수지적자가 악화될 수 있으나 연도말에는 '09재정수지 계획(△22,0조원) 도달 전망
- '05~'08년간 통합재정수지는 연도중에는 당초 계획보다 악화되었으나 연도말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임

'05~'09년 연도중 통합재정수지 추이



· '02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결산 실적은 예산상 계획치보다 양호한 모습 시현

'02~'08년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	5.5	1.9	3.3	0.8	△0.9	12.2	11.4
결산	22.7	7.6	5.2	3.5	3.6	33.8	11.9
예결산 차이	17.2	5.7	1.9	2.7	4.6	21.6	0.5

통합재정통계(2009. 3월 누계 기준/잠정)

(단위: 십억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업 특별회계	비금융성 기 금	합 계
수 입 (A)	43,655	3,462	833	20,631	68,582
경상수입 ¹⁾	43,561	3,309	823	20,463	68,156
자본수입 ²⁾	95	153	10	169	427
지출 및 순용자 (B)	49,949	12,602	1,173	17,283	81,007
경상지출 ³⁾	42,476	4,039	1,050	14,798	62,363
자본지출 ⁴⁾	5,199	8,049	123	460	13,832
순 용 자 ⁵⁾	2,274	513	-	2,025	4,812
통합재정수지 (A-B)	△6,294	△9,140	△340	3,349	△12,425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경상수입

- 조세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 세외수입 : 임대료, 이자수입, 수수료, 벌금 및 몰수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등

2) 자본수입 : 고정·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수입 등

3) 경상지출 : 인건비, 임차료, 이자지급, 보조금 및 지방정부 등에 대

한 경상이전

4) 자본지출 : 고정·재고자산 매입비, 지방정부 등에 대한 자본이전

5) 순 용 자 : 용자지출 - 용자회수

■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수지)

- △12,425십억원(통합재정수지) - 9,515십억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21,940십억원

*사회보장성기금 (4개)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 연 5%에서 3.4%로 인하, '09. 6.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본 자료는 2009년 6월 1일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발표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3.7/100,000(연 5.0%)에서 1일 9.3/100,000(연 3.4%)로 개정고시함

※ 연부연납

-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 가산율 조정 배경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고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조정함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09. 5. 1. 고시) 및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09. 3. 31. 고시)과 동일하게 조정

■ 가산율 조정 내용

- 가산율 조정
 - 현행 1일 13.7/100,000에서 1일 9.3/100,000로 하향 조정
- 조정 가산율 적용시기
 - 2009. 6.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사례

-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단위: 원)

구분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가산금	
		개정 후	개정 전
신청시	25백만원	-	-
1차 연도	"	$125,000,000 \times 9.3/100,000 \times 365 = 4,243,125$	$\dots \times 13.7/100,000 \times \dots = 6,250,625$
2차 연도	"	$100,000,000 \times 9.3/100,000 \times 365 = 3,394,500$	$\dots \times 13.7/100,000 \times \dots = 5,000,500$
3차 연도	"	$75,000,000 \times 9.3/100,000 \times 365 = 2,545,875$	$\dots \times 13.7/100,000 \times \dots = 3,750,375$
4차 연도	"	$50,000,000 \times 9.3/100,000 \times 365 = 1,697,250$	$\dots \times 13.7/100,000 \times \dots = 2,500,250$
5차 연도	"	$25,000,000 \times 9.3/100,000 \times 365 = 848,625$	$\dots \times 13.7/100,000 \times \dots = 1,250,125$
합계	1.5억원	12,729,375	18,751,875

- 개정으로 인한 연부연납가산금 감소액 = 6,022,500원
- 매회 납부할 금액 = 연부연납금액 + 연부연납가산금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 골프회원권·골동품 등 압류·공매 추진 -

* 본 자료는 2009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서 발표한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 오는 6월을 『20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상반기(6. 1 ~6. 30), 하반기(11. 1~12. 30)
-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9. 3. 1 현재 3조 4,096억원에 달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 측면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2006.3.1	2007.3.1	2008.3.1	2009.3.1
체납총액(계)	3조2,013	3조2,634	3조2,134	3조4,096
현년도	1조1,219	1조1,986	1조2,266	1조4,320
과년도	2조794	2조648	1조9,868	1조9,776

- 우선 지방세 체납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09년 지방세수 전망치인 42조 2,675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기 위해 정기본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신고납부 세목 납세안내 강화, 이메일, 휴대폰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기예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액·상습 체납자의 골프회원권·골동품 공매, 체납액 징수
 -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골프 회원권의 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2009년에는 이월체납액 3조 4,096억원의 20%인 6,820억원(2008년도에는 체납액의 18.4%인 5,904억원 징수)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군·구

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 먼저,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지적전산망), 예금(금융기관 본점), 직장(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조회 등을 통해 소유부동산, 금융재산, 직장 등을 파악하여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며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압류재산 공매, 골프회원권 등 각종회원권 압류, 골프채, 골동품 등 고가의 동산 등도 압류, 매각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② (일명) 대포차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

-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대포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천대)

구분	체납건수 별 현황						계
	1건	2건	3건	4건	5~10건	10건이상	
체납금액	1,626	1,040	767	712	2,508	1,658	8,311
차량대수	1,685	514	264	194	403	131	3,191

-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속칭 대포차)을 중점 관리하며,
- 지방세 체납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발취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설명하여 자진하여 인도하도록 유도하

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③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능력 회복에 주력

- 아울러, 고질·상습 체납자는 조세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유예조치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 신용불량자 중 체납세 일부 납부, 분납계획서 제출 등 납부의지 확인 후 신용불량 해제 조치를 통한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며,
-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자 중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 사업·분납계획서 등을 검토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재정통계 |

-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 업태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
-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1.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단위: 명)

연 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¹⁾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¹⁾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¹⁾
1991	1,988,821	94,579	626,974	-	1,267,268	350,551	17,599	156,591	-	176,361	217,431	3,295	74,511	-	139,625
1992	2,102,203	107,073	672,723	-	1,322,407	417,948	18,751	144,922	-	254,275	267,785	3,965	86,718	-	177,102
1993	2,253,105	117,374	778,854	-	1,356,877	440,072	16,301	178,487	-	245,284	287,882	7,265	95,884	-	184,733
1994	2,388,044	133,911	933,335	-	1,320,798	520,207	25,154	217,811	-	277,242	343,002	7,780	134,686	-	200,536
1995	2,526,198	150,023	1,103,567	-	1,272,608	509,784	25,874	249,081	-	234,829	339,524	7,868	144,238	-	187,418
1996	2,580,113	169,512	926,841	273,197	1,210,563	486,069	28,841	221,646	47,395	188,187	346,350	8,010	150,469	21,020	166,851
1997	2,930,116	192,333	1,004,852	490,034	1,242,897	706,320	34,497	236,736	205,562	229,525	340,673	9,812	124,011	60,890	145,960
1998	2,855,369	197,185	979,285	546,161	1,132,738	580,880	32,639	207,082	194,060	147,099	646,270	20,552	252,307	166,827	206,584
1999	2,998,956	232,474	1,059,109	586,800	1,120,573	990,480	60,027	345,880	282,678	301,895	635,859	22,747	218,725	187,978	206,409
2000	3,390,772	278,657	1,442,987	1,669,128	-	1,015,424	73,020	470,850	460,887	10,667	715,087	27,793	294,433	303,379	89,482
2001	3,709,035	321,204	1,573,217	1,814,614	-	1,072,489	72,845	476,905	522,739	-	709,580	25,148	308,527	375,905	-
2002	3,963,454	345,292	1,774,268	1,843,894	-	1,239,370	72,463	581,468	585,439	-	800,261	31,952	353,368	414,941	-
2003	3,994,665	359,154	1,861,707	1,773,804	-	1,006,779	61,187	499,122	446,470	-	857,033	41,295	409,490	406,248	-
2004	3,942,247	372,041	1,924,877	1,645,329	-	884,932	57,406	468,309	359,217	-	731,160	31,868	367,781	331,511	-
2005	4,121,612	400,398	2,117,551	1,603,663	-	880,716	66,375	461,862	352,479	-	795,755	41,761	393,941	360,053	-
2006	4,891,024	425,667	2,246,698	1,719,556	499,103	1,010,360	65,016	1,399,556	387,046	104,086	795,369	37,625	1,111,507	314,806	89,175
2007	5,005,870	479,140	2,376,390	1,653,569	496,771	1,135,831	75,767	1,576,445	440,978	102,705	894,776	46,714	1,258,913	349,770	87,441

주: 1) 2006년부터 특례항목은 면세사업자 수를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업태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

(단위: 명)

연 도	합 계	농업, 임업, 어업	광 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업종
1987	746,419	51,339	2,101	4,906	4,699	25,852	415,459	190	21,733	19,093	192,134	1,865	7,048
1988	755,144	51,367	1,676	5,242	4,741	25,026	430,048	181	24,699	20,227	180,014	2,645	9,278
1989	777,720	53,606	1,681	5,689	4,988	24,410	418,659	231	27,522	21,765	205,321	2,792	11,056
1990	838,922	55,346	1,596	6,197	6,038	26,623	424,421	234	39,457	23,539	238,891	2,773	13,807
1991	881,048	59,044	1,546	6,489	7,566	29,782	414,717	300	45,034	25,908	270,654	2,770	17,238
1992	990,379	60,951	1,708	7,142	8,418	32,004	405,937	302	48,133	27,762	371,842	3,167	23,013
1993	1,080,462	64,130	1,629	7,735	9,343	36,036	420,300	317	53,000	29,433	428,516	3,524	26,499
1994	1,121,705	65,790	1,588	8,445	10,664	39,912	416,332	335	54,658	31,568	461,350	3,843	27,220
1995	1,265,931	65,275	1,368	8,384	11,298	44,778	425,581	285	56,869	33,225	580,610	4,694	33,564
1996	1,319,051	63,807	1,343	8,125	11,652	44,560	378,291	323	56,467	34,727	583,998	5,136	130,622
1997	836,709	62,813	1,086	8,288	11,584	51,066	378,762	422	55,386	36,519	150,034	6,741	74,008
1998	873,879	56,393	788	9,908	7,796	59,333	374,863	922	50,022	39,061	223,219	8,777	42,797
1999	637,113	46,507	657	11,022	6,323	53,049	217,357	1,120	47,322	41,929	189,687	10,216	11,924
2000	725,720	47,771	681	11,215	8,085	57,458	219,740	1,442	52,600	44,552	253,927	13,057	15,192
2001	875,095	50,060	598	12,142	16,167	66,111	208,536	1,747	64,061	49,653	354,185	16,735	35,100
2002	975,209	47,252	547	11,871	25,763	72,278	203,753	1,801	66,715	53,788	418,496	17,585	55,360
2003	959,632	46,567	399	12,907	24,006	77,105	181,118	2,097	71,076	54,985	415,269	30,037	44,066
2004	1,125,959	45,154	362	13,983	15,508	77,890	178,382	2,375	72,496	56,174	584,917	35,122	43,596
2005	1,079,025	48,557	568	15,494	11,280	82,590	176,172	2,255	78,917	56,441	526,595	35,164	44,992
2006	1,289,031	60,656	640	17,212	11,992	92,709	189,711	2,306	91,004	58,215	664,435	43,824	56,327
2007	1,469,993	60,614	724	20,366	13,594	105,287	195,372	2,460	104,774	59,559	797,635	54,062	55,54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5	합계	1기	2,446,864	141,540	1,009,885	-	1,295,439	254,938	14,450	120,980	-	119,508	170,034	3,662	70,999	-	95,373
		2기	2,526,198	150,023	1,103,567	-	1,272,608	254,846	11,424	128,101	-	115,321	169,490	4,206	73,239	-	92,045
	서울특별시	1기	731,415	54,167	354,559	-	322,689	62,814	5,378	35,688	-	21,748	41,301	1,078	21,239	-	18,984
		2기	741,246	57,292	375,913	-	308,041	53,819	3,876	31,891	-	18,052	43,373	1,385	22,297	-	19,691
	부산광역시	1기	231,344	12,223	108,303	-	110,818	28,619	1,744	13,784	-	13,091	23,628	581	9,056	-	13,991
		2기	239,156	13,008	118,739	-	107,409	30,588	1,362	16,295	-	12,931	23,892	704	9,628	-	13,560
	대구광역시	1기	142,110	6,338	66,152	-	69,620	16,361	393	8,153	-	7,815	9,244	84	4,396	-	4,764
		2기	144,920	6,410	68,726	-	69,784	17,055	491	9,599	-	6,965	9,745	190	4,539	-	5,016
	인천광역시	1기	142,379	9,660	69,672	-	63,047	16,596	789	8,933	-	6,874	14,484	198	6,376	-	7,910
		2기	150,229	10,270	76,298	-	63,661	20,738	799	10,719	-	9,220	15,235	278	7,040	-	7,917
	광주광역시	1기	83,776	4,646	26,762	-	52,368	9,040	587	2,660	-	5,793	4,497	189	1,411	-	2,897
		2기	85,990	4,942	29,855	-	51,193	9,150	244	3,426	-	5,480	5,814	60	1,809	-	3,945
	대전광역시	1기	77,502	3,446	26,628	-	47,428	8,573	400	3,652	-	4,521	7,866	172	1,520	-	6,174
		2기	81,505	3,764	30,719	-	47,022	7,017	343	3,163	-	3,511	6,547	97	3,007	-	3,443
	시계	1기	1,408,526	90,480	652,076	-	665,970	142,003	9,291	72,870	-	59,842	101,020	2,302	43,998	-	54,720
		2기	1,443,046	95,686	700,250	-	647,110	138,367	7,115	75,093	-	56,159	104,606	2,714	48,320	-	53,572
	경기도	1기	286,832	16,893	124,395	-	145,544	32,522	2,031	17,696	-	12,795	21,279	321	9,918	-	11,040
		2기	300,443	17,972	140,810	-	141,661	41,206	1,415	21,540	-	18,251	21,564	393	9,880	-	11,291
	강원도	1기	87,466	3,226	24,596	-	59,644	13,831	259	4,872	-	8,700	8,939	63	3,459	-	5,417
		2기	91,200	3,400	28,307	-	59,493	11,005	454	5,522	-	5,029	5,826	98	2,646	-	3,082
	충청북도	1기	85,059	4,091	23,844	-	57,124	7,020	294	2,967	-	3,759	1,891	70	927	-	894
		2기	90,028	4,255	27,422	-	58,351	7,138	212	2,989	-	3,937	3,502	70	1,228	-	2,204
	충청남도	1기	97,462	4,232	24,312	-	68,918	10,138	312	3,534	-	6,292	2,510	72	1,167	-	1,271
		2기	99,954	4,588	26,861	-	68,505	8,905	308	2,913	-	5,684	3,292	42	821	-	2,429
	전라북도	1기	103,518	4,308	28,477	-	70,733	8,356	435	2,691	-	5,230	4,859	38	1,321	-	3,500
		2기	105,141	4,605	31,669	-	68,867	8,059	265	3,079	-	4,715	4,523	121	1,574	-	2,828
	전라남도	1기	86,470	3,622	22,401	-	60,447	9,349	281	2,766	-	6,302	4,425	22	1,352	-	3,051
		2기	90,193	3,882	25,528	-	60,783	7,332	166	3,116	-	4,050	3,822	38	1,059	-	2,725
	경상북도	1기	124,110	5,839	39,128	-	79,143	13,779	483	4,832	-	8,464	7,867	134	2,813	-	4,920
		2기	128,952	6,291	43,449	-	79,212	13,317	618	5,283	-	7,416	6,435	133	2,233	-	4,069
	경상남도	1기	143,463	7,628	61,710	-	74,125	16,397	990	7,861	-	7,546	15,582	614	5,436	-	9,532
		2기	153,562	8,035	69,213	-	76,314	17,892	750	7,616	-	9,526	15,188	572	5,458	-	9,158
	제주도	1기	23,958	1,221	8,946	-	13,791	1,543	74	891	-	578	1,662	26	608	-	1,028
		2기	23,679	1,309	10,058	-	12,312	1,625	121	950	-	554	732	25	20	-	687
	도계	1기	1,038,338	51,060	357,809	-	629,469	112,935	5,159	48,110	-	59,666	69,014	1,360	27,001	-	40,653
		2기	1,083,152	54,337	403,317	-	625,498	116,479	4,309	53,008	-	59,162	64,884	1,492	24,919	-	38,473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6	합계	17	2,550,731	157,206	1,153,395	-	1,240,130	238,398	14,789	119,163	-	104,446	174,628	3,915	81,638	-	89,075
		27	2,580,113	169,512	926,841	273,197	1,210,563	247,671	14,052	102,483	47,395	83,741	171,722	4,095	68,831	21,020	77,776
	서울특별시	17	740,694	59,348	384,102	-	297,244	52,345	5,793	27,335	-	19,217	43,026	1,448	24,167	-	17,411
		27	773,465	63,289	306,450	89,928	313,798	63,769	5,066	29,607	14,682	14,414	52,477	1,299	24,866	9,702	16,610
	부산광역시	17	215,755	11,530	111,315	-	92,910	20,379	1,270	11,373	-	7,736	17,985	420	7,605	-	9,960
		27	222,279	12,333	87,436	32,127	90,383	22,919	1,171	7,206	5,322	9,220	12,853	454	5,203	1,272	5,924
	대구광역시	17	146,740	6,876	71,029	-	68,835	16,015	571	8,462	-	6,982	14,370	137	8,078	-	6,155
		27	148,257	7,172	60,399	13,619	67,067	19,000	611	8,960	1,846	7,583	11,701	288	5,640	648	5,125
	인천광역시	17	151,828	10,736	80,374	-	60,718	11,467	571	7,194	-	3,702	7,587	161	4,322	-	3,104
		27	100,705	7,650	42,596	10,670	39,789	10,445	546	4,643	1,998	3,258	8,978	192	4,621	856	3,309
	광주광역시	17	75,271	4,382	28,696	-	42,193	7,296	348	3,181	-	3,767	3,228	55	1,406	-	1,767
		27	75,712	4,831	25,006	5,475	40,400	6,080	335	1,834	928	2,983	4,728	146	1,652	294	2,636
	대전광역시	17	83,550	3,795	32,324	-	47,431	10,830	307	5,875	-	4,648	8,744	64	4,428	-	4,252
		27	80,885	4,521	26,009	9,009	41,346	8,294	338	2,492	2,801	2,663	7,196	36	3,375	507	3,278
	시계	17	1,413,838	96,667	707,840	-	609,331	118,332	8,860	63,420	-	46,052	94,940	2,285	50,006	-	42,649
		27	1,401,303	99,796	547,896	160,828	592,783	130,507	8,067	54,742	27,577	40,121	97,933	2,415	45,357	13,279	36,882
	경기도	17	304,815	19,312	151,499	-	134,004	37,081	2,658	20,020	-	14,403	29,021	669	14,741	-	13,611
		27	341,738	25,109	135,640	36,790	144,199	38,280	1,585	20,462	8,236	7,997	24,782	709	8,833	2,896	12,344
	강원도	17	93,623	3,531	31,367	-	58,725	11,345	265	4,267	-	6,813	4,975	25	1,660	-	3,290
		27	91,462	3,884	23,384	10,606	53,588	7,185	371	2,698	1,916	2,200	6,131	102	1,396	621	4,012
	충청북도	17	92,716	4,947	29,548	-	58,221	8,266	278	4,089	-	3,899	4,423	61	1,753	-	2,609
		27	88,992	4,811	24,625	6,188	53,368	4,680	308	1,735	401	2,236	3,167	35	900	221	2,011
	충청남도	17	103,740	4,340	29,964	-	69,436	11,809	298	5,159	-	6,352	4,224	95	1,180	-	2,949
		27	103,664	4,959	26,190	5,470	67,045	6,639	329	2,188	482	3,640	3,944	54	1,336	278	2,276
	전라북도	17	105,863	4,839	34,519	-	66,505	9,822	405	3,656	-	5,761	4,840	60	1,721	-	3,059
		27	105,440	5,155	29,051	7,185	64,049	10,906	457	3,585	991	5,873	6,421	142	2,302	144	3,833
	전라남도	17	103,923	5,134	29,480	-	69,309	10,232	303	4,676	-	5,253	6,459	112	2,359	-	3,988
		27	102,538	5,604	24,964	5,682	66,288	10,498	767	2,544	1,124	6,063	5,905	29	1,624	526	3,726
	경상북도	17	132,111	6,531	45,650	-	79,930	13,037	629	5,260	-	7,148	7,055	164	2,530	-	4,361
		27	135,481	7,211	38,429	12,292	77,549	12,978	590	6,076	1,722	4,590	7,656	33	2,426	1,557	3,640
	경상남도	17	177,188	10,554	83,442	-	83,192	17,403	1,079	8,053	-	8,271	16,382	427	4,919	-	11,036
		27	184,089	11,457	68,446	24,323	79,863	23,814	1,544	7,244	4,528	10,498	14,908	537	4,431	1,382	8,558
	제주도	17	22,914	1,351	10,086	-	11,477	1,071	14	563	-	494	2,309	17	769	-	1,523
		27	25,406	1,526	8,216	3,833	11,831	2,184	34	1,209	418	523	875	39	226	116	494
	도계	17	1,136,893	60,539	445,555	-	630,799	120,066	5,929	55,743	-	58,394	79,688	1,630	31,632	-	46,426
		27	1,178,810	69,716	378,945	112,369	617,780	117,164	5,985	47,741	19,818	43,620	73,789	1,680	23,474	7,741	40,894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7	합계	1기	2,672,987	180,758	959,250	372,542	1,160,437	336,908	16,099	110,276	96,100	114,433	189,404	6,009	69,731	28,876	84,788
		2기	2,930,116	192,333	1,004,852	490,034	1,242,897	369,412	18,398	126,460	109,462	115,092	151,269	3,803	54,280	32,014	61,172
	서울특별시	1기	762,020	67,031	295,800	106,662	292,527	77,412	4,553	26,506	26,254	20,099	53,534	2,413	26,547	9,774	14,800
		2기	802,574	69,639	303,602	123,400	305,933	103,595	5,361	37,610	28,319	32,305	36,527	1,109	15,468	7,516	12,434
	부산광역시	1기	232,866	12,997	89,040	39,599	91,230	28,016	1,244	9,042	7,997	9,733	18,730	726	6,103	3,083	8,818
		2기	254,474	13,731	92,986	53,480	94,277	26,619	1,505	9,734	9,623	5,757	15,002	408	5,555	4,013	5,026
	대구광역시	1기	151,098	7,580	62,191	22,996	58,331	16,530	763	6,759	4,543	4,465	10,625	345	3,901	1,671	4,708
		2기	163,928	7,942	63,807	32,494	59,685	18,991	693	6,613	6,932	4,753	8,822	178	3,674	1,798	3,172
	인천광역시	1기	110,645	8,249	44,815	15,092	42,489	19,512	809	6,596	5,070	7,037	9,758	217	4,475	1,479	3,587
		2기	122,546	8,626	46,335	21,013	46,572	19,710	900	6,131	6,973	5,706	7,799	140	3,053	1,635	2,971
	광주광역시	1기	78,914	5,066	25,770	8,433	39,645	8,489	539	2,773	1,859	3,318	5,162	159	1,004	281	3,718
		2기	85,394	5,555	27,244	11,027	41,568	10,430	750	4,050	2,510	3,120	4,945	92	1,760	843	2,250
	대전광역시	1기	80,258	4,724	25,993	12,338	37,203	10,190	519	3,955	3,336	2,380	4,756	150	797	1,113	2,696
		2기	85,276	4,955	27,136	14,942	38,243	10,395	553	3,019	3,794	3,029	4,272	82	1,230	808	2,152
	울산광역시	1기	46,329	2,936	17,422	9,932	16,039	7,330	247	1,546	2,552	2,985	4,395	94	1,365	600	2,336
		2기	54,557	3,212	18,545	15,214	17,586	7,237	349	2,214	3,312	1,362	3,400	133	1,175	1,109	983
	시계	1기	1,462,130	108,583	561,031	215,052	577,464	167,479	8,674	57,177	51,611	50,017	106,960	4,104	44,192	18,001	40,663
		2기	1,568,749	113,660	579,655	271,570	603,864	196,977	10,111	69,371	61,463	56,032	80,767	2,142	31,915	17,722	28,988
	경기도	1기	404,290	27,508	159,914	60,158	156,710	72,301	2,766	23,796	22,076	23,663	33,397	893	12,000	4,171	16,333
		2기	457,504	29,608	170,378	82,056	175,462	72,442	3,022	24,793	19,615	25,012	26,108	716	9,619	6,102	9,671
	강원도	1기	89,899	3,958	24,054	13,766	48,121	9,615	529	2,811	2,951	3,324	4,910	105	1,194	662	2,949
		2기	100,792	4,515	24,943	18,008	53,326	10,851	537	3,656	3,202	3,456	4,281	101	912	902	2,366
	충청북도	1기	81,739	5,067	25,482	9,040	42,150	11,303	622	2,707	2,635	5,339	4,991	167	1,485	512	2,827
		2기	92,954	5,394	26,927	13,190	47,443	10,721	403	3,373	3,713	3,232	4,950	96	1,616	957	2,281
	충청남도	1기	100,743	5,388	28,182	7,738	59,435	13,757	682	5,499	2,165	5,411	5,100	103	1,674	403	2,920
		2기	108,457	5,887	30,061	9,371	63,138	10,325	597	3,986	1,905	3,837	4,439	96	1,195	406	2,742
	전라북도	1기	106,211	5,534	29,980	9,674	61,023	12,764	480	4,356	2,770	5,158	8,015	178	2,160	934	4,743
		2기	118,804	6,020	32,087	13,059	67,638	13,490	835	4,626	2,947	5,082	6,798	111	2,027	984	3,676
	전라남도	1기	106,528	6,136	26,651	7,755	65,986	9,632	481	3,072	1,703	4,376	5,587	163	1,046	636	3,742
		2기	124,451	7,017	30,690	10,626	76,118	13,621	970	4,500	2,405	5,746	7,029	125	1,956	808	4,140
	경상북도	1기	136,137	7,655	40,670	18,365	69,447	13,544	861	4,697	3,673	4,313	6,444	32	1,953	1,157	3,302
		2기	143,696	8,073	42,095	27,487	66,041	15,738	733	4,625	5,814	4,566	5,559	163	1,376	1,205	2,815
	경상남도	1기	155,022	9,242	54,657	23,155	67,968	24,582	770	5,848	5,474	12,490	12,403	247	3,614	2,080	6,462
		2기	179,321	10,382	59,112	33,557	76,270	20,842	1,063	6,565	6,204	7,010	9,032	222	3,068	1,951	3,791
	제주도	1기	30,288	1,687	8,629	7,839	12,133	1,931	234	313	1,042	342	1,597	17	413	320	847
		2기	35,388	1,777	8,904	11,110	13,597	4,405	127	965	2,194	1,119	2,306	31	596	977	702
	도계	1기	1,210,857	72,175	398,219	157,490	582,973	169,429	7,425	53,099	44,489	64,416	82,444	1,905	25,539	10,875	44,125
		2기	1,361,367	78,673	425,197	218,464	639,033	172,435	8,287	57,089	47,999	59,060	70,502	1,661	22,365	14,292	32,184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8	합계	1기	2,852,249	189,020	976,553	521,047	1,165,629	274,514	14,623	98,742	90,838	70,311	320,716	9,993	125,595	81,716	103,412
		2기	2,855,369	197,185	979,285	546,161	1,132,738	306,366	18,016	108,340	103,222	76,788	325,554	10,559	126,712	85,111	103,172
	서울특별시	1기	785,852	68,393	295,731	129,284	292,444	71,025	5,904	30,664	20,163	14,294	84,190	3,318	37,117	20,157	23,598
		2기	766,320	70,635	290,736	127,279	277,670	75,242	6,343	30,964	22,436	15,499	81,705	3,378	35,526	19,891	22,910
	부산광역시	1기	245,056	13,233	89,877	57,326	84,620	22,869	1,192	9,066	8,381	4,230	29,724	986	11,925	8,786	8,027
		2기	246,809	13,764	86,569	61,796	84,680	26,659	1,447	9,453	10,204	5,555	30,046	983	11,615	9,672	7,776
	대구광역시	1기	157,971	7,690	62,173	36,410	51,698	15,110	555	5,539	6,478	2,538	24,195	629	9,204	6,904	7,458
		2기	160,334	7,987	62,519	40,907	48,921	16,081	780	5,962	6,534	2,805	17,386	358	8,282	5,556	3,190
	인천광역시	1기	116,066	8,354	44,074	21,519	42,119	10,312	257	3,875	4,748	1,432	20,719	573	7,184	7,021	5,941
		2기	117,697	8,593	44,018	24,284	40,802	14,027	819	5,112	5,251	2,845	12,260	498	5,410	3,275	3,077
	광주광역시	1기	85,413	4,775	26,131	13,483	41,024	9,110	393	3,010	2,770	2,937	10,525	161	3,735	2,321	4,308
		2기	73,307	4,755	24,236	11,825	32,491	8,311	483	2,844	2,736	2,248	8,639	293	3,306	1,437	3,603
	대전광역시	1기	82,746	4,655	25,812	15,106	37,173	8,727	423	2,955	3,604	1,745	9,304	270	3,337	2,437	3,260
		2기	90,184	5,170	26,950	13,716	44,348	6,616	328	1,909	2,756	1,623	13,643	389	4,759	3,140	5,355
	울산광역시	1기	53,163	3,062	17,603	16,589	15,909	7,251	401	2,789	2,762	1,299	6,028	172	1,971	2,549	1,336
		2기	51,775	3,191	17,047	17,333	14,204	6,696	445	2,413	3,105	733	5,431	170	1,826	2,486	949
	시계	1기	1,526,267	110,162	561,401	289,717	564,987	144,404	9,125	57,898	48,906	28,475	184,685	6,109	74,473	50,175	53,928
		2기	1,506,426	114,095	552,075	297,140	543,116	153,632	10,645	58,657	53,022	31,308	169,110	6,069	70,724	45,457	46,860
	경기도	1기	442,908	29,750	166,509	84,563	162,086	41,492	1,410	15,620	16,265	8,197	43,669	1,694	20,301	10,492	11,182
		2기	463,681	31,259	171,365	89,024	172,033	55,604	3,061	21,232	17,114	14,197	44,908	1,486	18,185	12,167	13,070
	강원도	1기	95,436	4,593	24,199	18,730	47,914	9,283	346	2,545	3,569	2,823	8,351	170	2,095	2,276	3,810
		2기	97,637	4,779	24,662	20,572	47,624	9,955	372	2,382	4,298	2,903	8,922	256	2,782	2,698	3,186
	충청북도	1기	88,867	5,400	26,087	12,922	44,458	9,903	531	3,085	3,283	3,004	9,110	200	3,334	1,715	3,861
		2기	95,171	5,768	26,590	13,613	49,200	10,317	500	3,035	3,803	2,979	13,381	438	4,412	2,322	6,209
	충청남도	1기	106,415	6,082	30,349	9,231	60,753	10,293	481	3,247	1,690	4,875	6,664	198	2,516	897	3,053
		2기	109,473	6,299	30,801	9,169	63,204	14,424	703	4,639	3,385	5,697	11,673	419	4,012	710	6,532
	전라북도	1기	117,689	5,898	31,414	13,625	66,752	11,700	513	3,624	2,795	4,768	14,052	207	4,494	2,337	7,014
		2기	105,135	6,258	30,996	13,393	54,488	11,787	578	3,331	3,436	4,442	11,970	340	4,287	1,982	5,361
	전라남도	1기	120,365	7,370	29,534	10,934	72,527	11,426	606	3,402	2,240	5,178	13,917	247	4,220	1,873	7,577
		2기	107,172	7,930	29,248	10,129	59,865	11,215	634	3,621	1,881	5,079	12,535	314	4,503	1,754	5,964
	경상북도	1기	142,598	8,152	41,530	30,396	62,520	13,407	683	2,522	3,030	7,172	11,972	275	3,712	3,367	4,618
		2기	147,302	8,612	43,994	35,583	59,113	15,625	631	4,834	6,363	3,797	18,724	426	6,104	5,943	6,251
	경상남도	1기	176,700	9,838	56,975	38,495	71,392	18,491	836	6,000	6,641	5,014	22,883	638	8,728	6,275	7,242
		2기	189,089	10,352	61,304	45,075	72,358	19,923	784	5,855	7,673	5,611	27,666	612	9,557	9,054	8,443
	제주도	1기	35,004	1,775	8,555	12,434	12,240	4,115	92	799	2,419	805	5,413	255	1,722	2,309	1,127
		2기	34,283	1,833	8,250	12,463	11,737	3,884	108	754	2,247	775	6,665	199	2,146	3,024	1,296
	도계	1기	1,325,982	78,858	415,152	231,330	600,642	130,110	5,498	40,844	41,932	41,836	136,031	3,884	51,122	31,541	49,484
		2기	1,348,943	83,090	427,210	249,021	589,622	152,734	7,371	49,683	50,200	45,480	156,444	4,490	55,988	39,654	56,312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9	합계	1기	2,905,482	211,709	1,009,578	587,026	1,097,169	485,327	28,070	166,047	137,778	153,432	335,905	12,798	113,777	95,383	114,547
		2기	2,998,956	232,474	1,059,109	586,800	1,120,573	505,153	31,957	179,833	144,900	148,463	299,954	10,549	104,948	92,595	91,862
	서울특별시	1기	787,090	75,924	303,520	138,728	268,918	119,309	10,156	49,999	31,931	27,223	84,031	4,351	33,773	21,258	24,649
		2기	817,029	84,135	315,462	142,980	274,452	123,665	12,486	50,814	30,621	29,744	75,915	3,591	30,732	21,543	20,049
	부산광역시	1기	250,972	14,390	88,661	66,532	81,389	39,124	1,794	13,515	14,800	9,015	27,396	879	9,631	10,341	6,545
		2기	252,500	15,234	92,146	68,146	76,974	38,089	1,942	14,127	14,581	7,439	24,384	780	8,628	9,929	5,047
	대구광역시	1기	159,921	8,329	63,176	44,004	44,412	25,769	945	9,183	11,331	4,310	19,209	473	6,745	7,702	4,289
		2기	164,531	9,108	66,005	44,975	44,443	28,029	1,239	10,756	11,490	4,544	16,457	371	6,069	7,248	2,769
	인천광역시	1기	121,257	9,314	46,032	26,825	39,086	23,625	1,444	8,927	7,604	5,650	16,075	666	6,007	4,829	4,573
		2기	150,975	12,526	59,977	30,082	48,390	27,539	1,449	10,445	8,114	7,531	14,223	495	5,312	4,799	3,617
	광주광역시	1기	80,304	5,842	24,149	10,568	39,745	13,746	766	4,550	4,509	3,921	10,242	405	3,145	2,860	3,832
		2기	80,587	6,292	26,848	15,705	31,742	16,649	898	5,688	4,208	5,875	9,725	319	3,223	3,033	3,150
	대전광역시	1기	86,684	5,585	27,780	14,440	38,879	15,946	743	4,931	4,329	5,943	12,023	309	3,469	2,859	5,386
		2기	95,726	6,101	29,218	13,245	47,162	17,473	851	5,155	4,114	7,353	10,687	299	3,150	2,656	4,582
	울산광역시	1기	53,651	3,445	17,938	18,922	13,346	9,723	462	3,088	1,902	1,271	6,838	178	2,050	3,239	1,371
		2기	54,590	3,730	18,863	18,474	13,523	10,102	492	3,245	5,269	1,096	6,376	178	2,021	3,312	865
	시계	1기	1,539,879	122,829	571,256	320,019	525,775	247,242	16,310	94,193	76,406	57,333	175,814	7,261	64,820	53,088	50,645
		2기	1,615,938	137,126	608,519	333,607	536,686	261,546	19,357	100,230	78,397	63,582	157,767	6,033	59,135	52,520	40,079
	경기도	1기	467,244	34,119	177,066	90,903	165,156	84,374	4,749	30,884	19,306	29,435	54,606	2,046	19,063	15,280	18,217
		2기	487,554	35,951	184,641	88,900	178,062	96,275	5,349	36,358	23,048	31,520	50,864	1,707	18,469	14,573	16,115
	강원도	1기	97,315	5,165	24,975	21,472	45,703	16,876	694	4,020	4,248	7,914	11,829	316	2,935	3,488	5,090
		2기	99,761	5,572	25,604	20,776	47,809	16,300	747	3,847	5,957	5,749	10,987	257	2,955	3,591	4,184
	충청북도	1기	98,485	6,160	27,544	14,537	50,244	16,593	853	4,441	3,166	8,133	11,364	404	3,196	2,304	5,460
		2기	95,713	6,680	27,155	10,044	51,834	15,457	854	4,614	4,107	5,882	10,022	378	2,971	1,951	4,722
	충청남도	1기	113,837	6,528	31,445	9,666	66,198	17,828	876	5,244	2,111	9,597	13,920	357	3,970	1,537	8,056
		2기	109,548	7,179	31,758	8,150	62,461	17,629	920	5,192	2,114	9,403	10,919	425	3,425	1,188	5,881
	전라북도	1기	107,849	6,682	29,477	14,031	57,659	20,097	779	5,259	3,489	10,570	13,769	402	3,865	2,467	7,035
		2기	107,286	7,069	32,380	12,006	55,831	20,323	907	5,922	3,689	9,805	11,916	334	3,568	2,450	5,564
	전라남도	1기	100,898	7,804	32,241	15,854	44,999	18,138	998	4,426	2,424	10,290	12,749	362	3,369	1,643	7,375
		2기	103,466	8,601	29,598	10,247	55,020	17,347	958	5,122	2,517	8,750	10,943	381	3,188	1,583	5,791
	경상북도	1기	153,040	9,334	45,494	39,002	59,210	27,307	1,219	7,245	10,046	8,797	17,407	416	5,250	6,406	5,335
		2기	150,773	10,099	47,134	40,346	53,194	24,650	1,219	7,602	10,787	5,042	15,311	488	4,708	6,143	3,972
	경상남도	1기	192,127	11,159	61,694	48,117	71,157	30,772	1,415	9,017	10,570	9,770	20,425	533	6,527	6,877	6,488
		2기	192,894	12,112	63,540	48,893	68,349	29,469	1,410	9,660	10,883	7,516	17,550	469	5,774	6,373	4,934
	제주도	1기	34,808	1,929	8,386	13,425	11,068	6,100	177	1,318	3,012	1,593	4,022	101	782	2,293	846
		2기	36,023	2,085	8,780	13,831	11,327	6,157	236	1,306	3,401	1,214	3,675	77	755	2,223	620
	도계	1기	1,365,603	88,880	438,322	267,007	571,394	238,085	11,760	71,854	58,372	96,099	160,091	4,937	48,957	42,295	63,902
		2기	1,383,018	95,348	450,590	253,193	583,887	243,607	12,600	79,623	66,503	84,881	142,187	4,516	45,813	40,075	51,783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2000	합계	1기	3,231,274	255,840	1,136,159	614,219	1,225,056	531,571	39,042	259,147	222,715	10,667	395,388	14,114	145,926	145,866	89,482
		2기	3,390,772	278,657	1,442,987	1,669,128	-	483,853	33,978	211,703	238,172	-	319,699	13,679	148,507	157,513	-
	서울특별시	1기	849,665	95,100	329,548	142,695	282,322	133,160	17,450	71,505	42,224	1,981	97,552	5,108	42,983	30,484	18,977
		2기	885,376	104,309	417,632	363,435		112,473	13,448	57,684	41,341		78,426	5,042	42,781	30,603	
	부산광역시	1기	265,292	16,193	98,168	71,432	79,499	40,215	2,110	22,306	15,288	511	30,985	939	12,041	13,502	4,503
		2기	270,132	17,301	129,630	123,201		37,511	1,963	18,977	16,571		25,406	832	14,003	10,571	
	대구광역시	1기	176,418	9,772	70,647	49,271	46,728	29,114	1,221	16,371	11,245	277	22,287	466	8,848	10,307	2,666
		2기	192,899	10,478	93,392	89,029		29,423	1,143	12,599	15,681		17,607	572	8,889	8,146	
	인천광역시	1기	164,468	13,425	65,237	33,027	52,779	28,056	1,577	15,088	10,938	453	19,144	676	7,602	6,972	3,894
		2기	171,794	14,352	82,540	74,902		26,767	1,440	12,758	12,569		18,699	909	9,413	8,377	
	광주광역시	1기	85,845	6,761	28,466	15,807	34,811	17,727	998	8,491	7,701	537	13,354	432	4,813	4,755	3,354
		2기	91,245	7,643	39,128	44,474		14,664	890	6,814	6,960		9,241	293	4,816	4,132	
	대전광역시	1기	105,223	6,803	32,533	12,763	53,124	17,846	1,000	8,288	7,957	601	15,620	451	5,053	5,111	5,005
		2기	117,416	7,562	44,145	65,709		16,357	973	6,639	8,745		11,167	483	4,706	5,978	
	울산광역시	1기	59,054	4,031	20,310	21,530	13,183	10,450	505	5,795	4,089	61	8,101	266	2,788	4,257	790
		2기	60,061	4,314	27,325	28,422		10,669	494	4,419	5,756		6,031	296	2,897	2,838	
	시계	1기	1,705,965	152,085	644,909	346,525	562,446	276,568	24,861	147,844	99,442	4,421	207,043	8,338	84,128	75,388	39,189
		2기	1,788,923	165,959	833,792	789,172	-	247,864	20,351	119,890	107,623	-	166,577	8,427	87,505	70,645	-
	경기도	1기	537,277	39,621	203,906	91,740	202,010	101,336	6,375	49,754	43,018	2,189	63,993	2,427	24,666	20,286	16,614
		2기	558,724	43,737	253,791	261,196		91,516	5,891	41,937	43,688		49,865	1,722	22,949	25,194	
	강원도	1기	105,319	5,867	27,042	20,651	51,759	16,895	773	5,948	9,715	459	13,764	372	3,685	5,579	4,128
		2기	107,194	6,405	33,827	66,962		16,530	779	4,774	10,977		13,059	507	3,995	8,557	
	충청북도	1기	104,438	7,410	29,565	10,199	57,264	16,590	899	6,422	8,810	459	14,394	441	4,296	4,817	4,840
		2기	117,793	8,121	37,511	72,161		15,328	908	5,164	9,256		9,736	369	3,543	5,824	
	충청남도	1기	112,979	7,729	33,482	8,120	63,648	17,928	1,049	6,676	9,694	509	15,968	432	4,396	6,266	4,874
		2기	131,529	8,731	41,030	81,768		16,734	967	5,456	10,311		12,037	454	3,842	7,741	
	전라북도	1기	125,584	7,659	35,954	12,335	69,636	19,985	939	7,567	10,634	845	16,649	422	4,692	5,665	5,870
		2기	126,453	8,227	41,064	77,162		18,157	1,004	6,554	10,599		13,412	436	4,591	8,385	
	전라남도	1기	128,115	9,288	32,652	11,622	74,553	18,967	1,032	6,716	10,440	779	14,425	437	4,300	4,144	5,544
		2기	128,047	9,465	39,074	79,508		16,170	990	5,538	9,642		11,843	444	3,916	7,483	
	경상북도	1기	175,372	10,929	52,804	50,972	60,667	26,217	1,253	12,022	12,684	258	20,434	438	6,555	10,071	3,370
		2기	184,917	11,628	68,166	105,123		26,691	1,323	9,040	16,328		18,847	588	8,237	10,022	
	경상남도	1기	199,423	13,017	66,616	49,307	70,483	30,588	1,599	13,769	14,656	564	23,536	713	7,970	10,565	4,288
		2기	209,190	13,953	81,660	113,577		28,963	1,458	11,302	16,203		20,709	724	8,432	11,553	
	제주도	1기	36,802	2,235	9,229	12,748	12,590	6,497	262	2,429	3,622	184	5,182	94	1,238	3,085	765
		2기	38,002	2,431	13,072	22,499		5,900	307	2,048	3,545		3,614	8	1,497	2,109	
	도계	1기	1,525,309	103,755	491,250	267,694	662,610	255,003	14,181	111,303	123,273	6,246	188,345	5,776	61,798	70,478	50,293
		2기	1,601,849	112,698	609,195	879,956	-	235,989	13,627	91,813	130,549	-	153,122	5,252	61,002	86,868	-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2001	합계	1기	3,574,467	297,790	1,469,009	1,807,668		513,890	36,337	231,032	246,521		376,324	13,939	164,635	197,750	
		2기	3,709,035	321,204	1,573,217	1,814,614		558,599	36,508	245,873	276,218		333,256	11,209	143,892	178,155	
	서울특별시	1기	909,289	109,951	418,050	381,288		118,297	13,590	61,752	42,955		91,411	5,324	48,254	37,833	
		2기	946,001	117,208	444,139	384,654		132,908	13,876	68,139	50,893		80,222	3,958	41,185	35,079	
	부산광역시	1기	300,159	18,503	135,100	146,556		38,068	2,111	19,315	16,642		29,240	1,017	14,925	13,298	
		2기	306,198	20,425	137,405	148,368		38,642	2,174	17,626	18,842		23,464	661	11,200	11,603	
	대구광역시	1기	209,895	11,212	95,834	102,849		26,758	1,118	12,626	13,014		19,838	556	9,310	9,972	
		2기	197,433	11,855	94,213	91,365		28,490	1,223	13,397	13,870		17,132	436	7,582	9,114	
	인천광역시	1기	178,584	15,320	82,802	80,462		28,434	1,658	13,613	13,163		20,176	641	9,390	10,145	
		2기	194,276	16,649	91,020	86,607		30,286	1,496	14,124	14,666		19,454	591	8,813	10,050	
	광주광역시	1기	93,129	7,792	38,765	46,572		16,232	913	7,121	8,198		11,612	408	5,151	6,053	
		2기	104,137	8,579	43,593	51,965		18,147	1,028	7,992	9,127		11,874	368	5,036	6,470	
	대전광역시	1기	118,312	8,308	45,312	64,692		17,451	999	7,340	9,112		12,668	336	5,160	7,172	
		2기	124,523	8,768	47,175	68,580		19,096	1,076	7,447	10,573		12,115	366	4,904	6,845	
	울산광역시	1기	72,997	4,765	29,399	38,833		11,449	539	5,017	5,893		7,959	231	3,464	4,264	
		2기	75,627	5,009	30,823	39,795		11,995	618	4,824	6,553		7,434	199	3,272	3,963	
	시계	1기	1,882,365	175,851	845,262	861,252		256,689	20,928	126,784	108,977		192,904	8,513	95,654	88,737	
		2기	1,948,195	188,493	888,368	871,334		279,564	21,491	133,549	124,524		171,695	6,579	81,992	83,124	
	경기도	1기	591,655	47,077	262,803	281,775		103,740	6,469	49,745	47,526		68,259	2,227	30,321	35,711	
		2기	632,657	52,247	302,360	278,050		120,036	6,614	60,339	53,083		60,612	1,750	27,263	31,599	
	강원도	1기	110,703	6,781	33,260	70,662		17,416	939	5,405	11,072		12,979	318	3,761	8,900	
		2기	116,243	7,496	36,260	72,487		18,257	858	5,003	12,396		12,158	349	3,663	8,146	
	충청북도	1기	122,977	8,720	38,833	75,424		16,353	1,021	5,757	9,575		13,088	385	4,102	8,601	
		2기	120,309	9,395	40,179	70,735		16,404	923	5,321	10,160		10,794	363	3,652	6,779	
	충청남도	1기	139,855	9,603	42,743	87,509		18,470	1,226	6,344	10,900		14,068	442	4,645	8,981	
		2기	138,461	10,184	43,938	84,339		18,873	1,157	5,783	11,933		10,661	328	3,180	7,153	
	전라북도	1기	130,298	8,739	42,559	79,000		19,193	1,174	7,309	10,710		14,435	429	4,904	9,102	
		2기	137,151	9,820	46,678	80,653		20,109	1,085	7,168	11,856		11,705	267	3,864	7,574	
	전라남도	1기	130,011	10,202	39,072	80,737		16,859	1,195	5,758	9,906		12,707	415	4,184	8,108	
		2기	138,387	11,019	43,735	83,633		17,623	1,135	5,549	10,939		11,593	391	3,907	7,295	
	경상북도	1기	196,897	12,503	66,983	117,411		26,340	1,386	9,663	15,291		19,773	523	6,894	12,356	
		2기	201,112	13,736	68,971	118,405		27,558	1,367	8,869	17,322		18,067	511	6,687	10,869	
	경상남도	1기	223,419	15,492	82,965	124,962		32,309	1,671	12,041	18,597		23,144	592	8,800	13,752	
		2기	231,110	15,779	88,189	127,142		33,327	1,615	12,309	19,403		21,071	584	8,234	12,253	
	제주도	1기	46,287	2,822	14,529	28,936		6,521	328	2,226	3,967		4,967	95	1,370	3,502	
		2기	45,410	3,035	14,539	27,836		6,848	263	1,983	4,602		4,900	87	1,450	3,363	
	도계	1기	1,692,102	121,939	623,747	946,416		257,201	15,409	104,248	137,544		183,420	5,426	68,981	109,013	
		2기	1,760,840	132,711	684,849	943,280		279,035	15,017	112,324	151,694		161,561	4,630	61,900	95,031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2002	합계	1기	3,833,195	329,233	1,665,208	1,838,754		608,909	38,624	300,458	269,827		420,148	16,934	184,433	218,781	
		2기	3,963,454	345,292	1,774,268	1,843,894		630,461	33,839	281,010	315,612		380,113	15,018	168,935	196,160	
	서울특별시	1기	975,704	120,291	468,625	386,788		149,532	14,880	84,444	50,208		100,859	6,264	51,491	43,104	
		2기	1,013,969	125,026	500,799	388,144		150,088	12,809	81,188	56,091		88,768	5,853	46,125	36,790	
	부산광역시	1기	316,219	20,947	141,394	153,878		41,298	2,429	20,608	18,261		31,314	1,211	14,785	15,318	
		2기	317,842	21,719	146,180	149,943		38,308	2,011	19,307	16,990		27,347	879	13,650	12,818	
	대구광역시	1기	198,564	11,984	97,140	89,440		29,585	1,306	13,755	14,524		22,347	661	10,268	11,418	
		2기	196,653	11,371	97,625	87,657		28,240	1,158	12,860	14,222		19,956	533	9,053	10,370	
	인천광역시	1기	207,779	17,022	98,358	92,399		33,858	1,769	17,675	14,414		22,559	760	10,342	11,457	
		2기	211,508	17,824	106,114	87,570		36,203	1,572	17,331	17,300		23,618	904	11,434	11,280	
	광주광역시	1기	100,959	8,944	42,361	49,654		17,978	1,057	8,238	8,683		13,902	473	6,512	6,917	
		2기	109,719	9,396	44,919	55,404		19,964	1,002	7,676	11,286		14,620	679	7,150	6,791	
	대전광역시	1기	125,084	8,973	48,950	67,161		19,683	1,044	8,630	10,009		15,176	498	6,086	8,592	
		2기	135,777	9,279	50,679	75,819		23,505	976	7,486	15,043		15,846	702	6,682	8,462	
	울산광역시	1기	76,689	5,069	30,347	41,273		11,645	485	5,319	5,841		9,441	276	4,389	4,776	
		2기	78,412	5,282	31,309	41,821		13,544	477	4,974	8,093		9,975	319	4,352	5,304	
	시계	1기	2,000,998	193,230	927,175	880,593		303,579	22,970	158,669	121,940		215,598	10,143	103,873	101,582	
		2기	2,063,880	199,897	977,625	886,358		309,852	20,005	150,822	139,025		200,130	9,869	98,446	91,815	
	경기도	1기	683,463	54,905	339,831	288,727		139,785	7,159	78,996	53,630		79,373	2,674	36,766	39,933	
		2기	728,964	58,745	378,238	291,981		143,413	6,396	73,621	63,396		66,506	2,061	32,099	32,346	
	강원도	1기	122,897	7,709	38,235	76,953		18,450	893	6,004	11,553		14,246	416	4,311	9,519	
		2기	120,562	8,419	40,043	72,100		18,870	833	5,437	12,600		15,884	492	4,819	10,573	
	충청북도	1기	125,088	9,073	42,241	73,774		18,091	961	7,046	10,084		14,218	535	4,802	8,881	
		2기	130,471	9,646	43,955	76,870		19,505	916	6,172	12,417		11,091	328	3,633	7,130	
	충청남도	1기	131,411	10,290	44,862	76,259		20,019	1,127	7,369	11,523		14,833	551	4,966	9,316	
		2기	139,648	10,724	47,844	81,080		23,259	997	6,413	15,849		12,461	327	3,883	8,251	
	전라북도	1기	140,093	9,900	48,199	81,994		20,453	1,053	7,849	11,551		15,795	491	5,803	9,501	
		2기	142,767	10,257	49,981	82,529		23,671	851	6,462	16,358		12,496	359	4,505	7,632	
	전라남도	1기	144,101	11,068	46,721	86,312		17,932	931	6,608	10,393		15,044	543	4,816	9,685	
		2기	148,731	11,898	48,776	88,057		21,094	872	5,870	14,352		14,184	271	4,167	9,746	
	경상북도	1기	193,501	13,724	69,936	109,841		28,537	1,424	10,979	16,134		20,959	635	7,603	12,721	
		2기	192,193	15,550	74,531	102,112		29,185	1,154	9,963	18,068		19,702	495	7,097	12,110	
	경상남도	1기	243,124	16,309	92,718	134,097		34,318	1,798	14,192	18,328		24,748	796	9,616	14,336	
		2기	246,813	17,109	97,107	132,597		33,596	1,541	14,022	18,033		20,636	658	7,654	12,324	
	제주도	1기	48,519	3,025	15,290	30,204		7,745	308	2,746	4,691		5,334	150	1,877	3,307	
		2기	49,425	3,047	16,168	30,210		8,016	274	2,228	5,514		7,023	158	2,632	4,233	
	도계	1기	1,832,197	136,003	738,033	958,161		305,330	15,654	141,789	147,887		204,550	6,791	80,560	117,199	
		2기	1,899,574	145,395	796,643	957,536		320,609	13,834	130,188	176,587		179,983	5,149	70,489	104,345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2003	합계	1기	3,949,410	352,224	1,801,107	1,796,079		542,494	33,367	259,436	249,691		436,589	19,587	205,396	211,606	
		2기	3,994,665	359,154	1,861,707	1,773,804		464,285	27,820	239,686	196,779		420,444	21,708	204,094	194,642	
	서울특별시	1기	1,021,808	126,310	505,784	389,714		126,352	12,968	64,717	48,667		94,856	8,367	52,027	34,462	
		2기	1,036,044	128,296	521,266	386,482		104,895	11,281	58,356	35,258		90,579	8,784	54,107	27,688	
	부산광역시	1기	315,246	22,587	144,281	148,378		35,235	1,896	19,383	13,956		33,517	1,238	17,001	15,278	
		2기	309,264	21,114	149,696	138,454		30,894	1,587	16,653	12,654		31,879	1,570	16,850	13,459	
	대구광역시	1기	196,139	11,458	96,125	88,556		28,369	1,107	13,254	14,008		24,357	759	11,897	11,701	
		2기	197,831	12,015	97,558	88,258		23,049	841	11,567	10,641		24,508	879	11,781	11,848	
	인천광역시	1기	228,878	20,110	117,610	91,158		30,900	1,309	15,200	14,391		23,666	767	12,038	10,861	
		2기	231,302	20,588	126,589	84,125		24,823	1,111	13,245	10,467		24,115	1,017	11,467	11,631	
	광주광역시	1기	100,420	9,123	43,598	47,699		16,678	984	7,371	8,323		14,735	465	7,006	7,264	
		2기	103,628	9,405	44,099	50,124		14,187	745	6,855	6,587		13,084	696	6,272	6,116	
	대전광역시	1기	130,792	13,314	50,255	67,223		18,065	838	8,082	9,145		16,114	578	6,977	8,559	
		2기	136,192	9,699	53,269	73,224		15,783	644	7,082	8,057		15,984	629	6,792	8,563	
	울산광역시	1기	78,396	5,700	34,222	38,474		12,172	490	5,317	6,365		10,169	286	4,202	5,681	
		2기	74,254	5,897	33,691	34,666		10,177	349	4,632	5,196		9,802	271	4,240	5,291	
	시계	1기	2,071,679	208,602	991,875	871,202		267,771	19,592	133,324	114,855		217,414	12,460	111,148	93,806	
		2기	2,088,515	207,014	1,026,168	855,333		223,808	16,558	118,390	88,860		209,951	13,846	111,509	84,596	
	경기도	1기	711,953	59,458	378,954	273,541		116,086	6,232	63,587	46,267		82,519	3,236	43,332	35,951	
		2기	728,623	60,458	389,569	278,596		109,100	5,499	66,005	37,596		86,694	3,427	44,522	38,745	
	강원도	1기	127,866	8,569	43,598	75,699		17,068	705	6,132	10,231		16,417	305	4,975	11,137	
		2기	139,006	10,247	49,170	79,589		15,573	587	5,263	9,723		14,060	432	4,652	8,976	
	충청북도	1기	132,748	13,448	44,148	75,152		16,101	878	6,529	8,694		15,470	447	5,912	9,111	
		2기	125,736	9,621	44,559	71,556		13,698	614	6,222	6,862		12,633	485	5,309	6,839	
	충청남도	1기	131,678	3,259	47,853	80,566		19,833	915	8,236	10,682		17,500	519	5,813	11,168	
		2기	141,713	11,311	50,795	79,607		17,761	771	6,931	10,059		15,820	555	5,630	9,635	
	전라북도	1기	138,464	10,159	49,771	78,534		19,320	1,055	7,349	10,916		17,181	547	6,908	9,726	
		2기	132,419	10,698	50,698	71,023		16,239	668	6,379	9,192		15,196	580	6,030	8,586	
	전라남도	1기	143,585	12,569	48,363	82,653		18,502	929	6,427	11,146		15,338	567	5,306	9,465	
		2기	138,628	11,969	50,436	76,223		14,006	756	5,452	7,798		14,394	723	5,256	8,415	
	경상북도	1기	199,975	15,914	77,962	106,099		24,133	1,090	10,522	12,521		22,591	534	8,767	13,290	
		2기	208,895	15,856	80,179	112,860		21,516	984	9,397	11,135		21,782	679	8,743	12,360	
	경상남도	1기	245,538	17,025	103,025	125,488		35,887	1,717	14,858	19,312		25,108	730	10,996	13,382	
		2기	239,507	18,569	100,369	120,569		26,096	1,172	13,336	11,588		24,587	832	10,489	13,266	
	제주도	1기	45,924	3,221	15,558	27,145		7,793	254	2,472	5,067		7,051	242	2,239	4,570	
		2기	51,623	3,411	19,764	28,448		6,488	211	2,311	3,966		5,327	149	1,954	3,224	
	도계	1기	1,877,731	143,622	809,232	924,877		274,723	13,775	126,112	134,836		219,175	7,127	94,248	117,800	
		2기	1,906,150	152,140	835,539	918,471		240,477	11,262	121,296	107,919		210,493	7,862	92,585	110,046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2004	합계	1기	11,969,676	1,152,447	5,874,892	4,942,337		1,309,061	90,525	704,969	513,567		1,093,751	51,511	563,262	478,978	
		2기	14,722,728	1,342,245	7,108,387	6,272,096		1,201,063	78,853	638,687	483,523		1,011,967	45,037	513,486	453,444	
	서울특별시	1기	1,042,304	128,405	530,955	382,944		113,510	11,909	68,223	33,378		86,173	6,549	51,550	28,074	
		2기	1,031,434	130,312	536,001	365,121		94,408	10,070	55,787	28,551		79,155	6,569	47,811	24,775	
	부산광역시	1기	298,848	21,956	147,831	129,061		32,044	1,747	17,455	12,842		29,007	901	14,793	13,313	
		2기	294,403	22,311	146,974	125,118		26,462	1,579	13,952	10,931		24,679	911	13,405	10,363	
	대구광역시	1기	202,318	12,781	101,647	87,890		21,503	924	11,560	9,019		22,422	527	10,377	11,518	
		2기	201,374	12,939	101,648	86,787		18,323	962	9,381	7,980		20,563	805	9,955	9,803	
	인천광역시	1기	216,699	18,641	112,748	85,310		26,551	1,221	14,396	10,934		20,724	671	10,079	9,974	
		2기	218,875	19,129	115,143	84,603		21,232	1,023	12,021	8,188		18,717	720	9,701	8,296	
	광주광역시	1기	115,286	11,597	52,964	50,725		14,190	785	6,917	6,488		12,473	379	5,825	6,269	
		2기	116,672	11,855	53,840	50,977		12,919	753	6,357	5,809		11,679	427	5,673	5,579	
	대전광역시	1기	124,618	9,541	51,935	63,142		16,062	868	7,526	7,668		13,640	418	5,596	7,626	
		2기	123,184	9,775	52,936	60,473		13,553	757	6,492	6,304		12,054	461	5,286	6,307	
	울산광역시	1기	73,070	5,605	33,596	33,869		10,253	403	4,762	5,088		8,246	198	3,720	4,328	
		2기	73,174	5,740	34,067	33,367		8,631	355	3,772	4,504		7,448	182	3,484	3,782	
	시계	1기	2,073,143	208,526	1,031,676	832,941		234,113	17,857	130,839	85,417		192,685	9,643	101,940	81,102	
		2기	2,059,116	212,061	1,040,609	806,446		195,528	15,499	107,762	72,267		174,295	10,075	95,315	68,905	
	경기도	1기	779,945	66,976	426,574	286,395		99,123	6,049	60,326	32,748		77,346	2,599	43,552	31,195	
		2기	801,511	70,098	439,336	292,077		103,308	5,411	62,898	34,999		72,552	2,892	42,219	27,441	
	강원도	1기	117,563	8,616	43,878	65,069		14,708	530	5,662	8,516		10,592	274	4,002	6,316	
		2기	119,586	8,691	44,974	65,921		14,017	606	4,858	8,553		11,575	282	3,812	7,481	
	충청북도	1기	126,265	10,068	45,504	70,693		14,176	646	5,946	7,584		11,267	334	4,502	6,431	
		2기	116,711	10,330	46,070	60,311		12,515	779	4,757	6,979		11,162	468	4,427	6,267	
	충청남도	1기	142,216	11,494	53,401	77,321		18,333	972	7,960	9,401		14,177	419	5,024	8,734	
		2기	143,588	11,934	55,114	76,540		16,320	907	6,579	8,834		13,292	497	5,072	7,723	
	전라북도	1기	126,905	10,621	50,531	65,753		16,054	759	6,613	8,682		13,552	471	5,598	7,483	
		2기	126,769	10,770	51,060	64,939		14,273	726	5,471	8,076		12,548	341	5,061	7,146	
	전라남도	1기	107,003	9,772	41,108	56,123		14,338	764	5,847	7,727		12,666	389	4,436	7,841	
		2기	104,326	10,024	41,816	52,486		12,522	821	4,773	6,928		12,389	360	4,213	7,816	
	경상북도	1기	185,944	15,475	77,471	92,998		21,355	1,114	9,913	10,328		19,384	458	8,072	10,854	
		2기	187,931	15,826	78,481	93,624		19,191	1,037	8,317	9,837		18,233	627	7,456	10,150	
	경상남도	1기	236,239	18,380	107,724	110,135		27,434	1,353	13,669	12,412		23,252	699	9,765	12,788	
		2기	237,610	18,842	110,353	108,415		24,921	1,102	11,820	11,999		20,059	889	9,655	9,515	
	제주도	1기	45,046	3,356	16,927	24,763		7,191	237	2,358	4,596		5,745	76	1,886	3,783	
		2기	45,099	3,465	17,064	24,570		5,512	237	1,941	3,334		4,389	75	1,774	2,540	
	도계	1기	1,867,126	154,758	863,118	849,250		232,712	12,424	118,294	101,994		187,981	5,719	86,837	95,425	
		2기	1,883,131	159,980	884,268	838,883		222,579	11,626	111,414	99,539		176,199	6,431	83,689	86,079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2005	합계	1기	4,065,059	390,435	2,085,285	1,589,339		447,886	34,496	235,659	177,731		395,167	17,977	195,541	181,649	
		2기	4,121,612	400,398	2,117,551	1,603,663		432,830	31,879	226,203	174,748		400,588	23,784	198,400	178,404	
	서울특별시	1기	1,059,669	134,051	579,887	345,731		105,492	12,195	61,783	31,514		92,178	6,884	52,525	32,769	
		2기	1,069,554	137,386	585,981	346,187		103,703	11,763	59,284	32,656		96,140	9,069	53,822	33,249	
	부산광역시	1기	302,003	23,111	158,781	120,111		30,077	1,961	16,709	11,407		28,290	1,102	14,885	12,303	
		2기	302,474	23,492	158,847	120,135		28,145	1,800	15,443	10,902		29,051	1,538	15,333	12,180	
	대구광역시	1기	201,311	13,291	106,608	81,412		20,541	1,088	10,590	8,863		20,520	577	10,291	9,652	
		2기	200,285	13,664	106,947	79,674		19,463	1,083	10,225	8,155		21,055	865	10,452	9,738	
	인천광역시	1기	200,892	17,006	110,630	73,256		23,323	1,477	13,102	8,744		20,723	907	10,683	9,133	
		2기	206,342	17,342	113,283	75,717		23,784	1,353	13,573	8,858		20,196	1,019	10,363	8,814	
	광주광역시	1기	103,497	9,855	51,098	42,544		12,512	829	6,371	5,312		11,616	476	5,705	5,435	
		2기	104,017	10,066	51,479	42,472		13,847	839	5,934	7,074		14,165	548	5,648	7,969	
	대전광역시	1기	120,123	9,562	55,884	54,677		14,869	934	6,824	7,111		13,026	497	5,703	6,826	
		2기	125,253	9,806	58,022	57,425		12,868	851	5,269	6,748		12,295	589	4,648	7,058	
	울산광역시	1기	75,751	6,007	36,795	32,949		8,643	529	4,345	3,769		7,689	267	3,680	3,742	
		2기	76,592	6,139	37,225	33,228		8,287	447	4,218	3,622		8,078	295	3,766	4,017	
	시계	1기	2,063,246	212,883	1,099,683	750,680		215,457	19,013	119,724	76,720		194,042	10,710	103,472	79,860	
		2기	2,084,517	217,895	1,111,784	754,838		210,097	18,136	113,946	78,015		200,980	13,923	104,032	83,025	
	경기도	1기	868,413	79,319	493,820	295,274		104,498	7,384	60,068	37,046		83,473	3,571	45,309	34,593	
		2기	882,058	82,117	505,737	294,204		104,355	6,940	58,987	38,428		84,366	4,742	46,140	33,484	
	강원도	1기	123,112	9,682	49,308	64,122		14,278	768	5,471	8,039		12,726	363	4,571	7,792	
		2기	125,584	9,797	49,814	65,973		13,269	599	4,898	7,772		12,257	465	4,230	7,562	
	충청북도	1기	121,753	10,961	50,372	60,420		14,880	978	6,037	7,865		14,921	424	5,179	9,318	
		2기	125,876	11,300	52,112	62,464		16,759	980	7,238	8,541		15,895	675	6,118	9,102	
	충청남도	1기	151,395	13,583	62,899	74,913		17,649	1,184	7,764	8,701		14,492	529	5,466	8,497	
		2기	158,471	13,949	65,468	79,054		13,385	815	6,317	6,253		13,371	635	5,821	6,915	
	전라북도	1기	131,134	11,274	55,543	64,317		14,504	990	6,280	7,234		14,252	546	5,725	7,981	
		2기	132,538	11,515	56,034	64,989		12,435	940	5,434	6,061		12,003	672	4,878	6,453	
	전라남도	1기	125,713	13,062	51,908	60,743		12,918	1,039	5,627	6,252		11,952	426	4,787	6,739	
		2기	126,431	13,346	52,380	60,705		11,862	793	6,080	4,989		11,616	673	5,688	5,255	
	경상북도	1기	194,964	16,496	86,089	92,379		21,646	1,275	9,736	10,635		19,813	601	8,193	11,019	
		2기	197,114	16,774	86,467	93,873		20,208	1,093	8,929	10,186		20,367	739	8,442	11,186	
	경상남도	1기	238,729	19,515	117,278	101,936		26,163	1,561	12,703	11,899		24,469	702	10,911	12,856	
		2기	241,636	19,947	119,145	102,544		25,407	1,319	12,461	11,627		24,809	1,092	11,226	12,491	
	제주도	1기	46,600	3,660	18,385	24,555		5,893	304	2,249	3,340		5,027	105	1,928	2,994	
		2기	47,387	3,758	18,610	25,019		5,053	264	1,913	2,876		4,924	168	1,825	2,931	
	도계	1기	2,001,813	177,552	985,602	838,659		232,429	15,483	115,935	101,011		201,125	7,267	92,069	101,789	
		2기	2,037,095	182,503	1,005,767	848,825		222,733	13,743	112,257	96,733		199,608	9,861	94,368	95,379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계속>

(단위: 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개인 ¹⁾	일반	간이	면세	계	법인	개인 ¹⁾	일반	간이	면세	계	법인	개인 ¹⁾	일반	간이	면세
2006	합계	1기	4,280,745	411,641	3,869,104	2,192,281	1,676,823	-	470,022	33,316	436,706	236,731	199,975	-	382,229	19,960	362,269	191,437	170,832	-
		2기	4,891,024	425,667	4,465,357	2,246,698	1,719,556	499,103	540,338	31,700	508,638	217,481	187,071	104,086	413,140	17,665	395,475	162,326	143,974	89,175
	서울특별시	1기	1,096,824	141,173	955,651	600,704	354,947	-	111,527	12,165	99,362	61,808	37,554	-	89,033	7,047	81,986	50,928	31,058	-
		2기	1,241,282	146,182	1,095,100	614,571	363,043	117,486	128,713	11,230	117,483	56,959	35,800	24,724	96,940	6,219	90,721	42,864	27,638	20,219
	부산광역시	1기	307,612	23,998	283,614	161,018	122,596	-	30,120	1,919	28,201	16,138	12,063	-	25,634	1,205	24,429	13,677	10,752	-
		2기	346,890	24,887	322,003	163,423	124,261	34,319	33,945	1,944	32,001	14,358	11,081	6,562	28,716	1,055	27,661	11,897	9,388	6,396
	대구광역시	1기	205,508	13,843	191,665	107,511	84,154	-	21,655	1,074	20,581	10,863	9,718	-	19,428	729	18,699	9,540	9,159	-
		2기	229,931	14,241	215,690	108,756	85,722	21,212	24,128	1,059	23,069	9,506	9,010	4,553	20,687	661	20,026	8,231	7,431	4,364
	인천광역시	1기	216,920	17,673	199,247	119,855	79,392	-	25,250	1,357	23,893	13,335	10,558	-	20,750	964	19,786	10,755	9,031	-
		2기	243,671	18,156	225,515	123,314	81,265	20,936	28,461	1,338	27,123	12,885	9,624	4,614	22,341	855	21,486	9,372	7,730	4,384
	광주광역시	1기	110,908	10,338	100,570	53,304	47,266	-	12,812	818	11,994	6,258	5,736	-	11,093	519	10,574	5,356	5,218	-
		2기	126,791	10,716	116,075	54,422	48,431	13,222	15,110	828	14,282	5,798	5,491	2,993	12,117	450	11,667	4,675	4,322	2,670
	대전광역시	1기	126,532	9,990	116,542	59,794	56,748	-	14,797	841	13,956	6,902	7,054	-	12,873	596	12,277	5,707	6,570	-
		2기	143,517	10,252	133,265	60,915	58,117	14,233	17,125	754	16,371	5,850	6,918	3,603	13,648	491	13,157	4,716	5,539	2,902
	울산광역시	1기	79,056	6,387	72,669	38,289	34,380	-	9,572	537	9,035	4,697	4,338	-	8,024	316	7,708	3,805	3,903	-
		2기	90,443	6,649	83,794	39,115	34,998	9,681	11,028	528	10,500	4,309	3,987	2,204	8,867	266	8,601	3,458	3,354	1,789
	시계	1기	2,143,360	223,402	1,919,958	1,140,475	779,483	-	225,733	18,711	207,022	120,001	87,021	-	186,835	11,376	175,459	99,768	75,691	-
		2기	2,422,525	231,083	2,191,442	1,164,516	795,837	231,089	258,510	17,681	240,829	109,665	81,911	49,253	203,316	9,997	193,319	85,213	65,382	42,724
	경기도	1기	938,599	84,354	854,245	536,170	318,075	-	114,393	6,939	107,454	60,998	46,456	-	84,566	4,170	80,396	45,491	34,905	-
		2기	1,066,354	87,226	979,128	553,918	330,444	94,766	130,787	6,770	124,017	58,206	43,453	22,358	93,148	3,893	89,255	40,259	30,982	18,014
	강원도	1기	133,077	10,275	122,802	52,185	70,617	-	13,855	668	13,187	5,147	8,040	-	12,065	374	11,691	4,391	7,300	-
		2기	153,940	10,552	143,388	53,636	71,993	17,759	16,618	649	15,969	4,916	7,422	3,631	12,846	372	12,474	3,447	6,035	2,992
	충청북도	1기	126,160	11,624	114,536	52,616	61,920	-	14,300	960	13,340	5,755	7,585	-	12,084	657	11,427	4,816	6,611	-
		2기	142,685	11,918	130,767	54,063	63,813	12,891	15,834	783	15,051	5,138	7,076	2,837	11,645	489	11,156	3,674	5,178	2,304
	충청남도	1기	160,779	14,389	146,390	69,294	77,096	-	18,546	1,164	17,382	7,949	9,433	-	14,662	588	14,074	5,875	8,199	-
		2기	186,982	14,893	172,089	71,359	79,757	20,973	20,846	1,052	19,794	6,730	8,827	4,237	14,660	548	14,112	4,651	6,162	3,299
	전라북도	1기	137,285	11,957	125,328	57,323	68,005	-	15,122	873	14,249	6,443	7,806	-	13,804	511	13,293	5,543	7,750	-
		2기	158,408	12,368	146,040	58,394	69,347	18,299	17,012	848	16,164	5,599	7,128	3,437	13,692	437	13,255	4,516	5,776	2,963
	전라남도	1기	136,620	13,735	122,885	54,953	67,932	-	12,939	885	12,054	5,899	6,155	-	11,475	588	10,887	4,761	6,126	-
		2기	165,406	14,173	151,233	56,296	68,874	26,063	16,057	843	15,214	5,263	5,912	4,039	12,934	405	12,529	3,908	4,965	3,656
	경상북도	1기	203,920	17,448	186,472	88,334	98,138	-	21,852	1,221	20,631	9,336	11,295	-	19,155	740	18,415	8,206	10,209	-
		2기	237,471	17,947	219,524	90,048	100,758	28,718	25,215	1,174	24,041	8,201	10,690	5,150	20,213	674	19,539	6,469	8,058	5,012
	경상남도	1기	252,170	20,425	231,745	121,913	109,832	-	27,639	1,575	26,064	13,007	13,057	-	22,527	815	21,712	10,425	11,287	-
		2기	297,339	21,324	276,015	125,040	112,339	38,636	32,701	1,648	31,053	11,910	11,856	7,287	25,334	749	24,585	8,749	9,309	6,527
	제주도	1기	48,775	4,032	44,743	19,018	25,725	-	5,643	320	5,323	2,196	3,127	-	5,056	141	4,915	2,161	2,754	-
		2기	59,914	4,183	55,731	19,428	26,394	9,909	6,758	252	6,506	1,853	2,796	1,857	5,352	101	5,251	1,440	2,127	1,684
	도계	1기	2,137,385	188,239	1,949,146	1,051,806	897,340	-	244,289	14,605	229,684	116,730	112,954	-	195,394	8,584	186,810	91,669	95,141	-
		2기	2,468,499	194,584	2,273,915	1,082,182	923,719	268,014	281,828	14,019	267,809	107,816	105,160	54,833	209,824	7,668	202,156	77,113	78,592	46,451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시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개인 ¹⁾	일반	간이	면세	계	법인	개인 ¹⁾	일반	간이	면세	계	법인	개인 ¹⁾	일반	간이	면세
2007	합계	5,005,870	479,140	4,526,730	2,376,390	1,653,569	496,771	1,135,831	75,767	1,060,064	516,381	440,978	102,705	894,776	46,714	848,062	410,851	349,770	87,441
지역별	서울특별시	1,252,393	160,048	1,092,345	633,148	345,090	114,107	259,871	25,749	234,122	128,899	80,893	24,330	213,581	16,478	197,103	109,135	66,817	21,151
	부산광역시	348,559	27,704	320,855	170,216	118,281	32,358	70,431	4,439	65,992	34,062	26,277	5,653	61,137	2,893	58,244	29,261	22,643	6,340
	대구광역시	234,368	16,062	218,306	114,862	83,186	20,258	51,331	2,499	48,832	22,626	21,954	4,252	40,056	1,624	38,432	17,667	17,053	3,712
	인천광역시	249,523	20,274	229,249	129,180	78,636	21,433	59,905	2,950	56,955	28,871	23,320	4,764	49,554	1,949	47,605	24,167	19,459	3,979
	광주광역시	129,467	12,202	117,265	57,003	47,361	12,901	31,418	2,090	29,328	13,460	12,910	2,958	24,762	1,142	23,620	10,930	9,942	2,748
	대전광역시	144,007	11,454	132,553	63,108	55,002	14,443	33,567	1,888	31,679	13,897	14,401	3,381	28,461	1,251	27,210	11,709	12,479	3,022
	울산광역시	93,950	7,499	86,451	42,628	33,771	10,052	23,758	1,204	22,554	10,578	9,782	2,194	18,527	737	17,790	8,238	7,810	1,742
	시계	2,452,267	255,243	2,197,024	1,210,145	761,327	225,552	530,281	40,819	489,462	252,393	189,537	47,532	436,078	26,074	410,004	211,107	156,203	42,694
	경기도	1,117,576	99,940	1,017,636	595,077	325,538	97,021	286,406	16,345	270,061	140,247	106,219	23,595	209,854	9,985	199,869	105,069	76,711	18,089
	강원도	156,276	11,655	144,621	57,590	69,228	17,803	35,837	1,483	34,354	11,815	19,291	3,248	28,981	987	27,994	9,342	15,826	2,826
	충청북도	146,359	13,749	132,610	59,747	59,784	13,079	32,913	2,067	30,846	13,511	14,522	2,813	26,272	1,335	24,937	9,874	12,820	2,243
	충청남도	194,088	17,682	176,406	78,323	76,066	22,017	44,187	2,888	41,299	17,603	19,175	4,521	33,308	1,510	31,798	12,563	16,064	3,171
	전라북도	163,360	14,344	149,016	62,679	67,894	18,443	37,202	2,280	34,922	13,787	17,679	3,456	29,117	1,333	27,784	11,212	13,687	2,885
	전라남도	169,837	16,915	152,922	60,618	66,626	25,678	33,765	2,487	31,278	12,757	14,730	3,791	26,176	1,294	24,882	9,842	11,498	3,542
	경상북도	241,081	20,451	220,630	97,417	94,248	28,965	52,787	2,851	49,936	20,326	24,268	5,342	40,032	1,637	38,395	15,454	18,558	4,383
	경상남도	304,119	24,308	279,811	134,058	107,078	38,675	68,601	3,863	64,738	29,400	28,636	6,702	53,953	2,087	51,866	22,808	23,303	5,755
	제주도	60,907	4,853	56,054	20,736	25,780	9,538	13,852	684	13,168	4,542	6,921	1,705	11,005	472	10,533	3,580	5,100	1,853
	도계	2,553,603	223,897	2,329,706	1,166,245	892,242	271,219	605,550	34,948	570,602	263,988	251,441	55,173	458,698	20,640	438,058	199,744	193,567	44,747
업태별	농·임·어업	60,624	4,203	56,421	651	189	55,581	7,059	1,332	5,727	152	73	5,502	6,296	391	5,905	112	53	5,740
	광업	2,217	1,184	1,033	365	-	668	229	162	67	48	-	19	249	133	116	63	-	53
	제조업	425,749	103,815	321,934	284,837	24,181	12,916	58,070	13,970	44,100	38,821	2,958	2,321	52,670	9,384	43,286	38,780	2,517	1,989
	전기·가스·수도업	1,507	1,079	428	415	12	1	644	379	265	264	1	-	154	81	73	72	1	-
	도매업	470,216	90,581	379,635	315,167	275	64,193	94,862	15,787	79,075	66,698	218	12,159	81,771	10,889	70,882	59,046	133	11,703
	소매업	702,519	18,151	684,368	303,669	298,255	82,444	192,217	4,003	188,214	66,289	103,183	18,742	174,540	2,362	172,178	57,507	98,026	16,645
	부동산매매업	14,094	6,158	7,936	6,743	4	1,189	5,194	1,906	3,288	2,803	3	482	2,948	913	2,035	1,673	4	358
	건설업	307,267	75,109	232,158	221,215	2,927	8,016	59,738	8,997	50,741	46,264	771	3,706	47,926	5,450	42,476	38,640	891	2,945
	음식업	581,817	9,594	572,223	243,727	328,385	111	194,371	2,264	192,107	79,080	113,011	16	185,076	1,254	183,822	63,639	120,142	41
	숙박업	32,128	1,074	31,054	11,262	19,592	200	6,323	191	6,132	2,098	4,024	10	5,458	85	5,373	1,738	3,605	30
	운수·창고·통신업	486,841	27,952	458,889	206,738	250,299	1,852	77,672	3,578	74,094	49,879	24,079	136	61,711	2,121	59,590	37,160	22,296	134
	부동산임대업	992,619	22,502	970,117	486,846	444,548	38,723	196,220	2,791	193,429	73,982	111,138	8,309	70,368	1,724	68,644	39,513	26,576	2,555
	대리·중개·도매업	25,657	1,524	24,133	21,804	1,527	1,002	13,393	281	13,112	12,172	412	528	7,294	131	7,163	6,358	449	356
	서비스업	902,615	116,214	786,401	273,151	283,375	229,875	229,839	20,126	209,713	77,831	81,107	50,775	198,315	11,796	186,519	66,550	75,077	44,892

주: 1) 2006 이후 개인은 일반, 간이, 면세를 합한 값으로, 계는 법인과 개인을 합산한 값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아이 없이 미래 없다]

아이 안 낳는 코리아 '재앙폭탄' 재각재각

- 운명의 2017년 생산가능 인구 감소세 반전 3611만명...
'제1 성장동력' 쇠락

출산율(1.30명 · 2001년 기준)이 일본(1.33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 2002년 3월,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요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출산장려 정책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결론은 '없던 일로 하자'였다. '출산 보조금이나 보육비 지원을 늘려줘야 중산층의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보조금을 노린 일부 계층의 악용 가능성만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후 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출산의 시계추는 해가 거듭될수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절대 숫자가 감소하는 '운명의 해'가 이제 불과 8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9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3,513만명)보다 24만명 늘어난 3,537만명이지만, 2017년(3,611만명)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또 이후 감소폭이 확대돼 2050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2,242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8년 뒤부터 '일하는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02년 출생자들이 생산가능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이던 출산율이 2002년에는

1.17명까지 떨어졌는데, 그 여파가 15년이 지난 뒤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구감소

2018년 4,934만명 정점 2019년부터 '내리막길'

이후에도 출산율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해 2019년부터는 아예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 2009년 4,874만명인 인구가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234만명이 된다.

출산율 하락은 2020년부터 한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가 1% 늘어나면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8%포인트 증가하지만, 거꾸로 고령인구가 1% 늘어나면 성장률은 0.04% 줄어든다.

보사연이 이 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5%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3.04%로 떨어지고 2040년에는 1.53%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당장은 세계 금융위기가 문제이지만, 10년 가량 지나면 저출산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노력과 결과로만 따진다면 '늑장·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우선 '늑장 대응'.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직후인 90년대 중반 OECD 회의의 핵심 주제는 '저출산' 이었는데, 한국 대표단은 '무슨 소리인가'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2002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실토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야 공식 대응이 나왔던 만큼 정부가 OECD 분위기를 빨리 간파했다면 최대 10년, 일본보다 출산율이 내려간 2002년에 즉시 움직였다면 저출산 대책이 최소 3년은 앞서 시작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뒤늦은 대책도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이 2005년 1.08명에서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으로 반짝 상승하자 ‘정책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2008년(1.19명)에는 하락세로 반전했다. 2년간의 반등은 각각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효과였을 뿐이며, 저출산 대책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령화 그늘

2050년 노인 1명 부양 청년 1.5명이 세금내야

일반 국민의 ‘구성의 오류’에 빠진 행동도 또다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성의 오류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그 결과 집단적으로는 실패인 경우를 말한다.

황원일 숭실대 교수는 “한 자녀만 낳고 ‘올인’ 해서 잘 키우자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사교육비는 상승하고 입시 경쟁은 치열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노인 1명을 위해 청년 7명이 세금을 내는 구조이지만, 2050년에는 노인 1명을 위해 청년 1.5명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현재의 저출산 구조는 부모 세대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자녀 세대가 떠맡게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저출산 현상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 노동력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포기한 채, 외국인 이민으로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경우 2050년에는 국내 인구의 46%인 3,662만명이 외국인 이민자로 채워지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이들

이민자가 장기 체류할 경우 공적연금 부담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결국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20대 여성의 출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 연령을 낮추고, 보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0조원

佛 GDP의 4.7% 투입 출산율↑ 경쟁력 쑥쑥

선진국의 경험도 출산율 제고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 관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경우 ‘혼외 출산’에 관대한 문화도 한 몫을 했지만, 연간 GDP의 4.7%인 883억 유로(150조원)를 출산·양육 보조금에 투입하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했다. 그 결과, 94년 1.66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 2.02명으로 높아졌다.

출산 정책은 프랑스 경제 자체를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90년대까지 독일과의 경쟁에서 줄곧 뒤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독일을 추월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성공한 출산정책으로 인구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프랑스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2009년 6월 9일자)

정부, 비과세·세금 감면 원점 재검토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각종 비과세와 세금 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감세 등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 운용의 중심을 재정 건전성 확보로 본격 전

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대상은 과감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08조3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올해 36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지나친 비과세·감면 제도가 적자 재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2004년 18조3천억원에 그쳤던 비과세·감면 규모는 2006년 21조3천억원, 지난해 26조9천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우선 폐지 대상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특법상 82개 비과세·감면제도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의견을 취합, 이 가운데 일부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농어민, 저소득층이 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의견은 대부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에도 34개 일몰법안 모두를 검토했지만 이 중 절반인 17개를 폐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9년 5월 27일자〉

한국도 재정집행 승부수..4월까지 110조원 끌어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집행된 재정은 당초 목표를 뛰어 넘었다.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올해 0.7%포인트 내외의 경제성장률 제고와 4만8천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잉유동성과 재정건전성 훼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4월 말까지 집행된 재정은 110조7천억원으로 당초 계획(99조2천억원)의 111.5%에 이른다. 연간 진도율은 계획(257조7천억원) 대비 43.0%로 지난해 4월 연간 진도율(34.7%)보다 8.3%포인트 높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민간이 자생력을 잃어가자 재정이 경기 회복의 동력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집행 계획에선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적극 집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엄단 조치하는 방침까지 세웠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은 매년 계획을 뛰어넘고 있다.

썩썩이 폭도 늘렸다. 경기 부양을 위해 28조4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단순히 액수만 늘린 것이 아니다. 투입한 돈이 각 부문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 지침도 마련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올해 중 0.7%포인트 내외의 경제성장률 제고와 4만8000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과잉유동성, 재정건전성 훼손 등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돈을 뿌리지 않으면 영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강조한다. 윤증현 기획재정

부 장관은 “설비투자 확대와 소비심리 회복 등 민간에서 자생적인 경기회복 능력을 보일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09년 5월 25일자〉

다자녀 가구 면세기준 불리 1분기 계획대비 110%

-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62배 · 6인가구는 1.14배

2007년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독인가구에 비해 다자녀가구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세연구원 및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면세점을 적용받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49만 800원, 면세점은 월 79만 5,00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1.62배였다. 반면 3인 가구(부부+자녀 1명)의 경우 최저생계비 108만 1,200원, 면세점 152만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1.41배였다. 즉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1.62배만큼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지만 3인 가구는 1.41배만 돼도 세금을 내게 된다는 얘기다.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는 1.31배(최저생계비 132만 6,600원, 면세점 174만원)였고 5인 가구(부부+자녀 3명)는 1.21배(157만 2,000원, 190만원)였다. 6인 가구(부부+자녀 4명)는 1.14배로 최저생계비 181만 7,500원보다 25만 여원 더 많은 207만원의 소득만 올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다자녀 공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낮아진다”면서 “이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능력원칙과 부합

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9년 5월 18일자〉

재정포럼

2009년 6월호 통권 제156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9년 6월 15일 발행 / 제14권 제6호(통권 제15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